발 간 등 록 번 호
32-9741568-001227-01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연구총서 2018-17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Improving the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System

연구책임자: 안 문 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2014. 1. 1.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17년도에 선정된 연구과제 중 하나인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연구의 진행 단계에 따라 연구원의 내부 검토 및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이고 충실한 자문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국민을 위한 사법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용 목차

국문 요약 ····· xiv

Abstract ····· x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Ⅰ. 연구의 범위 ····· 4

Ⅱ. 연구의 방법 ····· 4

1. 문헌연구 ····· 4

2. 전문가 의견 ····· 5

제2장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운용 및 현황 ····· 7

제1절 개설 ····· 9

제2절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 10

Ⅰ. 개설 ····· 10

Ⅱ.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도입 ····· 11

1. 개설 ····· 11

2.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정착 과정 ····· 12

가. 2001년 7월 1일 이전 ····· 12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 13

3. 가정법원의 복지적 기능과 조사관의 역할 ····· 14

Ⅲ. 가정법원 조사관의 임용 및 편제 ····· 17

1. 선발 ····· 17

가. 개설 ····· 17

2. 조사관의 증원 및 배치 ····· 19

Ⅳ. 가정법원 조사관의 직무 ····· 22

1. 개설 ····· 22

2. 가사조사관 ····· 23

가. 사실조사 ····· 23

나. 조정조치 ····· 26
다. 의견 진술 ····· 28
라.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 28
마. 가사조사관의 추가적 직무 ····· 30
3. 소년사건조사관 ····· 35
가. 사실조사 ····· 36
나. 심리 출석 및 의견 진술 ····· 38
다. 동행영장의 집행 ····· 38
라. 보고의무 ····· 38
마. 추가된 직무 ····· 39
4. 가정보호사건조사관 ····· 47
가. 조사 업무 ····· 48
나. 의견 진술 ····· 49
다. 집행 ····· 49
5. 아동보호사건조사관 ····· 50
제3절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문제점 ····· 51
Ⅰ. 개설 ····· 51
Ⅱ. 가정법원 조사관의 이원적 구성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 52
Ⅲ. 승진 기회의 부족 ····· 54
Ⅳ. 조사관의 배치 ····· 56
Ⅴ. 조사 기간 및 횟수 ····· 57
Ⅵ. 조사보고서의 열람 및 공개 ····· 58
Ⅶ. 조사관에 대한 연수 ····· 59
1. 신규 연수 ····· 59
2. 후기 연수 ····· 61
가. 가사조사관 ····· 61
나. 소년사건조사관 ·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 ····· 62
Ⅷ. 조사관의 직무 ····· 64
1. 가사조사관 ····· 64
가. 직무 수행 주체 ····· 64
나. 직무 범위 확대 ····· 65
2. 소년사건조사관 ····· 66
가. 조사관의 직무 범위 확대 및 배치 ····· 66
나. 직무 관련 문제 ····· 66

3. 가정보호사건조사관 ····· 67
4. 아동보호사건조사관 ····· 68

제3장 외국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 69

제1절 개설 ····· 71
제2절 미국 ····· 71
Ⅰ. 개설 ····· 71
Ⅱ. 배경 및 연혁 ····· 72
Ⅲ. 가정법원 전문 인력의 자격 요건 및 연수 ····· 75
1. 가정법원 전문 인력 ····· 75
2. 소년보호관찰관 ····· 77
Ⅳ. 가정법원 전문 인력의 직무 ····· 78
1. 가정법원 전문 인력의 직무 ····· 78
가. 이혼 전 부모 교육 ····· 79
나. 조정 ····· 83
다. 상담 ····· 88
라. 양육 평가(custody evaluation) ····· 90
마. 사회서비스 조정 및 맞춤형 사례관리 ····· 91
2. 소년보호관찰관의 직무 ····· 93
가. 개설 ····· 93
나. 사건의 접수 · 선별 · 평가 ····· 94
다. 판결 전 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 ····· 95
라. 지도 감독(supervision) ····· 95
제3절 독일 ····· 96
Ⅰ. 가정법원 설립 배경 ····· 96
Ⅱ.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에 대한 논의 및 절차보조인 제도 ····· 97
1. 조사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 ····· 97
2. 절차보조인 제도 ····· 98
Ⅲ. 아동복지기관을 통한 상담(Beratung) 및 조정(Mediation) ····· 99
1. 가정법원의 상담서비스 권고 ····· 99
2. 상담의 의의 ····· 101
3. 상담 경로 ····· 101
4. 상담 방식 ····· 102

5. 상담 내용 ····· 102
6. 아동복지기관의 직무 ····· 104
가. 가정법원과 아동복지기관의 협력 ····· 104
나. 아동복지기관의 의견에 대한 가정법원의 청취 ····· 105
다. 가정법원에 대한 아동복지기관의 통지 ····· 106
Ⅳ. 아동청(Jugendamt)을 통한 소년사법보호인 ····· 107
1. 아동청 ····· 107
2. 소년사법보호인의 자격과 업무 ····· 108
가. 자격 ····· 108
나. 업무 ····· 108
제4절 일본 ····· 109
Ⅰ. 개설 ····· 109
Ⅱ.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조직 편제 ····· 111
1. 가정국의 설립 및 조직 구성 ····· 111
2. 가정재판소의 조직 ····· 112
3.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구성 ····· 114
가. 조직구성 및 직무 ····· 114
나. 현황 ····· 117
Ⅲ.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선발 ····· 119
1. 개설 ····· 119
2. 응시 현황 ····· 119
3. 업무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 120
4. 채용시험 ····· 120
Ⅳ. 가정재판소 조사관을 위한 연수 ····· 123
1. 개설 ····· 123
2. 양성부 연수: 신규 연수 ····· 124
가. 개설 ····· 124
나. 조사관보를 위한 양성부 연수 과목 ····· 125
3. 실무연수 · 전문연수 및 특별연수: 지속적 연수 ····· 129
가. 실무연수: 4년차 ····· 129
나. 전문연수: 7년차 ····· 130
다. 특별연수 ····· 130
Ⅴ.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직무 ····· 131
1. 조사 방법 ····· 131

2. 직무 범위 ····· 131
3. 직무의 내용 ····· 132
가. 가사계 조사관의 직무 ····· 134
나. 소년계 조사관의 직무 ····· 145
제5절 정리 ····· 147

제4장 개선 방안을 위한 구체적 제언 ····· 151

제1절 개설 ····· 153
제2절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 154
Ⅰ. 개설 ····· 154
Ⅱ. 선발 및 조직 체계의 일원화 ····· 154
1. 단기적 개선 방안 ····· 154
가. 조사 직렬로의 일원적 편제 ····· 154
나. 조별 구성 ····· 157
다. 업무의 분류 ····· 159
2. 장기적 개선 방안: 조사국의 설치 ····· 159
Ⅲ. 조사관의 지역별 배치 및 순환보직 ····· 161
1. 개설 ····· 161
2. 신규 임용자의 배치 ····· 161
3. 조사관의 순환보직 ····· 162
Ⅳ. 사실조사 기간 ····· 163
Ⅴ. 사실조사 의견서의 도입 ····· 164
제3절 가정법원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 165
Ⅰ. 개설 ····· 165
Ⅱ. 조사관을 위한 연수 ····· 166
1. 연수의 필요성 ····· 166
가. 업무의 차별성에 대한 이해 ····· 167
나. 업무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 167
다. 정리 ····· 168
2. 연수의 확대 ····· 169
가. 신규 연수 ····· 169
나. 후기 연수 ····· 170
다. 외부 연수 ····· 170

3. 연수 과목, 교재 및 연구진 ····· 171
Ⅲ. 조사관 직무 관련 개선 방안 ····· 171
1. 가사조사관 ····· 171
2. 소년사건조사관 ····· 172
3. 가정보호사건조사관 ····· 172
4. 아동보호사건조사관 ····· 172

제5장 결론 ····· 173

참 고 문 헌 ····· 176

표 목차

[표1] 가정법원 조사관 수: 2001년과 2017년 비교 ····· 20
[표2] 부모교육 안내 ····· 31
[표3] 민법상 예비 양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 34
[표4] 일반조사관과 전문조사관의 담당 업무 ····· 52
[표6] 신규 임용자 과정(가사조사관) 시간표 ····· 60
[표7] 가사조사실무과정 시간표 ····· 62
[표8]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조사실무과정 시간표 ····· 63
[표9] 가정재판소 조사관 채용시험 과목 ····· 121
[표10] 가정재판소 조사관보를 위한 양성부 연수 기간 ····· 125
[표11] 가정재판소 조사관보를 위한 양성부 연수 프로그램 ····· 126
[표12]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업무 추이 변화 ····· 133

그림 목차

[그림1] 가정재판소의 구조 ····· 113
[그림2] 절차선별표 예시 ····· 136

국문 요약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가 1963년에 시행된 이후로 약 55년이 지났다. 현재 가정법원 조사관의 수는 약 180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 가정법원이 지향하는 복지적 · 후견적 법원의 실현을 위한 여러 제도 중 하나가, 심리학, 복지학, 교육학 등의 인간관계학의 전문가를 사법적 절차에서 활용하는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와 관련해, 법원 사무 직렬 공무원에 의한 조사관 업무 수행, 조사관 수의 부족, 연수 기회의 부족, 승진 기회의 제약, 사법부의 관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 가정법원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가정법원에서 인간관계학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상담이나 조정을 비롯한 이혼 전 부모 교육 등의 분야에서 법원의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상담이나 조정 등의 업무를 외부 기관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비롯해 상담 및 조정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약 1,600명에 이르고 있다.

외국에서의 이러한 전문 인력의 활용과 관련해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첫째, 조사관의 선발 및 조직 체계의 개선, 둘째, 지역 단위의 순환보직 및 신규채용자의 단독배치 금지, 셋째, 사실조사 의견서의 도입을 통한 조사보고서의 비공개성 보완 및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 활용, 넷째, 가사조사 기간의 효율적 이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정법원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관으로 채용된 후에 실시되는 신규 연수 및 임용 후에 이루어지는 후기 연수의 확대 및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관에 대한 연수를 통해 현재 세분화된 가사조사관, 소년사건조사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의 전문화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운용 및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는 우리 가정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서비스의 개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주제어 : 가정법원 조사관의 전문성, 팀제 운영, 연수 확대, 조사관의 증원, 사실조사 의견서

Abstract

Research on Improving the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System

AN, Moon Hee
Research Fellow, JPRI

It has been 55 years since the first probation officer was assigned to the newly established Seoul family court. Today, in 2018,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rs in Korean family courts is approaching 180—and nearly 150 of those officers are specialized. The aim of this new system was to enhance the family court's guardianship and welfare functions by utilizing experts in fields of human relationships (e.g., psychology, welfare studies, and education) at judicial proceedings. But many argue that the goals of the new system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alized due to a lack of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insufficient training, limited promotional opportunities, and a lack of care and attention by the Korean Judiciary.

Acknowledging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similar systems in other countries, which may shed light on how Korea could improve its system. It is, in this regard, especially noteworthy that the function and role of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in the U.S. are broader because U.S. officers also provide education for parents before divorce, counseling, and mediation services. The German courts are also providing counseling and mediation services by utilizing external agencies. In Japan, which has the most similar system to Korea,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provide counseling and mediation services, as well as fact-finding tasks. There, the number of officers now amounts to 1,600.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this research examine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Korea's system. In particular, a number of suggestions are examined, including: streamlining the processes of selection and operation, managing officers as a team, increasing the number of specialized probational officers, rotating officers at a regional lev-

el, prohibiting new hires from being placed alone, providing feedback on problems of reports, and utilizing the periods of family investigation effectively. Increasing training opportunities for both new hires and long-term employed officers—in addition to specialized trainings for family probational officers, juvenile case probational officers, and family protection case probational officers—could also provide a good resolution. Ultimately,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operation and expertise of the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could contribute to improving Korea's family courts' guardianship and welfare functions.

Key words: expertise of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managing officers as a team, increasing training opportunities, increasing the number of specialized probational officers, report of written opinion of parties

제 1 장

서론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 가정법원은 기존의 사법적 기능 외에도 후견적 ·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1963년부터 시행된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를 통해 인간관계학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가정법원의 후견적 ·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55년이 지났으나, 현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모습을 갖춘 것은 2001년 이후라고 볼 수 있어, 실제 조사관 제도의 시행 기간은 약 20년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가정법원의 조사관 제도가 오랜 기간 정착되지 못했던 원인으로는 가정법원 조사관에 대한 인식 결여, 인원 부족, 사법부의 무관심, 승진 기회의 제약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가정법원 조사관의 수는 약 180명으로, 예전에 비해 많은 수가 증원되었으나, 추가된 업무 범위나 사건 수에 비해 조사관의 수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 가정법원의 개원과 함께 조사관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은 우리 가정법원의 목표 및 기능과 조사관의 업무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이나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에게 법률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조사 업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 및 이해가 전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 또한 가정법원 조사관에게 최소한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함으로써, 인간관계학 관련 학문의 전문성을 가진 자를 선발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사관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법원이 전문조사관을 통해 가사조사 업무를 보다 세분화 · 전문화하고, 다양한 가정법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음에도, 외국의 가정법원 서비스와 비교하면 양적 · 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 또한 계속되어 오고 있다.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현행 조사관 제도에 대한 운용상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가정법원 조사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

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 독일 및 일본의 가정법원에서의 유사한 제도를 통해 우리 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I. 연구의 범위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는 우리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문제점이나 조사관 제도에 대한 검토 및 연구를 통해 우리 조사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배경,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설명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운용 및 현황을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의 조사관 제도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우리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을 통해 이 연구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방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단행본이나 논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법원 조사관에 관한 법원조직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보호심판규칙, 법원조사관 등 규칙 등의 국내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외

국 제도에 대한 관련 자료 또한 단행본이나 논문을 기본으로 관련 웹사이트를 보충적으로 참고한다.

2. 전문가 의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님, 법무법인 원의 조숙현 변호사님, 법무법인 윤성의 박기옥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의 유재균 사무국장님, 회생법원의 강기호 사무국장님, 인천가정법원의 송현종 조사사무관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최선경 조사사무관님, 성남지원의 안수진 조사관님으로부터 우리 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비롯해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제 2 장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운용 및 현황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개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가족상의 변화,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개인주의 및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1]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가정폭력이나 소년범죄 및 아동학대 등과 같은 범죄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이러한 사회 현상이나 범죄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문제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 사건의 경우에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법률적 쟁점과 정서적 쟁점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기본적 욕구와 특성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사건의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3]

결국, 부부관계 · 친자관계와 같이 가족 내에서 그 발생 원인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하나의 문제가 여러 다른 문제와 원인과 결과가 중첩되는 특수성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처벌을 넘어서는 보다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4]

---

1)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동안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기술 및 정보화 사회로 변화해오면서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과거의 유교적 윤리관의 충돌로 인한 여러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박부진, "한국사회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제9집 (2000), 85].

2) 김주영 · 송진경 · 신소정,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의 비교를 통한 이혼의 특성변화 연구", 가정관리연구 제15권 (1996), 222 이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8400여 건이던 것이 2년 뒤인 2015년에는 2만5653건으로 급증했다[정락인, "위험한 가정폭력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시사저널 (2017. 2. 17.)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4915)]; 대법원과 법무연수원 등의 통계상 전체 소년 강력범죄는 줄고 있지만, 그 이유는 소년 인구 자체의 감소로 추론되며, 살인 범죄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김헌예 · 이유정, "소년 범죄는 인재(人災)…괴물 같은 아이 양성하는 사회 바꿔야", 중앙일보 (2017. 6. 7.) (https://news.joins.com/article/21641637)].

3) Linda R. Singer, Settling Disputes: Conflict Resolution in Business, Families, and the Legal System (2nd ed.), Boulder: Westview Press (1994), 31; 송현종, "가사조사관의 인력과 직무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26권 제3호 (2012), 46; 가사분쟁은 가족과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감정적, 비합리적 측면의 영향으로, 법률적 쟁점과 정서적 쟁점이 혼재해 있고, 분쟁 종결 이후에도 분쟁 당사자의 인간관계가 계속되는 특징이 있으며, 가사분쟁은 각 가족이 공유하는 고유한 규칙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독특하며, 그 처리 결과가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또 다른 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한다[노혜련 · 유서구 · 황혜신, "가정법원 전문조사관 제도의 활용과 성과에 대한 법관의 인식", 비판사회정책 제37호 (2012), 87].

4) 가정법원 사건의 경우에는 분쟁이 종결된 후에도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인이 되었던 문제나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과 실체를 해당 가족의 고유한 특성과 개인의 시각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 또한 원인이 되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기초하면서도 왜곡된 가족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조정하며, 당사자 내면의 자기회복력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棚村政行 等, 家族法, 青林書院 (2001), 21-23頁]; 송현종(주 3), 47.

이하에서는 우선 우리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제2절)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해당 제도의 운용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제3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I. 개설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구분되는 복합적 문제라는 특수성을 가지는데,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각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및 당사자를 비롯하여 관련된 가족들의 관계나 심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5]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이 전통적으로 다루어 왔던 민사 · 형사 사건과는 구분되는 가정법원 사건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을 인정해 오고 있다. 특히 이혼이나 양육과 같은 가족분쟁, 소년비행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원과는 구분되는 특별 법원(special court 또는 specialized court)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6]

우리의 경우는 1963년 법원조직법[7]의 개정을 통해서 가사분쟁과 소년범죄를 그 특수성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정법원이 설립되었다.[8] 1963년의 가정법원의 설립에는 가정법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있었다. 특히 전국여성단체는 1962년 8월 5일 가정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인 공개적인 판결보다는 인간의 도의, 인정 및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학자, 사회학자 및 의학자들의 관여 하에서 조정 · 화해와 같은 비공개 방식의 가사재판 제도가 이

5) 김상용, "독일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 가족법연구 제22권 제3호 (2008), 106.
6) 송현종 · 조소연 · 노혜련,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사관 인력과 교육에 관한 법관과 조사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9권 제3호 (2012), 2; 이러한 특별법원은 일반적으로 가정법원 또는 아동법원 등이 있다.
7) 법원조직법(법률 제1373호), 1963년 7월 31일 개정, 1963년 10월 1일 시행.
8) 송현종(주 3), 43 이하; 1963년 7월 31일 법률 제1375호로 가사심판법이, 법률 제1373호로 가정법원의 창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중 개정 법률이 각 제정 공포되었고, 두 법률이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가정에 관한 분쟁과 소년범죄를 그 특수성에 입각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정법원이 신설되었다.

상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9]

그러나 가사사건이 가진 특수성이라는 문제는 가정법원의 설립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정법원의 설립은 이러한 가사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전제 요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설립의 의의는 결국 가사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 및 확보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법원의 판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10] 이에 따라 우리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의 특수성에 기반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사관을 선발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가정법원은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의 인간관계학과 행동과학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조사관으로 선발하고 있다.[11]

이하에서는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Ⅱ), 가정법원 조사관의 선발 및 배치(Ⅲ) 및 조사관의 직무(Ⅳ)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도입

1. 개설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본격적인 시작은 서울가정법원이 설립된 직후인 1963년 12월 11일 심리학, 교육학 등의 전공자를 가정법원 조사관으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본다.[12]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시작은 가사조사관 제도의 역사와 다르지 않는데, 사실상 조사관의 수나 배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사조사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법원 조사관은 가사조사관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관련 법률이나 규칙 등에서는 단지 조사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보고서에서 해당 조사관 제도의 신설 취지와 이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가사조사관, 소년사건조사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을 통칭하여 “가정법원 조사관”으로 부

9) 여성단체의 이러한 견해는 외국의 많은 국가들이 가정법원이나 아동법원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해오고 있는 근거와도 일치한다[박우동, “가정법원 20년의 회고와 전망,” 재판자료 18(1983), 9; 송현종(주 3), 43 이하].
10) 김상용(주 5), 106-107.
11) 조사관을 활용하여 사건 당사자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 및 사후 기능회복을 도울 수 있다[노혜련 · 유서구 · 황혜신(주 3), 87].
12) 송현종(주 3), 51.

르고자 한다.

2.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정착 과정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은 1963년에 심리학, 교육학 등의 전공자를 가정법원 조사관으로 특별 채용하면서 시작되었지만, 현재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정착은 2001년 7월 1일의 인간행동과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가 8명에 대한 가정법원 조사관 채용으로 보고 있다.

가. 2001년 7월 1일 이전

1963년의 최초의 가정법원 조사관 임용 이후 조사관의 전문화를 위하여 1960년대에는 사회복지학 전공자와 정신의학 전공자를 2회 특별 채용했으나 이들은 1974년 이전에 모두 퇴직하였고,[13] 1972년 9명, 1983년 9명, 1988년 11명의 조사관보 또는 조사주사보를 다시 공개 채용하였으나,[14] 이들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직하거나 법원사무직으로 전직하여, 2001년 7월 1일 전까지는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이 순환보직하며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15] 결국 우리 가정법원의 조사업무는 법원의 사무 직렬의 공무원도 담당하게 되었는데, 앞서 심리학, 교육학 등의 석사 학력 이상의 전문가를 가정법원 조사관으로 특별 채용한 경우와 구분해, 이들을 일반조사관 또는 일반직 조사관으로, 외부에서 특별 채용한 자를 전문조사관 또는 전문직 조사관으로 부르고 있다.

1972년 이후 공개 채용되었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원인으로는 인간행동과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 조사관련 전문영역의 미개발, 지속적인 연수기회의 부재, 사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16] 특히 1972년 이후 채용된 소수의 전문조사관의 경우에는 전공이 주로 법학이고 교육학, 사회복지, 사회학, 심리학 등의 인간행동과학 분야를 부전공한 경우가 대다수로, 조사관 업무에 필요한 인간행동과학 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한 결여가 조사관 제도 운용 실패

13) 박우동(주 9), 22 이하.
14) 이재화, “가정법원 30년의 발자취,” 재판자료 제62권 (1993), 61; 송현종(주 3), 51.
15) 양정자, “가정법원의 현황과 발전방안 -전국에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며-,” 가족법연구 제14호 (2000), 477 이하.
16) 서울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에 관한 종합검토 (2003), 2-3.

원인으로 제기되기도 했다.[17]

그 이후에도 가정법원 조사관에 대한 전문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① 법원의 사무 직렬의 공무원에게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이원화된 인사행정상의 문제, ② 조사범위를 유책사항에 대한 조사로 한정, ③ 승진기회 제한으로 인한 전문직 채용자의 전직이나 퇴직 등의 문제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및 ②의 문제와 관련해 당시 가정법원은 가사조정과 가사조사관의 전문화를 통한 가사분쟁처리에 주력했었으나,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이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19] 조사업무는 주로 이혼사건의 유책사항 파악에 그치게 되었고 과학적 사실조사나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등 조정조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20] 결국 이를 통해 우리 가정법원의 조사관 제도가 정착될 수 없었던 이유가 전문조사관의 부재였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21]

③의 경우는 승진을 비롯한 조사관의 조직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이 전문조사관의 사기와 업무 동기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원인이 전문조사관의 전직이나 퇴직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1년 7월에 전문조사관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가정법원 조사관의 전문화를 위한 몇 차례의 노력이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이 순환보직을 통해 가정법원 조사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현행 가사조사관 제도는 대법원이 2001년 7월 1일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인간행동과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가 8명을 가정법원 조사관으로 채용하게 되면서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다.[22] 2001년의 전문조사관

17) 송현종, "가정법원조사관 인력 개선 필요사항", 내부보고서 (2017), 2.
18) 서울가정법원(주 16), 2-3.
19) 양정자(주 15), 496.
20) 전문조사관 제도의 정착 실패는 결국 가정법원의 설립취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조경애, "가정법원의 변화에 대한 약간의 제언," 가정법원 심포지엄 자료집, 대법원 (2012), 61]; 전문직 조사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법원의 일반직이 수행하게 되면서 유책사항에 대한 조사로 조사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며[송현종(주 3), 51; 서울가정법원(주 16), 2-3; 사법사편찬위원회, 역사 속의 사법부, 사법발전재단, (2009), 74], 이러한 실패가 가정법원이 후견복지 법원으로서 나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송현종(주 17), 2].
21) 서울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에 관한 종합검토(2003), 2-3; 송현종(주 3), 51.
22) 대법원, 사법발전계획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2003), 83; 서울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 (2009), 8-13; 송현종(주 3), 50-51.

채용의 배경에는 이전에 시행된 전문조사관 제도의 경우 조사관 전문화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성 있는 관심과 지원의 부족, 조사관 전문화에 대한 사법부의 내 · 외적인 이해와 공감대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조사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가사 · 소년보호 · 가정보호 · 아동보호 사건의 특수성에 따른 조사관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있었음에도 실무에서 조사관 제도에 대한 활용이 부족해 조사관 제도 원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23]

그럼에도 2001년 7월 1일 전문조사관의 채용을 시작으로 가정법원에서의 조사관 채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24] 가정법원의 신설 및 역할의 확대는 조사관의 역할이나 업무의 확대로 이어졌다.[25] 특히 최근에는 가정법원의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역할과 후견 · 복지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가정법원 조사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26]

특히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비롯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 제도로 인해 기존 가사조사관 직무의 대상이 아동과 부부를 넘어서 노인과 지적장애인에게까지 대폭 확대되었다.[27] 더구나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아동의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요구되면서, 입양과 관련한 업무까지 가사조사관의 부담이 되었다.[28]

3. 가정법원의 복지적 기능과 조사관의 역할

우리 가정법원은 본래의 설립 목적을 위한 사법적 기능과 최근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복지적 · 후견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29]

---

23) 송현종(주 17), 3.

24) 2001년 이후 가정법원의 조사관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실제로 필요한 수에 비해 채용된 인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25) 대법원(주 22), 83; 서울가정법원(주 22), 8-13; 송현종(주 3), 50-51.

26) 전보성, "가정법원 운영 현황보고," 가정법원 심포지엄 자료집, 대법원 (2012), 22 이하.

27) 임재훈, "국내외입양 가정법원 허가관련 고려사항," 입양특례법 시행 관련 간담회 자료(Ⅱ), 법원행정처, (2012. 8. 14.), 2; 송현종(주 3), 51 이하.

28) 가정법원의 역할과 함께 조사관의 업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자, 2001년 이후 채용된 전문조사관들은 가정법원의 후견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실조사의 내용과 기법을 발전시켜왔다[송현종, "가정법원조사관 인력 개선 필요사항" 내부보고서 (2017), 3].

29) 송현종(주 3), 45; 우리 가정법원이 수행하는 복지적 · 후견적 기능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의 해당 기능 수행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는 독일과 같은 경우도 있다. 독일의 경우는 가정법원이 복지적 · 후견적 기능을 모두 가정법원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복지적 · 후견적 기능을 일정 부분에서 수행하면서도, 구체적이고 하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의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보고서의 '제3장 외국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하의 '제3절 독일' 부분을 참조.

우선 사법적 관점에서 가정법원은 기본적으로 신분관계 또는 신분법상의 권리의무 관계를 창설하거나 소년비행에 대한 처우의 결정과 같은 법률적 문제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으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30] 사법 본연의 목적인 법 해석을 통한 규범적 해결을 도모하고, 법질서를 정립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31]

반면 복지적 관점에서 가정법원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사건관계인의 자질 또는 행동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장 적정한 방안을 모색하여 해당 가족의 실질적 문제 또한 해결할 책임을 지게 된다.[32] 특히 복지적 관점에서의 가정법원의 이와 같은 역할 및 기능은, "가족 사이의 분쟁인 가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후견기능과 그에 따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법원조직법 제3조를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우리 가정법원의 복지적 기능은 독일이나 일본에서의 가정법원의 기능 및 설립의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의 경우, 1928년 제35차 독일법률가 대회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Schiffer가 이혼소송절차에서는 사회심리학의 연구 및 방법론을 도입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주장은 당시에는 채택되지 못했다.[33] Schiffer의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어서야 이혼법 및 이혼절차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통해 지지를 얻게 되었고, 1976년 혼인개정법에 의해 가정법원이 설립되었다.[34] 그리고 일본의 경우, 가정재판소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발전하고 있던 미국의 소년법원과 가정법원의 영향을 받아 창설되어 발전해왔기 때문에, 독립성, 민주성, 과학성, 교육성 및 사회성을 가정법원의 지도적 이념으로서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학적, 교육적, 사회적 측면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가정재판소 조사관 제도를 만들었다.[35]

이때, 가정법원의 독립성은 가정의 조정과 소년(미성년자)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지방재판소와는 구분되는 갈등의 해결 방식을 의미하며, 민주성은 가사조정절차에서는 조정위원이, 소년심판절차에서는 민간의 촉탁소년보호사, 공사(公私)의

30) 家庭裁判所調査官研究所, 調査面接に関する実務上の諸問題 (1985), 3-5頁; 송현종(주 3), 45.
31) 廣井亮一, 司法臨床の方法(金剛出版, 2007), 15-20頁; 송현종(주 3), 46.
32) 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 家庭事件調査実務入門(再訂版), 研修教材第27号(2007), 1-2頁; 송현종(주 3), 45.
33) 김상용(주 5), 107-108.
34) 김상용(주 5), 107-108.
35) 宇多川潤四郎, "家庭裁判所の史的発展," 家庭裁判所調査官研修教材1 (1974), 41-42頁; 박주영, "일본의 가정재판소조사관 제도의 활용 -인사소송법상의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법학논총 제31호 (2014), 129 이하; 송현종(주 3), 47.

단체, 학교, 병원 등이 관여함으로써 절차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뜻한다. 그리고 과학성은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인간행동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당 문제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성은 소년에 대한 교화 방법을 포함하여 조사 및 심판 자체를 교육의 과정으로 이해해야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성은 가정재판소가 본연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6]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법원의 경우 또한 독립성, 민주성, 과학성, 교육성, 사회성을 지도이념으로 표방하여 치료법원, 교육법원 및 복지법원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현재 우리의 가정법원을 이혼, 친권 및 양육권 등의 가사사건,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37] 이러한 우리 가정법원의 지도이념은 결국 가정법원이 담당해야 하는 복지적 기능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법원이 복지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근거는 첫째, 가정법원 이용자의 특성, 둘째, 가사분쟁의 특성 및 셋째, 가정법원의 연혁에서 찾을 수 있다.[38]

첫째, 가정법원 이용자의 경우는 의료 · 심리 ·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법원 사건의 특수성과 연관되어 있다. 사건 당사자 중 많은 수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적합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법원을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까지도 통합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39] 또한 가사분쟁이 진행 중에 있는 당사자들은 분노, 상실감, 우울 등 극심한 정서적 ·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 사이에서 또는 부모와의 분쟁과정에서 심리 ·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0]

둘째, 가정법원이 복지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근거로서의 가사분쟁의 특성은

---

36) 송현종(주 3), 48.

37) 사법사편찬위원회, 역사 속의 사법부, 사법발전재단 (2009), 265; 주명식, "가정법원은 이혼법원이 아니다 (上) -조사조정을 중심으로-", 법률신문 1234호 (1978. 1. 5.), 5.

38) 송현종(주 3), 46.

39) Casey, Pamela · Hewitt, William, E., Court Response to Individuals in Need of Service: Promoting Components of A Coordination Strategy for Courts,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2001), 7-8.

40) Burke, Susie · Mclntosh, Jennifer · Heather, Gridley., Parenting after Separation, The 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2009), 4-7; 송현종(주 3), 4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법원 사건에는 본질적으로 감정적이고 비합리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고, 법률적 쟁점과 정서적 쟁점이 혼재되어 있으며, 당사자들의 기본적 욕구와 특성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41]

셋째, 가정법원의 복지적 기능 수행을 위한 마지막 근거는 가정법원의 연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세계 최초로 가정법원을 설립한 미국 가정법원의 경우, 가족 문제의 통합적 해결이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단순한 사법적 해결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종합적 해결을 시도하였다.[42]

이와 같은 가정법원의 복지적 기능에 대한 근거로서 가정법원 이용자의 특성, 가사분쟁의 특성 및 가정법원의 연혁은 궁극적으로는 가정법원의 성격 및 역할로도 연결되며, 이러한 가정법원의 복지적 기능이라는 역할은 앞서 살펴본 가정법원 설립의 의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은 가정법원의 복지적 기능의 수행은 가정법원의 설립과 함께 도입된 조사관 제도를 통한 인간관계학 분야의 전문가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가정법원 조사관의 임용 및 편제

1. 선발

가. 개설

법원조직법은 2005년 3월 24일 개정을 통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54조의3 제1항).[43]

법원조사관 등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의 선발 기준은 이원화되어 있는데, 기존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는 방식과 법원 외부에서 별도의 방식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있다.

---

41) Linda R. Singer(주 3), 31; 송현종(주 3), 46.

42) 소년법원의 성과를 계승하여 소년비행의 원인이 되는 가사분쟁까지 관할하는 최초의 가정법원이 1914년 미국 오하이오(Ohio)주 신시내티(Cincinnati)의 Hamilton County에 설치되었는데, 해당 법원이 'Hamilton County Juvenile Court'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한다[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Ohio Family Court Feasibility Study, Supreme Court of Ohio (1997), 1; 野田愛子, 家庭裁判所制度抄論, 東神田編集室, (1985), 4頁]; 송현종(주 3), 47.

43) 그리고 법원조사관은 4급 · 5급의 법원공무원 또는 대법원장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한 다른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게 된다(법원조사관 등 규칙 제2조 제1항).

(1) 기존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

법원조사관 등 규칙 제2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원공무원인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가정법원 조사관은 기존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는데, 조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으로서,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정리하면, 직렬에 따라서 요구되는 근속기간은 다르지만, 기존의 법원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을 충족하고,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의 인간행동과학 분야의 학사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가정법원의 조사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선발된 자가 가정법원 조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들을 일반조사관이라고 한다.

(2) 외부에서 별도로 선발하는 방식

기존의 법원공무원들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 이외에, 공개임용방식으로서 외부에서 별도로 충원하는 방식이 있다. 특히 가사조사관 · 소년사건조사관 ·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서기관 · 조사사무관 · 조사주사 · 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게 된다(법원조사관 등 규칙 제2조 제2항).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충원되는 가정법원의 조사관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가정법원의 사건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수준의 원인까지 파악하는 인간관계학적 접근의 필요에 따라 선발되는 전문조사관을 가리킨다.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가정법원 조사관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법원공무원 규칙 제24조의2 제1항), 소속기관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법원공무원 규칙 제24조의2 제2항). 그리고 가정법원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조사관 등 규칙을 통해 정해진다(법원조직법 제54조의3 제4항).

전문조사관을 위한 공개임용에서는 첫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둘째,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셋째, 전공이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발하게 된다. 물론 법원공무원 규칙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가 제한된다.

2001년 임용 시 전문조사관은 6급(주사)으로 채용되었으나, 현재 조사관의 임용요건은 일반임기제 7호로 채용된 후(연봉등급 7호), 3년 이후에는 조사주사보(조사직 7급)로 전환되고 있다(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2, 제19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2. 조사관의 증원 및 배치

현재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던 2001년 전문조사관에 대한 채용 이후로, 조사관에 대한 증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2007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단기로 22명, 장기로 50명의 전문조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산정했으나 5명만 증원되었다. 2007년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소년 3, 가사 20, 가정보호 3), 대구가정지원(소년 1, 가사 5, 가정보호 1), 부산가정지원(소년 1, 가사 2, 가정보호 1), 광주가정지원(소년 1, 가사 2, 가정보호 1), 대전가정지원(소년 1, 가사 1, 가정보호 1)에 가사조사관이 있었고 대부분의 기타 법원과 지원에도 가사조사관 1인 이상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조사관만을 별도로 살펴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전국 30명이 있었으며, 전문조사관이 없는 법원에서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명령(5% 미만)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심층적인 조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조사관이 없는 법원에서는 조사명령이나 면접조사를 아예 실시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법원행정처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92명의 전문조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2012년까지 11명만이 증원되었고, 이들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전문조사관이며, 나머지 절반은 일반조사관으로 다른 법원 업무에 대한 순환 보직의 개념으로 전임 또는 겸직으로 조사업무를 담당하였다.[44] 그 이후에 전문조사관은 지속적으로 증

44) 송현종 · 조소연 · 노혜련(주 6), 11.

원되어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관의 수는 160명으로 집계되었다.[45)]

[표1] 가정법원 조사관 수: 2001년과 2017년 비교

법원별	소년		가사		가정보호		아동보호	합계	
	2001	2017	2001	2017	2001	2017	2017	2001	2017
서울고등법원				1					1
서울가정법원	5(겸직)	4	11(겸직)	16	5(겸직)	7		11	32*
의정부지방법원		1	1	3		1			4*
고양지원				3		3	7		3*
인천지방법원	1		1		1			3	
부천지원			1	2	1	2	3		2*
인천가정법원		3		9		3			12*
수원지방법원	1(겸직)	3	1(겸직)	7	1(겸직)	3	2	1	10*
성남지원			1(겸직)	3	1(겸직)	3	3	1	3*
여주지원			1(겸직)	2	1(겸직)	2	3	1	2*
평택지원		2	1(겸직)	2	1(겸직)	2	3	1	2*
안산지원		3		3		3		1	3*
안양지원				2		2			2*
춘천지방법원	1(겸직)	3	1(겸직)	3	1(겸직)	2		1	3*
강릉지원			1(겸직)	1	1(겸직)	1	2	1	1*
원주지원			1(겸직)	1	1(겸직)	1	2	1	1*
속초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1*
영월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1*
대전지방법원	1(겸직)		1(겸직)		1(겸직)		1	1	
홍성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1*
공주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논산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서산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천안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1*
대전가정법원	1(겸직)	1	1(겸직)	6	1(겸직)	2		1	9*
청주지방법원		1	1(겸직)	1	1(겸직)			1	2
충주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1*
제천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영동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경주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포항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1*
김천지원		1	1(겸직)	1	1(겸직)	1		1	1*
상주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45)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2018), 172;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전문조사관의 수는 153명, 일반조사관의 수는 38명인 것으로 조사된다(다만, 사법연감에서의 인원은 실제 근무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체 조사관의 수(휴직 포함)와 사법연감과 같이 실제 법원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관의 수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법원별	소년		가사		가정보호		아동보호	합계	
	2001	2017	2001	2017	2001	2017	2017	2001	2017
의성지원			1(겸직)		1(겸직)			1	
영덕지원			1(겸직)		1(겸직)			1	
대구가정법원	2	3	1(겸직)	3	1(겸직)	3	3	3	6*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2	2	1(겸직)	7	1(겸직)	1	1	3	11*
동부지원			1		1			2	
울산지방법원		1	1(겸직)	4	1(겸직)	1	1	1	5*
창원지방법원	1(겸직)	3	1	3	1(겸직)	3	3	1	3*
마산지원				1		1	1		1*
진주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1*
통영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1*
밀양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2*
거창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2*
광주지방법원	1(겸직)		1(겸직)		1(겸직)			1	
목포지원		2	1(겸직)	2	1(겸직)		2	1	2*
장흥지원			1(겸직)	1	1(겸직)	2	1	1	1*
순천지원		2	1	2	1	2	2	2	2*
해남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광주가정법원	1(겸직)	2	1(겸직)	4	1(겸직)	2	2	1	6*
전주지방법원	1(겸직)	3	1(겸직)	3	1(겸직)	3	3	1	3*
군산지원			1(겸직)	1	1(겸직)	1	1	1	1*
정읍지원		1	1(겸직)	2	1(겸직)	2	2	1	2*
남원지원		1	1(겸직)	1	1(겸직)	1	1	1	1*
제주지방법원	1(겸직)	2	1(겸직)	2	1(겸직)	2	2	1	2*
								69	160

*겸임 또는 일부겸임

'[표 1] 가정법원 조사관 수: 2001년과 2017년 비교'를 보면, 소년 · 가사 · 가정보호 · 아동보호 사건의 조사관 수는 2001년의 경우는 69명, 2016년의 경우는 160명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정법원의 경우 2001년을 기준으로 서울, 대구, 부산, 광주의 4곳이었으나, 인천가정법원이 2016년 3월 1일 신설되어 2016년 현재 전국의 가정법원은 5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32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법원의 경우 조사관의 수가 10여 명 내외로, 서울가정법원의 조사관이 다른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46)]

[표 1]을 보면,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원에 소속된 가사사건, 소년보

46) 법원행정처, 2002 사법연감 (2012), 142.

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조사관은 전체 160명으로, 서울가정법원이 32명, 인천지방법원 12명, 부산가정법원이 11명, 수원지방법원이 10명이며, 나머지 법원들은 5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47] 이러한 조사관의 수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법원의 조사관인 126명에 비해서 2년 동안 3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8]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조사관은 서울가정법원의 32명을 제외하고는 부산, 대구, 광주 및 인천 가정법원의 경우는 10여 명 내외이며, 나머지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는 2명 내외로 1명의 조사관이 가사 · 소년 · 가정보호 · 아동보호 사건을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의 가정법원 조사관 수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16년에는 없었던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이 2017년에 배치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가정법원 조사관의 직무

1. 개설

가정법원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 조사하고, 그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법원조직법 제54조의3 제2항). 우리의 경우에는 사건이 가진 특수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관의 성격을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가사조사관,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소년사건조사관, 가정보호사건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아동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조사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은 가사조사관으로 통칭될 만큼 가사조사관(2)의 직무 범위가 가장 넓은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업무가 추가 및 확장되었다. 소년사건조사관(3)을 비롯한 가정보호사건조사관(4)과 아동보호사건조사관(5)의 직무는 가사조사관에 비해 그리 넓지 않으나, 법규에 의해 가정법원 조사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하에서는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

47) 법원행정처(주 45), 172.

48) 2015년을 기준으로 법원의 조사관의 수는 서울가정법원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가정법원이 9명, 인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각 7명이며, 나머지 법원들은 1명 내지 2명으로 나타난다[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 (2016), 160].

2. 가사조사관

넓은 의미에서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실조사의 기능을 포함해, 인간관계를 조정하고 이용자의 감정과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에 재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조정 · 원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49] 가사조사관은 첫째,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둘째,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셋째,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하게 된다(가사소송규칙 제8조).

가사소송규칙 제8조에 명시된 가사조사관의 임무를 세분화하면 첫째, 사실조사(동규칙 제9조)(가), 둘째, 조정조치(동규칙 제12조)(나), 셋째, 의견 진술(동규칙 제13조)(다), 넷째,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제68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122조)(라)로 볼 수 있다. 언급된 4가지의 임무 외에도 법률 개정이나 법원의 후견적 기능의 확대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마)를 수행하고 있다.

가. 사실조사

가사소송규칙 제9조는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에 관한 규정으로,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해야 하며(동조 제1항),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1) 사실조사의 성격

(가) 독립성

가사소송규칙 제9조 제1항은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라는 업무의 성격에 관한 내용으로 사실조사에 있어서 조사관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관의 '독립성'은 가정법원의 특징 중 하나로, 가정법원의 독립성은 가정의 조정과 소년(미성년자)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 법원과는 구분되는 갈등의 해결 방식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를 사실조사 또는 조사관의 독립성과 연결하게 되면, 조사관이 사실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개인적 편견이나 인적 · 물적

49) 서울가정법원, 실무편람 가사조사관리모델 (2010), 64-65.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조사의 독립성은 궁극적으로 이어서 살펴볼 과학적 사실조사에 관한 가사소송규칙 제9조 제2항과 연결된다.

(나) 과학적 조사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과 같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광범위한 사실을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과학적 사실조사를 하게 된다. 또한 가사조사관은 면접조사, 출장조사, 심리검사,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관의 분석, 평가,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을 형성하여 종합적으로 보고하게 된다.[50]

이러한 과학적 조사의 필요성은 가사사건의 해명이 단순히 법률적 관점이나 상식적인 사회통념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고, 사건관계인인 당사자 등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점을 인간심리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전문적 식견에 의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에 있다.[51]

이하에서는 과학적 조사를 위한 방법으로써, ① 면접조사, ② 출장조사 및 ③ 심리검사에 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52]

① 면접조사

가사조사관은 면접조사를 통해 당사자 및 사건관계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가정법원의 사건처리를 위해 적정한 자료를 수집하고 당사자가 현재의 문제를 이성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원조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접조사는 첫째, 가정법원이 사건의 적정하고 타당한 처리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조사의 기능과 둘째, 분쟁의 진상을 파악하여 인간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부적응 상태에 놓인 당사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의 감정과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에 재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조정 · 원조의 기능을 가진다.

50) 송현종(주 3), 52 이하.
5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2003), 129.
52) 송현종(주 3), 52 이하.

② 출장조사

출장조사는 소환조사에 대응하는 면접조사의 한 방식으로, 당사자가 있는 법원 이외의 장소로 가사조사관이 출장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사조사관은 출장조사를 통해 분쟁의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특히 당사자의 질병, 수감, 소환불능 등으로 인하여 소환조사에 현실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조사 및 자료 수집방식이다.[53]

가사사건에서는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파악 및 주변 관계인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출장조사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54]

③ 심리검사

당사자의 주장이나 사실의 진술을 듣는 면접조사만으로는 당사자의 인격이나 사안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의 심리를 조사하여 성격의 이상 유무와 그 성격이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하게 된다.[55] 이는 면접조사의 보조적 조사방법인 심리검사에 해당한다.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나 조정조치를 수행하는 경우에 추상적인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심리검사를 활용하게 된다.[56] 특히 이혼 사건과 관련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이나 면접교섭사건과 관련하여 심리평가가 주로 행해지고 있다.[57]

(2) 사실조사의 절차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고 난 후에는,

53) 출장조사는 조사관이 가사분쟁의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해결에 접근하고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론 중 하나로 특히, 부모의 이혼으로 불안한 환경에서 고통 받는 자녀의 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때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과 관련된 사건에서 가사조사관의 출장조사가 긍정적인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이혼 당사자들이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고 자녀의 적응과 복지를 위해 부모가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전현덕,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중 출장조사 방법에 관한 검토”, 전국법원 조사관 세미나 자료집 (2006)]; 최선경, “서울가정법원의 가사조사현황과 조사방법”, 전국법원 조사관 세미나 자료집, 서울가정법원 (2010), 10.

54) 최선경(주 53), 9-10.

55)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2년 4월부터 심리검사를 활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보호 사건 및 가정보호사건에서도 심리검사가 실시되고 있다[최선경(주 53), 8].

56) 심리검사는 일반적으로 5 내지 6개의 검사 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전문자격(임상심리전문가 등)이 있는 전문조사관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최선경(주 53), 8].

57) 최선경(주 53), 9.

앞서 살펴본 방식을 활용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해당 조사명령이 기한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0조).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조사보고서를 통해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고의무를 부담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조 제1항).

가사조사관이 작성해야 하는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포함하여, 조사관의 의견 또한 기재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그리고 해당 조사보고서에는 가사조사관으로서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고, 조력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지까지도 기재되어야 한다(동조 제3항).

나. 조정조치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2조). 가정법원의 사건처리는 단순한 법적 조치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당사자 기타 사건관계인의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의 원만한 조정은 물론 그들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 그 자체와 그러한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원조적 · 복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 시행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바로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정조치이다. 가사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환경 및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복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에서 조정조치는 가정법원의 복지적 기능의 대표적 직무에 해당한다.[58]

가사조사관은 사회복지기관과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정조치를 명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조에 의한 제11조 제1항의 준용). 그리고 해당 조정조치에 관한 보고서에는 조치의 방법과 결과 및 본인의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조에 의한 제11조 제2항의 준용).

가사조사관이 취하는 조정을 위한 조치로는, 첫째,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조정, 둘째, 조언 · 원조, 셋째, 심리적 조정조치가 있다.[59]

---

58) 법원행정처(주 51), 116.
59) 한숙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의 운영개선방안”, 가사재판연구 I ,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논문집

(1)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조정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조정은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적당한 보호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하는 활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사조사관이 사건처리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을 비롯한 기타의 환경의 조정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그 기관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적당한 보호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하는 것을 의미한다.[60] 이때 사회복지기관은 보건소, 요양시설, 병원, 각종 상담소, 직업안내소와 같은 공공이나 민간의 일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부양료 청구사건의 신청인이 당장의 생활상태가 곤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잠정적인 보호 구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사조사관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당사자가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당사자가 정신장해를 일으켜 가족이나 주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61]

(2) 조언 및 원조

조언 · 원조는 당사자가 처한 인간관계 또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당사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조언을 하거나 원조하는, 이른바 '사례별 사회 복지적(casework)' 활동을 말한다. 특히 가사조사관은 심리 상담이라는 큰 범위 내에서 조언을 통해 당사자가 현재의 인간관계나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당사자의 긴장 완화를 통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조하게 된다.

(3) 심리적 조정조치

심리적 조정조치는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감정적 갈등이 심한 당사자에 대하여 정서적 완화나 감정의 진정을 통해 당사자가 이성적인 상태에서 조정이나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심리적 조정조치는 감정적으로 비합리적인 상태에 놓인 당사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들이

(2007), 274.
60) 한숙희(주 59), 275.
61) 한숙희(주 59), 274.

원활하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62]

다. 의견 진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는데, 가사조사관의 의견진술은 기일에의 출석이 전제된다(가사소송규칙 제13조). 기일에의 출석을 통한 가사조사관의 의견진술은 서면보고서만으로는 사안을 해명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조사관이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당사자를 원조함으로써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을 가진다.[63]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신청동기, 분쟁내용, 당사자의 주장 등에 따라 사안을 해명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사조사관이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조언이나 원조를 할 수 있다.

라.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의무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및 유아의 인도의무에 대하여는 특별한 간접강제의 수단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발하고 그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나 감치에 처할 수 있는 이행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및 제68조). 이때 이행명령은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전의 지급과 같은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 의무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 과태료나 감치에 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및 제68조).[64]

결국 이행명령 제도는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 그 의무이행의 확보가 절박한 당사자들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데, 이러한 이행명령과 관련하여 가사

62) 심리적 조정조치를 통해서 당사자의 근본적인 인격 변화나 치료적 개입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심리적 조정조치는 법적인 판단작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의 참가, 관계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서비스 개입에 있어서 실질적 한계를 가진다. 심리적 조정조치는 이러한 점에서 행정기관의 복지정책과도 구분된다[최선경(주 53), 11].

63) 서울가정법원(주 49), 200.

64) 이행명령 제도는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 그 의무이행의 확보가 절박한 당사자들에게 매우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송현종(주 3), 50].

조사관은 가정법원의 명을 받아 판결, 심판, 조정 등에 의하여 이행의무가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의 실태를 점검, 조사하고 이행을 권고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의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는데(가사소송규칙 제122조),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는 이행명령의 전(前)단계 조치로서 재판장의 명을 받아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의무이행의 실태를 점검, 조사하고 이행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가정법원이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을 통한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를 행하게 된다.[65]

실제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는 우선 가사조사관이 의무자에게 전화로 이행을 권고한 후, 이행권고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며, 이행권고서의 송달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자를 가정법원에 소환하거나 가사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66] 이행권고 제도는 가정법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이행명령에 선행하여 당사자인 의무자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이행권고를 받고도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불이행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의 제재).[67]

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가 가사분쟁에서 유용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사채무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채무에 비하여 액수가 적고 대개의 경우 소액분할 지급이나 정기지급의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가 많아서 장기간의 기일을 요하므로 강제집행을 할 경우 그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어, 가사사건의 경우 부적합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68] 가사사건에서는 고령자나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나 사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족 간의 권리 의무 관계라서 강력한 권리실현이나, 부양료, 양육비와 같이 집행을 위한 기간도 당사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 이행권고 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69]

---

65) 문준필, “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족법연구 제18권 제2호 (2004), 263.
66) 서울가정법원(주 49), 294 이하; 송현종(주 3), 49-50.
67) 한숙희(주 59), 275.
68) 한숙희(주 59), 275.
69) 한숙희(주 59), 275.

마. 가사조사관의 추가적 직무

(1) 이혼 전 안내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민법 제836조의2), 이와 같은 이혼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이혼 절차와 이혼에 따른 법적 효과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자녀양육교육을 포함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또는 가사조사관이 할 수 있는데, 규모가 큰 법원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가사조사관이 자녀양육안내를 맡고 있다.[70]

그러나 법원 규모가 작아 가사조사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예규인 '가사재판 ·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법원장이 담당자를 위촉할 수 있다.[71] 특히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가사재판 등 관련 상담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월 1회 이상 법원에서 자녀양육안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담당자에 대한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사회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급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위촉하고 있다.[72]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에서와 같이 이혼에 관한 안내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장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의 상담에 관한 예규 제4조 제2항). 이에 따라 2010년 1월 11일부터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전문조사관을 통해서 재판상 이혼 당사자에 대해서도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73]

---

70) 최영길, "협의이혼 하려면 '자녀양육안내' 들어야", 법률신문 (2012. 10. 3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8551) (2018. 9. 3. 확인).

71) 가사조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5항,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의 상담에 관한 예규 제4조 및 가사재판 ·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법원장이 별도로 담당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2) 이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없는 법원의 경우에 위촉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의 경우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에 전문적 지식 및 가사재판 등 관련 상담분야의 경험과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조사관의 자격요건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최영길(주 70)].

73) 전국 법원에서는 2012년 11월 관련 지침을 마련하면서 자녀양육안내를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신아람, "법원 '자녀양육안내 담당자 워크숍' 개최", 파이낸셜뉴스 (2014. 7. 3.)]; http://www.fnnews.com/news/201407031746470030 (2018. 9. 3. 확인).

아래의 '[표 2] 부모교육안내'[74]를 보면, 이혼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심리, 정서적 특성, 소송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모의 실수, 자녀의 심리, 정서적 특성, 자녀들이 이혼 수용과정, 자녀의 연령에 따른 반응과 특성, 연령 특성에 따른 부모들의 바람직한 대응방안, 부모 갈등 유형(이혼 과정의 갈등정도)과 자녀의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 친권 ·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부담에 대한 설명, 해결을 위한 대화 방안, 부모역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교육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하고자 하는 부모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이혼 후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전문가로부터 교육받게 된다. 그리고 담당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이혼 후 자녀의 복지 등에 관한 설명을 통해 이혼하고자 하는 부모에 대해 교육하게 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해당 부모교육을 전문조사관이 담당하고 있다.

[표2] 부모교육 안내[75]

주제	내용	세부 내용
도입	누구를 위한 교육	•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이' •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부모'
	유의점	• 약물남용 등으로 심신이 혼란한 경우 •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경우
부모의 심리상태 알아보기	심리상태	• 정서적 롤러코스트 • 상대방 벌주기
	시간에 따른 이혼에 대한 심리 변화	• 충격 분노 감정의 기복 수용
	부모의 실수	• 자녀와 장기간 관계 단절 • 자녀 앞에서 서로를 비난 • 자녀를 소송의 도구로 이용
	자기인식과 행동	• 부모 자신의 감정 통찰 • 바람직한 대처행동 선택하기

74)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가사 · 소년보호 · 가정보호 조사관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1), 79-80.
75)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80.

자녀의 심리상태 알아보기	이혼과정에서 자녀가 경험하는 감정의 단계	• 부인, 분노, 흥정, 우울, 수용
	자녀가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 버림받음 • 좌절감
	자녀의 연령에 따른 행동 특징	• 영아기: 모우, 우등 등 양 감소 등 • 유아기: 분리에 대한 두려움 등 • 초등학교: 양친 사이 중대 등 • 중고등학교: 학습부진, 친구관계 어려움
	자녀의 적응을 돕는 부모의 행동	•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 안정틀 유지 • 자녀의 가정 표현 도와주기 • 사람이 변함없음을 말하기 등
	전문가의 도움	• 자녀의 고통 등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때 • 자녀의 증상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때 등
소송에 임하는 태도	문제 해결 중심	• 소송구조에서 승패 관점 • 문제해결 중심의 관점
	부모 분쟁 해결과 자녀의 적응	• 이혼의 단기적 영향, 장기적 영향 • 부모의 갈등해결 방식이 주요 요인
소송 중 해결해야 할 사항	친권자, 양육자 지정	•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 등
	면접 교섭권	•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 등
	양육비	• 자녀를 양육할 부모로서의 의무 등
효과적인 대화법	해결촉진 대화	• I 메시지 사용 •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기
이혼 후 부모역할	공동양육관계	• 부모의 역할은 계속

가정법원에서 시행하는 부모교육의 목표는 해당 교육을 받은 부모가 자녀의 심리 · 정서적 영향,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발달 연령에 따라 미치는 영향, 자녀의 이혼과정 및 이혼 후 적응에 대한 이해에 있다. 또한, 해당 부모교육을 통해 이혼하고자 하는 부모의 양육권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적 지식, 공동양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적응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성년후견

2011년 3월 7일(법률 10429호)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제도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신설되었다.[76] 후견사무

76)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성년요보호자에 대한 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안이 2011년 2월 18일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1년 3월 7일 공포되어 2013월 7월 1일부터 시행되었

와 관련하여 가사조사관은 후견 사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인 법원사무관을 비롯한 가사조사관에게 성년후견사무 · 한정후견사무 · 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4 제1항). 그리고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를 위해서도 가정법원은 법원사무관이나 가사조사관을 활용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7).

실제 가사조사관의 후견감독 업무는 초기의 실태조사 후에 후견인과의 전화 연락을 통해 이루어지며, 초기의 실태조사에 대한 변경 상황 발생에 대한 점검을 확인하게 된다.

(3) 입양

민법상 입양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의 경우 예비양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교육부재에 대한 비판 및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가정법원에서는 2017년 2월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민법상 입양에서의 예비양부모를 위한 교육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2월 29일 개정을 통해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9로 신설되었다. 동규정은 친양자 입양 및 미성년자 입양 허가 심판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자에 대한 미성년자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만약 가정법원이 직접 예비 양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없거나 예비 양부모가 이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가정법원에서 명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은 1차적으로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며, 만약 가정법원이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면, 2차적으로 입양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의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신설된 성년후견 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 · 개편하고, 성년후견 등을 요구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자기 의사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아래의 '[표 3] 민법상의 예비 양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예비양부모를 위한 교육의 경우, 기본적인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강의는 1시간씩 3차례로 구성되어 있다.[77]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을 추가하여 4시간의 교육도 시행되고 있다.[78]

교육 내용은 첫째, 입양의 법률적 이해, 둘째, 자녀의 발달과 적응, 셋째, 자녀와 부모의 소통에 관한 3과목의 강의로 구성된다. 특히 제1강인 '입양의 법률적 이해'는 각급 법원의 가사조사관들이 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강의는 입양청구에 대한 심리절차를 포함해 입양의 법률상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79]

[표3] 민법상 예비 양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분	강의명	교육 내용	교육 담당자
1강	입양의 법률적 이해	• 입양을 준비하는 마음 • 준비되지 않은 입양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미성년자입양과 친양자입양의 법률적 효과와 차이점 • 입양사건의 심리절차	각급 법원의 가사조사관 등
2강	자녀의 발달과 적응	• 입양가정의 이해 • 입양 삼자의 심리적 특성 이해 • 가족의 변화와 입양 말하기 • 아동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상담 · 복지 서비스	중앙입양원 위촉강사
3강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	• 나의 의사소통 유형 • 경청하기 실습 •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Tip •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중앙입양원 위촉강사

민법상 입양의 예비양부모 교육이 최근에 가정법원 주도로 시행이 의무화된 것에 반해서 입양특례법상의 요보호아동을 위한 예비입양 부모 교육은 입양특례법 제10조 제3항, 제21조 제3항과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전부터 입양기관이 주도하고 있다.[80] 입양기관에서 예비양부모 교육을 담당하는 강

77) 예를 들어 제1강, 제2강 및 제3강을 각 1시간씩으로 구성할 수 있다.
78) 예를 들어 제1강은 1시간, 제2강 및 제3강 3시간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79) 제2강의는 중앙입양원의 강사가 담당하게 되며, '자녀의 발달과 적응'이라는 강의를 통해 아동의 권리 및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주가 된다. 제3강 또한 제2강과 마찬가지로 중앙입양원에서 위촉된 강사를 통해 강의가 진행되며,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이라는 주제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실습을 포함하여 의사소통 및 훈육과 관련 내용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20].
80) 그리고 입양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 형식과 교육시간에

사 대부분이 국내입양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입양부모가 가능하면 입양할 마음을 갖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81] 입양하고자 하는 양부모들에게 아동중심의 입양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82]

3. 소년사건조사관

전통적인 소년사법은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교육적 · 복지적 측면을 강조하거나 형사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는 등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문제소년의 비행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소년과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소년보호'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83] 이와 같은 소년보호의 이념은 소년사법의 역사와 일치하고 있는데, 소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극단적인 제재를 피하고, 성인에 비해서 완화된 제재라는 방식을 우선하고 있다.[84]

우리의 경우 소년사건조사관의 시작은 미군정시대로 볼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1958년 7월 소년법 제정 시에 '소년보호관'을 통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의 소년보호관의 직무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인 강사의 선정, 수강생의 규모 등에 대한 사항은 민간 입양기관에 위임되어 있어, 입양교육의 내용과 운영상황에 대한 공적 개입은 현재로서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변미희 · 안재진 · 강지현, 예비양부모교육 교재 개발, 중앙입양원 (2015); 김진석, "입양제도 개선방안: 입양 절차상 공적개입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제도 개선방안 발표토론회 국회자료집, 대구 · 포천 입양아동 학대 ·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2017. 5. 31.), 66].

81)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4개의 입양기관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양부모될 자에 대한 입양교육방식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비 양부모 교육은 8시간으로 구성되며 1회 참석으로 충분하게 된다. 교육은 실무자, 학계 전문가나 입양부모를 통한 강의, 사례발표 및 영상물 관람이 주를 이루었고, 한 회에 이루어지는 교육인원은 약 40명 내외로, 교육의 내용은 입양 및 파양의 요건 · 절차 ·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와 정서에 관한 정보나 입양부모의 사례발표 등이었다. 현재 입양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은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일방적 강의 방식을 통해서는 예비 입양 부모가 자신의 삶과 입양 동기 등을 성찰하고 입양 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 등에 대한 숙고나 입양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주 79), 22-25].

82) 변미희 · 안재진 · 강지현,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개발 연구, 중앙입양원 (2015); 노혜련,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제도 개선방안 발표토론회 국회자료집, 대구 · 포천 입양아동 학대 ·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2017. 5. 31.), 28.

83) 홍영오 · 황태정, "소년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1. 12.), 51.

84) 홍영오 · 황태정(주 83), 51.

구명함에 특별히 유의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었다(1958년 소년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그 후 1963년 7월 소년법 개정 시에 소년보호관은 '조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조사관의 직무는 의학 · 심리학 · 교육학 · 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한 조사 업무에 해당한다(소년법 제9조). 소년법 제56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형사법원이 소년형사사건에서 소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사건 대상 연령 인하,[85] 회복적 사법 이념의 도입,[86] 보호처분의 내실화 및 다양화 등과 같은 1988년 소년법 전면개정 이후 제기되어 온 문제의 해결 방안이 포함되었다.[87]

소년사건조사관이 소년부 판사의 명을 받아 행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기 위한 사회적 자료의 조사(가), 둘째, 심리기일에의 출석 및 의견 진술(나), 셋째, 동행영장의 집행(다), 넷째, 집행상황의 보고(라).

가. 사실조사

소년사건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라는 소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사실의 조사를 의미한다.

---

85)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教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86) 회복적 사법정의는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전통적인 입장과는 다른 변화된 이해와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전통적인 사법정의의 관행이 보복적인 입장에서 구금을 실행함으로써 범죄자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과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파괴된 상태를 고쳐 바로 잡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결국 회복적 사법정의는 그에 따르는 사법 절차를 거치는 전체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 범죄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주변 사람 더 나아가 지역사회 등 어떠한 범죄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복적 사법정의는 관련자들에서 범죄로 인해 뒤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화해하고 정상적 관계를 재확인시켜 주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한다. 더구나 참여를 넘어서 범죄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최선경, "소년보호사건의 새로운 절차에서 조사관의 역할", 서울가정법원 실무연구회 (2011. 3. 28.), 15].

87) 오영근, "개정 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춘계 형사정책연구세미나 자료집 (2008), 11-12.

(1) 조사대상

구체적으로 사실조사의 대상은 첫째, 비행 사실, 그 동기와 비행 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둘째,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소년의 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셋째, 소년비행화의 경위 및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 상황과 향후의 보호능력, 넷째,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다섯째, 소년의 심신상태, 여섯째, 그 밖에 심리와 처분에 필요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소년심판규칙 제11조 제1항).

조사의 대상과 관련해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은 먼저 소년과 보호자의 진술서 등 소년의 비행사실에 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게 된다. 사건기록에는 비행사실 자체에 대한 기록 외에도 비행의 동기, 가족상태, 생활관계 등 비행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된다. 소년사건조사관은 사건기록의 검토가 끝나면 사건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언제 어떤 대상자에 관하여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사활동이 시작된다.[88]

(2) 조사방법

소년사건조사관은 조사방법으로서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야 하며(소년법 제9조), 이러한 전문적 지식은 면접조사, 조회조사, 환경조사, 각종의 심리검사, 기록조사 또는 소년의 행동관찰(소년심판규칙 제11조 제3항)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실현된다.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 심리학자 · 사회사업가 · 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12조).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년법에 따른 임시조치(법 제18조)를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소년심판규칙 제13조).

조사방법에는 면접, 출장, 서면 또는 전화에 의한 조회, 각종 검사, 관계기관의 기록 검토 등의 방법이 있으며, 적합한 조사방법은 조사 기간과 조사대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조사관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보고 또는 필요한 사건기록이나 서류를 넘겨줄 것

88) 김동림, 소년법, 화성사 (2000), 359; 홍영오 · 황태정(주 83), 71.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 관찰 또는 심리검사 등을 할 수 있다(소년심판규칙 제11조 제2항). 그리고 이 경우의 출석 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나. 심리 출석 및 의견 진술

소년사건조사관은 해당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소년법 제23조 제2항), 출석한 소년사건조사관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 제1항).

다. 동행영장의 집행

출석요구서(소환장)를 송달하였으나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소년사건조사관은 소년부 판사로부터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소년법 제1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그리고 동행영장이 집행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소년법 제16조 제3항).

라. 보고의무

조사가 종료되면, 소년사건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을 통해 소년부 판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소년심판규칙 제12조 제1항), 해당 보고의 전후를 통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소년심판규칙 제12조 제2항).

소년에 대한 조사의 목적은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년사건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소년에 대한 처우를 선택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년심판규칙은 해당 조사관이 보고 전후에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89]

89) 문제소년은 개선 가능성이 높고 교정교육 등의 효과도 소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적정하게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 결정 후에도 결정된 보호처분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집행상황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수탁기관의 상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은 이후에 기관평가 및 처분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한숙희(주 59), 276].

마. 추가된 직무

최근 소년부 판사들의 주도하에서 소년보호재판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소년보호절차의 치료[90]와 서비스 개념을 결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소년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91]

(1) 청소년 참여법정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 개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참여법정은 청소년이 소년심판에 관여하는 참여재판 제도의 하나로,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소년에게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는 제도이다.[92] 현재 청소년 참여법정은 조사명령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소년사건조사관은 조사절차에서 청소년 참여법정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청소년참여인단과 진행자에게 제공하며, 소년의 부과과제 이행사항을 최종 점검해 판사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93]

청소년 참여법정 제도를 통해 비행 소년 역시 다른 비행 소년에 대한 청소년 참여법정의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재판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의식 함양 및 자존감 회복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94]

---

90) 치료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은 현재 미국의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주도하는 사법이념들 중의 하나이며, '보살핌의 윤리(ethics of care)'에 대한 인식과 인정을 강조하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론이다. 예를 들면, 치료감호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는 치료사법으로 볼 수 없으며, 치료사법은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그 처분에 의해 실제로 치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판사가 사전에 실질적 치료가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또한, 소위 '개전의 정'을 양형에 참작하는 것 자체는 치료사법이 아니지만, 개전의 정이 없는 사람을 법정에서 진정한 개전의 정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재범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치료사법의 실천적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마약치료법정, 유소년법정, 가정폭력법정 등과 같은 문제해결법정이 있다.

91) 최선경(주 86), 4.

92) 곽한영, 청소년 참여법정의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11), 77.

93) 최선경(주 86), 6-7.

94) 청소년 참여법정은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 청소년들에게 사법교육을 할 기회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로 관여하는 교사, 학생은 물론 해당 학생의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및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최선경(주 86), 4-5].

(가) 청소년 참여법정의 절차

① 사건접수 및 판사의 적정사건 선정

청소년 참여법정은 실제 재판절차가 아니며 심리개시 결정 전 조사절차로 진행된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학교장 등의 통고사건이나 일반 송치사건 중 소년부 판사가 청소년 참여법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청소년 참여법정에 회부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사건은 경미사건, 초범 또는 비행성이 약한 사건, 자백사건(부인시 심리개시결정절차 이행)의 경우이며, 단순 폭력 · 갈취 · 사기, 오토바이 등 무면허 운전, 용돈 확보성 절도, 공공기물파손, 기초질서위반, 가출 등 유해환경이나 담배 · 술 등 유해물질 취급 등의 사건 중에서 적절한 사건을 선별한다.

재판부의 청소년 참여법정 담당자가 소년의 보호자에게 청소년 참여법정에 대한 안내서와 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소년과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우편으로 법원에 접수하도록 한다.[95] 청소년 참여법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소년재판절차로 진행된다.

② 조사관의 기초조사

소년사건조사관은 소년과 보호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후에, 소년의 비행사실과 동기, 가족사항,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등을 조사하고 조사관 의견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96]

소년사건조사관은 조사절차에서 소년과 보호자에게 청소년 참여법정에서의 절차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고, 소년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재판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소년사건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청소년 참여법정에서 청소년참여인단과 진행인에게 제공되므로 소년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③ 청소년 참여법정에서의 심리(조사절차)

청소년 참여법정에는 소년과 보호자가 법정에 참여하고, 5명 내지 9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97]이 배심원의 역할을 하게 되며, 진행인[98]이 청소년 참여법정의

95) 최선경(주 86), 5.
96) 최선경(주 86), 6.
97) 청소년 참여법정 절차를 수행할 청소년(청소년참여인단)의 선정을 위하여 법원장은 매년 관할 내 소재지 중

절차를 진행한다.

비공개가 원칙이며, 청소년 참여법정의 진행은 첫째, 청소년참여인단의 선서, 둘째, 모두 절차의 진행(진행인이 보호소년의 비행 및 인정여부 등을 확인함), 셋째, 사건본인의 변명, 넷째, 청소년 참여인단의 질의(질문지 사용), 다섯째, 보호소년의 최후변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청소년 참여인단은 평의를 진행하여 보호소년에게 적절한 부과과제[99]를 선정하고, 평의가 종료되면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게 부과할 과제를 결정하여 과제를 부과하며 수행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알려주게 된다.[100]

④ 소년의 부과과제 이행

해당 소년은 지정된 기간에 부과과제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한 과제는 담당 소년사건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년사건조사관은 소년 및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부과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 참여법정 및 부과과제 이행과정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의 생각과 느낌을 파악하고 소년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여 부과과제수행보고서를 작성한다.[101]

⑤ 완료시 심리불개시 결정

소년이 부과과제를 성실하게 잘 이행한 경우에는 심리불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과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 기일을 연장하여 부과과제를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소년에게 재범이 있거나 기타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재판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학교장 또는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참여인단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추천에는 당해 청소년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98) 가정법원장, 가정지원장 또는 소년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장은 청소년 참여법정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진행인으로 위촉하고 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다. 진행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0. 5. 19. 현직 교사 7명, 변호사 7명, 총 14명을 진행인으로 위촉하였다.

99) 부과과제 중 일기쓰기와 청소년참여인단으로의 활동은 의무적 부과과제이며, 이와는 별도로 보호소년은 ① 안전운전에 대한 강의 듣기, ② 복지관 등에서의 사회봉사활동 참여하기, ③ 형사법정 방청 후 소감문 쓰기, ④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받기, ⑤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에서의 미디어체험학습 참여하기, ⑥ 금연클리닉 참여하기, ⑦ 기타 중에서 2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100) 최선경(주 86), 6.

101) 최선경(주 86), 7.

(나) 조사관의 역할

청소년 참여법정이 소년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 결과를 위한 형식적인 이행이 아닌, 소년의 실제 변화가 필요하다. 소년사건조사관은 조사과정을 통해 소년과 보호자에 대해 청소년 참여법정의 동의를 유도하고, 해당 법정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통해 이후 소년의 행동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년사건조사관은 본인이 담당하는 소년의 비행사실과 동기, 생활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간략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소년 참여법정에서 청소년참여인단과 진행인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법정 이전의 조사절차에서 소년사건조사관은 청소년 참여법정에서의 소년의 역할, 부과과제 이행 시의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소년에게 설명해야 한다.[102]

(2) 심리상담 조사 제도

심리상담 조사 제도는 일본의 보호적 조치와 시험관찰을 참고하여 고안한 제도로서, 보호소년 등이 일정 기간 가정법원이 위촉한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담을 받도록 하고, 소년사건조사관이 해당 사항을 점검하여, 처분의견을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심리상담 조사는 일정 기간 동안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소년과 그의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103]

소년부 판사는 사건검토 및 심리를 통해 심리상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상담 조사명령'을 내리고, 심리기일 중 심리상담 조사명령을 결정하게 되는 때에는 소년 및 보호자에게 심리상담 조사명령에 대한 안내를 하여 상담에 대해 동기를 부여한다.[104]

소년사건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심도 있는 상담이나 소년에 대한 환경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사명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으므로 우선 조사를 종결하면서 심리상담 조사명령의 필요성을 '조사관 의견'란에 기재하고, 소년부 판사가 이를 고려하여 심리상담 조사명령을 하게 된다. 소년사건조사관은 일반조사명령을 통해 보호소년 및 보호자를 면접하여 심리상담이 꼭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고, 소년

102) 소년사건조사관은 조사의 진행 도중 청소년 참여법정이 소년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사보고서의 의견란에 기재하고, 소년부 판사가 이를 참고하게 된다[최선경(주 86), 8].
103) 최선경(주 86), 9-10.
104) 최선경(주 86), 9-10.

에게 적절하게 개입해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105]

심리상담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은 우선 소년과 보호자를 면담한 후 소년에게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연계한다. 상담은 통상 1주일에 1회 정도의 간격으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소년에게 우울증, 편집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후에, 일정기간 약물 등의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106]

전문가는 일정기간 상담 또는 치료를 하고, 상담이 종결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년사건조사관에게 제출하게 되고, 소년사건조사관은 소년 및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소감, 느낀 점 등을 청취하고 소년의 변화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학교 교사 등의 의견 등을 파악하고, 추후 소년에게 필요한 조치, 소년에 대한 처분의견 등이 포함된 심리상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107]

소년부 판사는 심리상담 조사를 통해, 변화가 특히 눈에 띄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 조사를 통해, 소년 및 보호자가 불성실하게 임하였거나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경우에는 기존에 예상했던 처분을 하거나 그보다 상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3) 화해권고 제도

화해권고 제도는 소년법의 화해권고 조항의 신설을 근거로, 법원이 소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이다. 소년법 제25조의3의 화해권고 규정은 2007년 12월 21일 개정(법률 제8722호)을 통해 신설되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 그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화해권고에 따라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105) 최선경(주 86), 10.

106) 예를 들어, 소년이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지만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재비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년사건조사관은 심리상담을 통해 소년 및 그 가족을 돕게 된다. 그리고 사안은 경미하나 반복적으로 재범을 하는 경우에는 심도 있는 상담 및 가족치료 등의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정신과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나 소년과 보호자가 치료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가 요구되기도 한다[최선경(주 86), 10].

107) 최선경(주 86), 10.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화해권고 규정의 신설 목적은 피해자의 요구를 고려하고, 가해자를 지역사회에 재통합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당사자 간의 자율적 갈등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년보호재판에서 회복적 사법을 위한 실천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108] 소년사건조사관은 화해권고를 위한 조사사항을 조사하고, 피해자와 전화 연락하거나 직접 면접해 피해자의 심정 등을 경청하고, 화해권고 제도를 안내한 후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가) 대상

화해권고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사건의 동기와 성격, 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 정도, 가해자의 비행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가 범죄 소년[109] 또는 촉법 소년[110]이어야 하며, 우범 소년[111]인 경우는 제외되며,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해야 하는데 범죄사실의 시인이 반드시 자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거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제1항), 협박죄(제283조 제1항), 특수폭행죄(제261조), 상해죄(제257조), 공갈죄(제350조) 및 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 절도죄(제329조), 특수절도죄(제331조 제2항),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제331조의2) 및 각 미수범, 재물손괴죄(제366조), 중손괴죄(제368조),[112] 특수손괴죄(제369조 제1항) 등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수가 원칙적으로 3인을 초과하지 않고, 각 범죄의 총 시간적 간격이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 관계에 있어 가해소년이 여러 명인 경우, 가해자가 5인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이 대상이 될 것이다.[113]

---

108) 이와 관련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절차인 화해권고제도를 비롯하여 청소년 참여법정, 심리상담 조사명령, 처분 전 훈육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 유형은 매우 다양해졌다[홍영오 · 황태정(주 83), 35].

109)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을 범죄 소년이라고 한다.

110)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 소년이라고 한다.

111) 우범 소년은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다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킨다.

112) 제366조에 의한 중손괴에 한정됨.

113) 그러나 성폭력사건을 비롯해 가해 소년이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나) 절차

소년부 판사는 화해권고절차에 회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화해권고에 적합한 사건인지 여부 및 관계인의 의사'를 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명령을 할 수 있다. 화해권고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화해권고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해당 동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며, 피해자와 그 보호자(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화해권고절차에 대한 참여 동의가 요구된다. 화해권고에 대한 동의 이전에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화해권고 제도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며,[114] 동의한 후에는 화해권고기일에 피해소년과 그 보호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물론 가해소년과 그 보호자의 동의도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당사자의 의사 확인은 조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소년사건조사관이 하며, 그렇지 않은 사건은 참여관이 하게 되지만, 심리진행 도중에 화해권고에 회부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직접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다.[115]

그러나 시급히 화해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는 소년사건조사관의 조사를 생략하고 당사자의 의사 확인을 거쳐 바로 화해권고절차에 회부할 수 있고, 조사를 마치고 심리기일을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도 필요하면 화해권고절차에 회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종국적인 보호처분 전에는 심리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화해권고절차에의 회부가 가능하다.[116]

화해권고기일에서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하면,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기일 합의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종결한다.[117] 당사자가 합의에 실패한 때, 즉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출석한 소년과 보호자에게 심리기일을 고지한 다음, 가해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하게 된다.

경우, 가해소년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가해소년이 구속되었거나 임시위탁 등 신병의 구속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제외된다[최선경(주 86), 16-17].

114) 화해권고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해소년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없애고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설명하게 된다[최선경(주 86), 16-17].

115)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 등의 의사 확인은 참여관이 하게 된다[최선경(주 86), 18].

116) 최선경(주 86), 18.

117) 합의서에는 금전지급에 관한 사항 등 법률적인 의무를 수반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는 앞으로 학교에서 사이좋게 지내기로 한다.' 또는 '피해소년의 보호자와 가해소년의 보호자는 앞으로 지역 사회의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와 같은 이른바 신사적 조항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경우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선경(주 86), 19].

(4) 1호 보호자 처분 전 교육

소년법 제18조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1호). 해당 조치 이전에 '1호 보호자 처분 전 교육'을 통해 소년사건조사관은 소년보호 1호 처분이 예상되는 소년과 그의 보호자를 교육함으로써 보호소년의 성행과 환경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내용에는 소년보호처분, 소년의 발달 특성, 소년과 보호자 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 등이 있으며, 해당 교육을 받은 직후에는 소년과 그의 보호자는 소감문과 생활계획을 작성하고, 곧바로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받게 된다. 1호 보호자 처분 결정을 받는 보호소년들에게는 법정에서 간단한 훈계만을 하고 심리가 종결되기 때문에, 소년들이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효과가 거의 없고, 보호자들 또한 보호처분 결정 이후 소년들을 양육하고 보호 감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소년들과 보호자들에게 소년사건조사관이 교육을 함으로써, 보호자들에게 소년들의 보호감호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청소년기 특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소년들의 재비행 방지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소년부 판사는 1호 처분 결정이 예상되는 사건을 기록검토를 통해 선별하고, 각 사건을 배당받은 소년조사관은 가능한 한 각 재판부의 재판 일정에 맞추어 교육일정을 지정하여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118] 해당 교육은 집단교육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참여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교육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1회 교육에 3 내지 4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년사건조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은 소년조사의 경험을 토대로 소년의 특성과 보호자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소년의 사춘기 특성과 보호자의 역할 등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은 각 처분에 대한 설명과 보호소년의 사춘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 소년과 보호자가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진다. 소년과 보호자가 각각 교육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나 조사관의 과중한 업무량 및 시간적 제약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소년과 보호자가 1시간 동안 함

118) 1호 보호자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보호자는 법원에 사건이 송치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출석요구서를 받고,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때 본 교육에 대한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문을 함께 동봉하고 있다[최선경(주 86), 13].

께 교육을 받게 된다.[119]

교육이 끝나면, 소년과 보호자는 교육에 대한 소감문 및 앞으로의 생활계획에 대해 작성하고, 소년사건조사관은 소년과 보호자의 태도, 특이사항 등이 포함된 간략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소년과 보호자는 법정에 출석하며(심리기일이 진행),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 대해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을 결정한다.[120]

4. 가정보호사건조사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21] 가정폭력은 연령층이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일반적인 대인폭력과는 달리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은밀하고 지속되는 특징을 가진다.[122] 특히 가정폭력의 대상이 여성, 아동, 노인과 같이 가정 내의 약자에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 가족 내의 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997년 12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1997년 12월 31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0월 26일부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가정구성원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 ·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다른 가족구성원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명예훼손, 사자(死者)에 대

119) 최선경(주 86), 14.

120) 소년법 제18조의 1호 보호자 처분을 예상했으나, 불개시 처분으로 결정되거나 2호 또는 3호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121) 이때 가정구성원은 첫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 · 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셋째,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넷째,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122) 노혜련 · 유서구 · 황혜신(주 3), 92;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무의식적 인권침해로써, 주요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폭력이 대물림되는 등의 특성을 가진다[2017 가정보호조사관리모델 실무편람, 서울가정법원 (2017), 3].

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 또는 신체의 수색, 강요, 사기, 공갈, 재물손괴 등이며, 언급된 범죄 중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 또한 포함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특히, 가정보호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분 대신 다양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23]

서울가정법원은 2004년 처음으로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배치하여,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전담시키고 있다. 가정보호사건의 조사는 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성행 · 경력 · 가정상황 · 심리상태와 해당 범죄의 동기 · 원인 및 실태를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사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의 역할은 가정폭력의 실태의 조사에 그치지 않고, 폭력의 원인 및 동기를 파악해 가정구성원간의 역기능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적으로 개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124] 즉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인간관계제과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 · 진단하여, 행위자의 처분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면접, 관찰, 심리검사 등의 전문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동시에, 행위자에 대해 교육적 · 상담적 접근이라는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125]

가. 조사 업무

판사의 명을 받아,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행위자 · 피해자 기타 가정구성원의 성행(性行), 경력, 가정환경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히기 위하여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①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② 범죄 후의 정황, ③ 행위자의 심신 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④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⑤ 기타 심리와 처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및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6조 제3항).

이때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조사 · 심리 시에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법원은 우

123) 이들 보호처분의 목적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환경 조정 및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조).
124) 2017 가정보호조사관리모델 실무편람(주 122), 17.
125) 2017 가정보호조사관리모델 실무편람(주 122), 17.

선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 ·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우선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조회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 심리 시에 조회의 결과로 고려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이때의 조사는 행위자 ·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이 출석하여 수행되는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는 가정보호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 · 관찰 · 심문 등을 할 수 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6조 제1항). 그리고 조사가 완료되면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7조).

나. 의견 진술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로부터 받은 진단소견 · 의견조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또는 원조 · 협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6조 제2항).

그리고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3항).[126] 이때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다. 집행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동행영장,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관은 첫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둘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셋째,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

126) 만약 피해자의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퇴장 또한 허용하고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3항).

사의 제한, 넷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 수강명령, 다섯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여섯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일곱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여덟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의 보호처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에 관한 집행상황을 판사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53조 제1항).

또한 법원이 언급된 보호처분을 결정하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의 이행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53조 제2항).

5. 아동보호사건조사관

아동보호사건은 18세 미만인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학대 즉,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등을 가리키며, 가정법원은 아동에 대한 이러한 학대와 관련해,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학대아동을 위해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은 아동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이나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또한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지급 등과 같은 배상명령도 보호처분과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아동을 위해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가능한데, 해당 명령은 피해아동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거나 가정법원 판사가 직권으로도 행할 수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전에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러한 조사와 심리를 거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격리시키거나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

탁 등을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그리고 임시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시의 보호명령 또한 가능하다.

다만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가정법원은 2017년을 시작으로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을 배치하게 되었다. 2016년까지는 가정법원 조사관으로서의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가정법원이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통해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보호사건의 조사 · 심리 · 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의 공백을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1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위의 조사 외의 집행과 관련해서도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7년에 아동보호조사관의 배치가 시작되었으므로 예전의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 의한 아동보호사건 업무가 아동보호사건조사관에 의해 직접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문제점

I. 개설

이하에서는 제2절에서 살펴본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가 내포한 문제점을 비롯하여, 운용을 통한 문제점을 첫째, 가정법원 조사관의 이원적 구성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Ⅱ), 둘째, 승진 및 조직 체계(Ⅲ), 셋째, 조사관에 대한 연수(Ⅳ), 넷째, 조사관의

127)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9조, 제42조, 제56조 내지 제62조의 규정).

배치(Ⅴ), 다섯째, 조사 기간 및 횟수(Ⅵ), 여섯째, 가정법원 조사관의 직무(Ⅶ) 관련 문제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가정법원 조사관의 이원적 구성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조사관 전문화에 대한 실패 원인 중 하나로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12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관의 선발은 외부에서 선발되는 전문조사관과 내부에서 충원되는 일반조사관으로 구분되며, 소속 및 배치에 있어서도 사무국 내에서 전문조사관의 경우에는 조사 직렬, 일반조사관의 경우에는 법원사무 직렬로 구분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 업무에서는 소년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성이 요청된다는 이유로 전문조사관이 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조사관도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 일반조사관과 전문조사관의 담당 업무

직 무		내 용	전문 조사관	일반 조사관
가사사건	사실조사	객관적 사실조사	○	○
		주관적 사실조사	○	×
		심층면접, 심리검사	○	×
	조정조치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조언, 상담	○	×
	이행점검권고	이행의무실태파악	○	×
	면접교섭관리	면접교섭 시행 원조, 교육	○	×
	이혼부모교육	이혼부모에 대한 제반 사항 교육	○	×
	성년후견	성년후견 감독	○	×
	입양부모교육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에 대한 교육	○	×
소년보호사건		사실조사, 처분 전 교육, 집행상황보고 등	○	×
가정보호사건		사실조사, 집행상황보고 등	○	×
아동보호사건		사실조사, 집행상황보고 등	○	×

128) 특히 전문조사관의 증원, 인적 구조의 일원화, 교육 연수 문제는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송현종 · 조소연 · 노혜련(주 6), 11].

‘[표 4] 일반조사관과 전문조사관의 담당 업무’[129]를 보면 일반조사관이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는 사실조사 부분으로 한정되며, 오히려 가정법원이나 지원이 아닌 법원에 소속된 일반조사관은 조사업무를 비롯하여, 민 · 형사과장, 사무과장, 참여사무관 등 사무 직렬 공무원의 업무를 겸하고 있다.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이나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에게 법률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조사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도 전문조사관에게는 최소한의 자격으로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의 관련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사사건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인간관계학 관련 학문의 전문성을 가진 자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 및 필요성에 근거해 전문조사관이라 부르는 이들을 별도로 선발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조사관에게 전문조사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도입 취지와도 사실상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과는 달리 가사사건의 경우 일반조사관이 전문조사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가사사건에서의 인간관계학적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어, 가정법원의 복지적, 후견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업무의 배치는 일반조사관이 담당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조사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조언과 상담, 당사자의 갈등 해소, 심리치료나 조정조치 등의 영역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조사를 통해 여러 조치, 조언이나 상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조사관에게 객관적 사실조사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가사사건의 특수성 및 이러한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별도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표 4]에서와 같이 일반조사관이 담당한 객관적 사실조사 부분을 다시 전문조사관이 주관적 사실조사, 심층면접이나 심리검사 등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수밖에 없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원의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일반조사관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년의 조사관 업무 후에 다시 법원의 일반 업무로 복귀하게 되므로 결국 조사업무는 단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0]

129) 송현종(주 17), 7.

예전에는 일반조사관이 가사조사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가사사건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개인적인 편견을 드러내거나, 화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설득기술이 부족하여 당사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131] 조사관은 조정을 할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하여 당사자나 변호사로부터 항의를 받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132] 구체적으로는 조사과정에는 일반조사관이 판결 결과를 예단하여 당사자에게 소취하 등을 종용하거나,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는 쟁점에 관하여 (주장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는) 판단을 하려 하거나, 자신의 신념, 가치관, 개인적 경험을 내세우며 당사자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려 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신념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거나, 폭행을 이유로 다른 곳에 머무르면서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주소를 묻거나, 이혼 사건에서 부부재산분할에 관한 적절하지 않은 법률적 충고를 하거나, 유책이혼사건 조사 도중 조사관과 남편이 흡연을 이유로 함께 자리를 비우는 경우, 양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재산분할사건에서 조사관이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133]

III. 승진 기회의 부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 이후에 임용된 전문조사관의 경우에는 3년간의 계약직 조사관으로서, 해당 3년 동안의 활동을 살펴본 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주사 6급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전문조사관의 3년간의 계약직 신분이 법원 공무원 6급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들의 지위와 관련하여 법원 사무 직렬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특히 2006년 전국법원공무원 노조준비위원회를 통해서는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이 9급으로 채용되어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평균 15년이 걸리는데 반해, 조사관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 만에 6급으로 채용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134] 또한 해당 위원회에서는 6급 조사관

130) 이와 관련해 법관의 94%(74명), 전문조사관의 93.9%(31명), 일반직 조사관의 50%(10명)가 전문조사관으로의 일원화에 적극 찬성 또는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송현종(주 17), 8].
131) 문준필(주 65), 270.
132) 이유정, “가정법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2권 제3호 (2008), 12.
133) 이유정(주 132), 12.
134) 조은혜, “전국 법원 6급 계약직 정규직 전환 논란”, 미디어다음 (2006. 9. 12.) (https://news.v.daum.net/v/20060912182528070) (2018. 9. 12. 확인).

(조사주사)이 5급으로 승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135]

2002년부터는 조사관으로 채용된 후에는 3년간의 계약 기간을 거친 후에 7급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문조사관 채용 요건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경에는 전국법원공무원 노조준비위원회의 반발이나 우려도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 사회의 심각한 취업난으로 7급으로 채용 조건을 변경해도 이전과 동일한 학력 및 경력의 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그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136]

2011년을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에는 1명의 조사서기관(4급) 및 11명의 조사사무관(5급)은 모두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으로, 이들 중에서 전문조사관은 한 명도 없었으나,[137]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가정법원의 전문조사관 중에서 5급(사무관)으로 승진한 경우는 5명으로, 이들 중 4명은 2001년에, 1명은 2002년에 신규 임용되었다. 현재 5급으로 승진한 4명의 전문조사관의 경우에는 6급으로 채용된 경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7급으로 임용된 조사관들은 직급이나 승진 기회가 더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38] 2001년 전문조사관의 채용 이전에는, 직급이나 승진 기회에 대한 전문조사관의 사기 저하가 조사관의 퇴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문조사관의 퇴직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9] 그러나 이러한 전문조사관의 퇴직률 감소의 원인이 이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최근의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우리 사회 전체의 취업난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40]

특히 전문조사관의 업무가 일반적인 법원의 업무와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사기나 소속감 저하는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135) 전국법원공무원 노조준비위원회의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서 조사관 또한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선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혜인사라고 볼 수 없으며, 조사주사(6급)로 채용하더라고 우려하는 것처럼 5급 법원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번 조치는 사무 직렬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행정처는 밝혔다[조은혜(주 134)].

136) 조은혜(주 134).

137)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117.

[표5] 서울가정법원 조사관 인력 구성(2011년 8월 기준) (단위 :명)

조사서기관 (4급)	조사사무관 (5급)	전문조사관			계
		조사주사(6급)	조사주사보(7급)	일반계약직 7호	
1	11	6	7	5	30

138)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발전 및 조사관의 전문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전문조사관의 승진 기회의 미비가 제시되었다[송현종 · 조소연 · 노혜련(주 6), 11].

139) 예전에는 전문조사관의 퇴직률이 높아서, 조사관 업무 관련 노하우를 축적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이유정(주 132), 12].

140) 2011년에는 10년 이상 근무하던 서울가정법원 전문조사관 1명(1기), 2010년에는 약 7년 이상을 근무하던 전문조사관 1명(3기)의 숙달된 전문 인력이 퇴직하였다[송현종(주 17), 5].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141]

2011년에 8월에는 5급인 전문조사관이 한 명도 없었으나, 2018년 8월에는 5명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예전에 비해 승진기회가 많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이전에 5급으로 승진한 3명의 조사관을 비롯해, 2001년(6급)과 2002년(7급)에 신규 임용된 조사관들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기간은 약 15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원의 6급 사무 직렬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인 약 8년 6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전문조사관에 대한 이와 같은 승진 기회의 부족 또는 제한은 본인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나 법원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형식적 업무 처리로 연결될 수 있다. 물론 각기 다른 직렬의 승진체계를 단순히 기간으로만 비교하여 동일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무국 내에서의 승진체계라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일 것이다.[142]

Ⅳ. 조사관의 배치

신규 연수를 받은 전문조사관이 가정법원이나 규모가 있는 지방법원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경력 있는 전문조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지원에 단독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가사조사관, 소년사건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겸임하는 지원으로 단독 배치되는 경우에 신규 임용된 조사관에게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물론 가정법원이나 규모가 있는 지방법원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선임 전문조사관을 통해 의문이나 어려움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실제로 각 지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조사관의 경우에 신규 임용된 조사관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법원에 배치된 조사관의 경우 순환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

141) 물론 전문조사관의 승진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

142) 법원의 6급 사무 직렬 공무원의 경우, 5급 승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기간이 4년 내지 5년으로 해당 기간이 승진을 위한 충족 요건은 아니나, 가정법원 조사관의 경우도 기간만 경과한다고 해서, 모든 조사관이 승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143] 신규 임용된 전문조사관이 지원에 단독으로 배치되어, 가사, 소년, 가정보호까지 겸임하게 되는 경우, 해당 조사관에게 인간관계학 또는 인간행동과학 분야의 전문화된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표 6] 신규 임용자 과정(가사조사관) 시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규 임용된 가사조사관에 대한 5주간의 교육으로는 가사조사관으로서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도 기대하기 어려운데, 단독으로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까지 겸임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 1]을 보면, 대부분의 지원의 경우에는 1인이 가사조사관을 비롯하여 소년사건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등을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모든 조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전문조사관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상 조사관의 많은 수가 여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육아나 출산을 이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전문조사관의 배치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결국 1인이 가사사건을 비롯하여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이나 아동보호사건 등을 겸임하고 있는 조사관의 휴직 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조사관의 인원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V. 조사 기간 및 횟수

2017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에서는 사실조사로 인해 가사사건에서 소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실제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사실조사의 기간과 관련한 불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실시되는 가사조사의 경우, 매달 1회로 수개월의 기간이 요구되어 효율적인 소송 수행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가사조사를 1주일 또는 2주일 간격으로 하여 전체 소요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144]

이에 대해서 가정법원은 조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실체와 문제 해결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3회 이상의 조사(1회 평균조사시간

143)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 내에서는 순환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144) 일반적으로 3회 정도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최소한 3월의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2017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의 내용].

은 3시간 내지 4시간)는 필요하지만, 조사기일 간격이 단축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사를 하는 조사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의 사실조사가 한 달 후로 정해진다면, 앞선 조사 기일에서의 조사 내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가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또한 조사 기간과 관련해 당사자가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나 쟁점이 잘 정리되어 있어 굳이 조사관의 조사가 필요 없다고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도, 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위해서는 몇 개월이 소요되므로, 당사자들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가정법원의 조사기일 단축 문제는 궁극적으로 가정법원 조사관의 인력 충원에 관한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VI. 조사보고서의 열람 및 공개

서울가정법원의 2002년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판사들의 약 88%가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해서 유용하다고 답했으며, 판결에 대한 기여도는 약 44%, 조정에 대한 기여도는 약 53%로 보았다.[145]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의 결과는 가사조사보고서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예전에는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대한 열람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당시의 가사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체득한 사실을 모두 기재할 수 없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분쟁원인의 약 60%만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한다.[146] 열람이 가능했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항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여, 현재에는 조사보고서의 사실조사 부분만 공개되며 조사관의 의견 부분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 후에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의 열람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선 이유로 인해 조사관의 의견 부분은 비공개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를 비롯한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는 법원에 갈음하여 법관의 사실인정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47]

145) 송현종(주 17), 7.
146) 문준필(주 65), 263.

다만, 가사조사보고서와는 달리 소년사건조사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나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당사자를 보호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해당 사건의 조사보고서의 경우는 별도의 공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VII. 조사관에 대한 연수

가정법원 조사관에게 제공되는 연수는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연수와 그 이후의 보충적인 교육인 후기 연수로 구분된다.

1. 신규 연수

조사관 연수는 신규 임용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 5주간의 교육으로, 해당 연수를 받은 후에, 조사관들은 각 법원에 배치되어 조사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해당 조사관 연수는 새로 임용된 조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조사관을 위한 교육이다.[148] 우리의 경우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2013년(1기)에 시작되었으며, 2018년(6기)에 이르는 동안 기존의 3주의 연수 기간이 5주로 연장되었다.

2018년에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표 6] 신규 임용자 과정(가사조사관) 시간표'와 같이 5주(1월 8일 ~ 2월 9일) 동안 시행되었으며, 3주간의 이론 연수와 2주간의 실무수습으로 구성되었다. [표 6]의 시간표에 따른 신규 임용자 과정은 18명을 대상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운영은 등기사무관 1인과 법원서기 1인이 담당하였다.

147) 2017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의 내용.
148)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이 가정법원 조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관을 위한 신규 연수와는 별도의 교육이 마련되어 있다.

[표6] 신규 임용자 과정(가사조사관) 시간표

시 간		제1교시	제2교시		제3교시	제4교시	제5교시	제6교시	제7교시
일자	요일	09:10–09:55	10:10–10:55		11:10–11:55	13:40–14:25	14:40–15:25	15:40–16:25	16:40–17:25
1/8	월		교육안내	입교식	친교의 시간	가사조사관 제도의 이해		법원조직의 이해	
1/9	화	성년후견 제도의 이해				가사조사실무 I			
1/10	수	법학개론			민사소송실무	가사조사실무 II			
1/11	목	소년보호사건조사실무				가족관계등록실무		국제결혼과 국적취득	
1/12	금	민사소송실무				가족관계등록실무		체육활동	
1/15	월	소년사건실무				가정보호 · 아동보호사건 조사실무			
1/16	화	소년사건실무	가사비송실무			인성강좌 I		민사신청실무	
1/17	수	인성강좌 II 합반			민사소송실무	가사조사실무 III			
1/18	목	가정법원의 후견적 · 복지적 업무				공문서 작성법과 법원 맞춤법		청소년비행의 이해	
1/19	금	소년형사조사관에 대한 이해				재판사무시스템교육		실무수습 안내	
1/22 ~ 2/2		실무수습				실무 수습			
2/5	월	면접조사의 실제와 조사실무				아동면접의 실제		가사소송실무	
2/6	화	민법(가족법)				보호사건재판실무		인성강좌 III	
2/7	수	가사소송실무				민법(가족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2/8	목	민법(가족법)	민사신청실무			양육비 이행의 실제		가사소송실무	
2/9	금	공직윤리		설문작성	수료식				

[표 6]의 연수 과정 프로그램은 그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가사조사관의 직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수 프로그램의 과목 중에서 소년사건과 관련된 내

용은 소년사건 실무(약 3시간), 청소년 비행의 이해 (1시간 30분), 소년형사조사관에 대한 이해(약 3시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연수 시간은 약 7시간 30분이다. 가정보호사건이나 아동보호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가정보호 · 아동보호사건 조사실무 수업(45분, 4회)의 3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과목은 가사조사관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다.

5주간의 신규 연수 프로그램에는 2주간의 실무 수습기간을 통해 조사 업무에 관한 내용을 학습받기는 하지만, 조사관 업무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5주간의 교육만으로 조사 업무를 습득하여 실무에서 이를 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약 7시간 30분의 교육을 통해 소년사건조사관의 역할이나, 3시간의 교육을 통해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조사관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 업무에서도 신규 채용된 인력들이 업무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해된다.[149]

2. 후기 연수

신규 연수의 경우에는 가사조사관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후기 연수는 가사조사관과는 별도로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조사관을 위한 연수로 구분되어있다. 조사관에 대한 정기적인 후기 연수는 201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외부 교육에 관한 참여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보충적 후기 연수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50]

가. 가사조사관

‘[표 6] 신규 임용자 과정(가사조사관) 시간표’에 따른 신규 임용자 교육 이후에 조사관을 대상으로 아래의 ‘[표 7] 가사조사실무과정 시간표’와 같이 가사조사관을 위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실무과정 수업은 양육 평가, 심리검사 기법, 다문화가정에 관한 수업을 포함하고 있어, 최근에 확대된 가사조사관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의 시간표에 따른 연수는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 간 50명의 조사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실무과정 연수도 조사관들의 요청에 따라 최근에 도입되었다.

149) 이유정(주 132), 12.
150) 송현종 · 조소연 · 노혜련(주 6), 11.

[표7] 가사조사실무과정 시간표

시간 / 요일	제1교시 09:10–09:55	제2교시 10:10–10:55		제3교시 11:10–11:55	제4교시 13:40–14:25	제5교시 14:40–15:25	제6교시 15:40–16:25	제7교시 16:40–17:25
월		교육안내	입교인사	가사소송 실무	가사소송 실무	양육비 이행의 실제		공직윤리 / 합반(411호)
화	양육평가의 이해				다문화가정의 이혼 및 입양의 이해		인성강좌 I / 합반(411호)	
수	아동그림검사의 실제				인성강좌 II / 합반(411호)		가사상담의 이해	
목	성년후견 및 후견감독 사건 조사실무				국제결혼과 국적취득		체육활동	
금	면접교섭의 실제		수료인사	설문작성				

[표 7]의 시간표를 살펴보면, 가사사건과 관련한 과목이 3시간 내지 4시간의 이론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수업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가사조사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지는 사실상 의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행해지는 후기 연수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사조사관들이 5일 동안 시행되는 후기 연수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소년사건조사관 ·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

'[표 8]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조사실무과정 시간표'는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조사관을 위한 후기 실무연수이다. [표 8]의 시간표는 2018년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 동안 50명의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실무과정이다.

[표8]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조사실무과정 시간표

<table>
<tr><td>시 간</td><td>제1교시</td><td colspan="2">제2교시</td><td colspan="2">제3교시</td><td>제4교시</td><td>제5교시</td><td>제6교시</td><td>제7교시</td></tr>
<tr><td>요일</td><td>09:10–
09:55</td><td colspan="2">10:10–
10:55</td><td colspan="2">11:10–
11:55</td><td>13:40–
14:25</td><td>14:40–
15:25</td><td>15:40–
16:25</td><td>16:40–
17:25</td></tr>
<tr><td rowspan="2">월</td><td rowspan="2"></td><td rowspan="2">교육안내</td><td rowspan="2">입교인사</td><td colspan="2" rowspan="2">소년보호사건
조사실무
I</td><td rowspan="2">소년보호사건
조사실무
I</td><td colspan="2" rowspan="2">소년보호사건
조사실무
II</td><td>공직윤리</td></tr>
<tr><td>합반(411호)</td></tr>
<tr><td>화</td><td colspan="5">소년형사조사관에 대한 이해</td><td colspan="2" rowspan="2">청소년비행의 이해</td><td>인성강좌 I</td></tr>
<tr><td colspan="5" rowspan="2">UN아동권리협약의 이해와 실제
–소년사법을 중심으로–</td><td>합반(대강당)</td></tr>
<tr><td>수</td><td>인성강좌II</td><td rowspan="2">아동보호사건
상담처분의 실제</td></tr>
<tr><td></td><td colspan="2">합반(411호)</td></tr>
<tr><td>목</td><td colspan="5">가정폭력사건 상담처분의 실제</td><td colspan="4">가정보호 · 아동보호사건 조사실무</td></tr>
<tr><td>금</td><td colspan="4">피해아동보호명령
치료처분의 실제</td><td>수료인사</td><td>설문작성</td><td></td><td></td><td></td></tr>
</table>

해당 [표 8]에서, 소년보호사건 조사실무 수업의 경우에는 약 3시간, 소년사건 조사관(약 3시간)이나 청소년 비행(1시간 30분)등의 수업에 약 4시간 30분, 소년사법의 인권과 관련한 수업은 약 3시간으로,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전체 약 10시간 30분 정도의 실무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연수는 아동보호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관련 수업으로 약 9시간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연수 프로그램이 가사조사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소년보호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과 관련한 후기 실무연수는 조사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표 8]의 해당 과목의 구성이나 횟수 및 기간을 살펴보면, 이를 통해서 소년사건을 비롯한 가정보호사건이나 아동보호사건 업무에 대한 파악 및 적절한 수행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151]

2018년에 실시된 [표 7]과 [표 8]의 후기 실무연수 프로그램의 연수 기간은 동일하게 5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후기 연수 기간은 5일이 아니었고, 해당 기간도 점차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상 조사관들은 과도한 업무나 인력

151) 이와 같은 실무과정만으로는 소년사건조사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홍영오 · 황태정(주 83), 33].

부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며, 법원연수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52]

VIII. 조사관의 직무

가정법원 조사관으로 가사조사관(1), 소년사건조사관(2), 가정보호사건조사관(3)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4)의 직무와 관련한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가사조사관

가. 직무 수행 주체

앞의 '[표 4] 일반조사관과 전문조사관의 담당 업무'를 보면, 소년사건조사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아동보호사건조사관과는 달리 가사조사관의 경우에는 일반조사관이 임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조사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조사관의 업무는 사실조사에서도 객관적 사실조사에만 한정되므로, 전문조사관과 일반조사관이 하는 업무가 동일하지는 않다.

사실상 사실조사는 객관적 사실조사, 주관적 사실조사를 포함하여, 심층적 면접과 심리검사를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물리적으로 객관적 사실조사 업무만을 분리해서 수행하는 것도 가사조사관에게 기대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실조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일반조사관을 통해 객관적 사실조사만을 진행하고, 이후에 조사관이 변경되어 주관적 사실조사를 비롯한 심층면접 등이 진행된다면,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시행하는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와는 달리 업무과중으로 인한 분담을 이유로 객관적 사실조사를 일반조사관이 담당하고 있다면 이는 조사관의 증원과 관련된 문제로 해결되어야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152) 홍영오 · 황태정(주 83), 33.

나. 직무 범위 확대

가사조사관의 경우 소년사건조사관이나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에 비해 그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관이라는 명칭이 가사조사관으로 이해될 정도로 조사관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나 그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 가사조사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민법, 가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인해 전문조사관의 직무영역이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업무 확대가 전문조사관의 증원과 연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전문조사관의 실제 업무 부담은 점차적으로 과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가사소송규칙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가사조사관의 업무는 사실조사(동규칙 제9조), 조정조치(동규칙 제12조), 의견 진술(동규칙 제13조),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가사소송법 제64)와 이후의 법 개정으로 확대된 가사조사관의 업무는 이하의 3가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년후견 업무의 경우 2011년 3월 7일의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신설되어, 가사조사관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실태, 재산상황 및 재산관리 업무 비롯해 임의후견의 실태조사 또한 담당하게 되었다. 둘째, 이혼에 대한 안내 및 부모 교육 업무의 경우,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을 통해 가사조사관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에 대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비롯하여,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의 상담에 관한 예규 제4조 제2항의 신설로 인해 2010년 이후부터 서울가정법원의 비롯한 전국의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재판상 이혼 당사자에 대해서도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이혼 절차와 이혼에 따른 법적 효과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셋째, 민법상 입양의 경우에는 예비양부모를 위한 교육을 위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6년 12월 29일 개정으로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9가 신설되어 2017년부터 친양자 입양 및 미성년자 입양 허가 심판의 경우에, 가사조사관을 통해 양부모가 될 자를 대상으로 입양될 미성년자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의 개정이나 신설로 인한 업무 이외에도 각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성년 양자를 위한 캠프, 부모의 이혼을 겪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캠프 등의 외부적 업무 등도 가사조사관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 범위의 확대가 전문조사관의 충분한 증원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도입 취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법규 외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조사관에게 부담시키는 점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2. 소년사건조사관

가. 조사관의 직무 범위 확대 및 배치

가사조사관과 마찬가지로 소년사건조사관의 경우에도 소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조사관의 업무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소년사건 조사가 급박한 경우에도 필요한 소년사건조사관을 배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년사건조사관의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상 기본적으로 충분한 면접기회와 출장 · 심리검사 등의 조사기법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절대적인 인원 부족으로 인해 소년사건조사관을 통한 충분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1] 가정법원 조사관 수: 2001년과 2017년 비교'를 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소년사건조사관은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4명, 인천가정법원 3명, 수원가정법원 3명, 안산지원 3명, 춘천지방법원 3명, 대구가정법원 3명, 창원지방법원 3명, 부산가정법원 2명, 광주가정법원 2명, 전주지방법원 3명 등 규모가 있는 지방법원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소년사건조사관은 서울가정법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과 겸임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사건조사관의 배치, 인원 및 업무와 관련한 문제점은 2009년에 시행된 소년사건에서의 사실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조사관들의 인식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의 존재를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으며,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담당,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의 순으로 문제가 크다고 응답했다.[153]

나. 직무 관련 문제

소년사건조사관의 직무와 관련한 문제는 심리상담과 관련되어 있는데, 심리상담

153) 해당 조사에서 조사관들은 소년범에 대한 조사 제도 전반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전문적 조사인력의 부족(22.2%),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15.9%),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 부재(14.3%),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12.7%)의 순으로 선택했다[홍영오 · 황태정(주 83), 24-27].

의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서는 소년의 비행성향이 크게 감소하는 변화를 가져온 사례도 있지만, 이와는 달리 대상이 되는 소년이 상담의지가 없는 경우에도 소년부 판사의 명령으로 상담실에 가게 된 경우, 소년이 상담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재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상담 이후에도 행동변화가 거의 미미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심리상담은 본인 및 참여자의 의사나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며, 이를 선별하기 위한 소년사건조사관의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소년사건조사관의 인원 및 배치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소년사건조사관의 직무와 관련한 두 번째 문제는, 1호 보호자 처분 전에 시행하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해당 교육의 경우에는 소년조사의 경험을 토대로 소년의 특성과 보호자의 어려움, 소년의 사춘기 특성과 보호자의 역할 등에 대한 집단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에 참여하는 소년과 보호자의 수가 많아지면 교육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현재의 소년사건조사관의 인원으로는 교육을 위해 소년과 보호자의 수를 적절하게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이와 같은 교육은 소년과 보호자가 각각 교육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교육에서는 조사관의 과중한 업무량 및 시간적 제약에 의해 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해당 수업의 경우에는 소년과 보호자에게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므로,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내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1차 보호자 처분 전의 교육의 효과 또한 결국 소년사건조사관의 인력 문제와 별개로 볼 수 없게 된다.

3. 가정보호사건조사관

가정보호사건은 가정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그 원인이 가족의 내적 · 외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가정보호사건에서 수사기록과 심리기일에 출석한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의 심리 자료만으로는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깊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사기록은 형사사건을 전제로 하고 현재의 폭력행위만을 제한해 조사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결국 가정보호사건이 가진 이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수사기록만으로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화나 면담을 비롯한 여러 방법이 요구된다.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

해 특히 출장조사가 중요한데,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출장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상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단독 조사관의 경우에는 출장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해당 업무의 수행 전에 후기 연수를 통한 실무과정의 교육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단독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업무 수행의 어려움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원에 단독으로 배치된 경우가 아니라 해도,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의 경우는 별도로 해당 가정보호사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소년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첩적인 업무의 부담으로 인해 각 보호사건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4. 아동보호사건조사관

'[표 1]가정법원 조사관 수: 2001년과 2017년 비교'에서는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의 배치를 볼 수 있는데,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의 경우 2017년에 배치가 시작되어, 그 이전의 통계에서는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의 배치를 볼 수 없었다.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이 배치되기 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관련 사건의 조사를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년부터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이 배치되기 시작했으므로, 관련 업무는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표 1]을 살펴보면,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이 단독인 경우는 없고, 최소한 가정보호사건조사관과 겸임을 하는 경우 또는 가사조사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과 겸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가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을 공동으로 담당하는 조사관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에 단독으로 배치되어 가사 · 가정보호 · 아동보호를 혼자서 수행해야 한다면 업무 수행에서 겪게 될 어려움이나 업무의 수행에서의 비전문성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3 장

외국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개설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시작은 가정법원의 별도의 설립과 연관되어 있으며, 설립된 가정법원의 모태는 소년법원의 출범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가정법원 및 조사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의 모색 및 검토를 위해서, 제3장에서는 외국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세계 최초로 가정법원을 설립하고 가정법원 내에서 상담 및 조정에 관한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제2절)을 비롯하여 외부의 아동복지기관을 통한 상담을 활용하고 있는 독일(제3절)의 경우를 검토하고, 이어서 우리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조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 제도(제4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54]

제2절 미국



I. 개설

미국은 각 주(州)에 따라서 가족법 및 가정법원의 운영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주 내에서도 카운티(county)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체계나 운영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미국의 가정법원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인간관계학이나 인간행동과학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가정법원의 서비스가 발전되어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에 각 주별로 파탄주의에 근거한 이혼이 인정되면서, 이혼사건의 처리보다는 자녀의 복리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사회복지사, 임상・상담심

154) 우리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와 동일한 외국의 제도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① 가정법원 내에서 전문인력의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그 업무의 성질이 다른 경우(미국), ② 상담 및 조정 업무를 가정법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독일) 및 ③ 우리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일본)를 대표적으로 선정하였다.

리사, 정신의학자 등 인간행동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개입하게 되었다.[155]

가정법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 법원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민간기관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대학 등과 같은 고등교육기관,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156] 특히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전통적인 사법적 분쟁해결방식만이 아니라 인간행동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을 통해 이혼 당사자의 적대 감정을 최소화하면서 분쟁의 여러 쟁점을 합의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157]

그리고 1980년대에는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에 대한 조정이 부부의 이혼결정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무조정법(Mandated Mediation Law)이 제정됨으로써, 조정이 현실적인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내의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II. 배경 및 연혁

사실상 미국 사회에서도 약 17세기경에는 소년을 이성이나 식별 능력이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했으며, 19세기 초까지도 Common Law의 전통에 따라 범죄를 범한 소년과 성인의 처분을 구분하지 않아, 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이해해왔다.[158]

이후에 소년범죄를 성인에 의한 범죄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졌고,[159] 특히 소년범죄에 대해서 인간관계학의 전문 인

155) 이들 전문가들은 이혼부모 교육, 이혼조정, 면접교섭관리, 양육조정, 양육평가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Andrew I. Schepard, Chidren, Courts and Custod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Stahl, M. Philip, Conducting Child Custody Evaluations-From Basic to Complex Issues-. UA: SAGE (2010), 3-31];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68.

156) 피교육자의 참여방법도 주정부가 중재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경우,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법률이나 법관의 재량권으로 교육 참석을 의무화하는 주가 늘고 있다.

157) 전영주 "이혼치료, 이혼: 치료적 개입과 사례", 가족치료학회 제26회 학술모임 및 사례발표 자료집 (2006);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64-65.

158) 김양곤,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 제도 연구 -미국, 영국, 일본의 소년보호관찰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39.

159) 소년에 대한 이와 같은 처우가 점차적으로 문제로서 인식되었으며, 특히 범죄를 범한 소년을 성인과 같은 시설환경에서 처우하는 경우, 성인범죄자가 비행소년에게 범행수단을 전수하거나 비행소년이 성인범죄자의 공격 대상으로 되는 등 성인범죄자가 비행소년에게 많은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따라 소년에 대해서는 유죄선고 후 성인과 분리하여 구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년교정원이 1824년에 뉴욕 주에 설립되었으며, 그 후 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후견인(parens patri-

력을 활용해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조치하는 과학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근거로 1899년 시카고에 소년법원이 설립되었으며, 해당 소년법원을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의 측면에서 미국의 가정법원의 모태로 보기도 한다.[160]

시카고소년법원의 설립에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이 주도한 '소년법원 운동(juvenile court movement)'이 있었다. 해당 운동의 영향을 받아 설립된 시카고소년법원은 사건처리에서 개별 소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다는 '개별처우 원칙'을 지향하면서 개별사회사업의 지식과 실천 방법을 활용하는 등, 종래의 법원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161] 시카고소년법원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하여 개별주의와 사회사업가 등 인간관계학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 · 조치하는 과학주의적 접근을 통한 소년의 사회화라는 목적의 사법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다.[162]

그러나 소년범죄의 흉포화 및 저연령화 현상에 대해서 종래의 소년사법정책이 비행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163] 오히려 소년보호라는 명목 하에서 성인에게는 당연히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가 소년사법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164]

이에 따라 급증하는 청소년범죄에 대해 사법적 처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해당 범죄의 원인이나 배경에 해당하는 가족기능의 장애, 열악한 사회적 환경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소년법원이 출범하였다.[165] 특히 1984년 이후 연방소년사법정책으로 소년의 중대 범죄 · 폭력범죄 · 상습범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제안하고 이들에 대해서

---

ae)을 배경으로 처분의 결정단계에서부터 소년을 성인과 분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매사추세츠 주, 뉴욕 주에서 이와 같은 절차가 시작되었다[김양곤(주 158), 39].

160) 한숙희(주 59), 276.

161) 송현종 · 조소연 · 노혜련(주 6), 4-5.

162) 1899년 미국 시카고에 설립된 소년법원은 사실상 가정법원의 모태로 볼 수 있다. 이보다 앞선 1870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이미 소년범과 성인범에 대해서 재판을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었다. 그 후 소년법원의 성과를 토대로 전미보호관찰협회(National Probation Association)의 결의로 시작된 가정법원운동(Family Court Movement)에 힘입어 1920년대를 전후하여 뉴욕 주 버펄로 시에 최초로 가정법원이 탄생하였다[한숙희(주 59), 267].

163) 특히 미국에서는 소년사법의 목표로 1999년 법무부의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을 최근 '균형적 · 회복적 사법(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으로 변경하면서, 종래 소년보호를 중심으로 하던 소년사법이념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홍영오 · 황태정(주 83), 52].

164) 1990년대 이후부터는 소년의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소년사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이윤호, 교정학개론, 박영사 (2003), 360].

165) Jane M. Spinak, "Romancing the court", 46 Fam. Ct. Rev. 258 (2008), 259.

엄격한 법집행과 처분인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적 책임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를 통한 범죄통제를 목표로 정하게 되었다.[166]

연방정부의 엄벌주의로의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은 1970년대 후반에 여러 주에서 시행하던 소년법 개정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정책은 일정한 중대범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범죄자'라는 범주로 별도로 분류하여, 해당 소년에 대한 처분을 가정법원 관할이 아닌 형사법원의 관할로 정함으로써, 종래의 소년범죄에 대한 가정법원의 전속적 관할을 폐지하고, 소년범죄의 경중에 따라 가정법원과 형사법원으로 구분하는 이원적 구조로 전환하게 되었다.[167]

소년법원과 가정법원의 완전한 분리 이전의 미국 최초의 가정법원으로는, 1914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에 설치된 '해밀턴 카운티소년법원(Hamilton County Juvenile Court)'으로 보기도 하는데,[168] 그 이유는 해당 법원이 소년비행의 원인을 가정 내의 분쟁으로 확대해 이해하면서, 가정 내의 사건을 별도로 관할했기 때문이다.[169] 해당 가정법원은 가정 내의 문제를 함께 처리한다는 통합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적 접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주요 특성으로 표방했으며,[170] 소년법원의 영향으로 재활모델을 운영철학으로 도입하였다.[171]

최근 미국의 가정법원은 법적 분쟁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사회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라는 임무도 수행하는 '문제해결법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172] 결국 치료사법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해결법원이라는 이념적 목적은 소년법원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173] 특히 특정한 사회병리현상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포괄적 문제 인식, 법

166) 김양곤(주 158), 41.
167) 김양곤(주 158), 41.
168) 해당 법원은 미국 내에서의 최초의 가정법원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초의 가정법원이기도 하다.
169) 그 후 소년법원의 성과를 토대로 미국보호관찰협회(National Probation Association)의 결의로 시작된 가정법원운동(Family Court Movement)으로 1920년대를 전후하여 뉴욕 버펄로 시에 가정법원이 설립되었다[한숙희(주 59), 276]; 해당 법원이 최초로 '가정법원(Family Court)'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주 42), 1; 野田愛子(주 42), 4頁]; 송현종(주 3), 47;
170) Paul W. Alexander, "Legal Science and the Social Science: The Family Court," 20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58), 132-139; 송현종(주 3), 47.
171) Andrew I. Schepard, Children, Courts, and Custo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0;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68.
172) 권재문, "'가정'법원의 역할 확대와 가정'법원'의 바람직한 기능 -미국 통합가정법원(UFC)에 대한 비판론을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제430호 (2012), 9; 문제해결법원은 실질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학제적 팀(team) 접근을 중시하며,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사회 서비스를 법원에서 통합한다. 또한 피고에 대한 치료과정을 사법으로 통제하고 판사와 피고인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으며, 법원이 지역사회에 대한 원조에 적극적이고 판사가 법원 내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김상규, "문제해결법원-미국 뉴욕의 예를 중심으로-", 제32회 비교사법연구발표회 자료집 (2005), 201-202].

관의 전문성 제고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역할 부여, 법적 분쟁의 배후에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사법의 추구,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처방과 가족관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 그리고 당면한 사회문제를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시정하려고 하는 사법적극주의와 낙관주의라는 측면에서 통합가정법원과 소년법원의 공통점이 있다.[174]

III. 가정법원 전문 인력의 자격 요건 및 연수

1. 가정법원 전문 인력

미국의 가정법원 전문 인력은 이혼사건에서 조정자(mediator)나 상담가(counselor)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인간관계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가족법 및 이혼법에 대한 지식을 지닌 자 중에서 선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가족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175]

미국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이혼조정자나 양육 평가자의 자격기준이나 연수체계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176]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법 등 관련 법률 등에 관한 기본 지식의 습득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과정 수료와 지속적인 보수교육,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일정 시간 이상의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

173) Barbara A. Babb, "Where we stand: an analysis of America's family law adjudicatory systems and the mandate to establish unified family courts", 32 Fam. L. Q. 31 (1998), 35.

174)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Unified Family Courts and the Child Protection Dilemma", 116 Harv. L. Rev. 2099 (2003), 2103; Geraghty, Anne H., · Mlyniec, Wallace J., "Unified Family Courts: Tempering Enthusiasm with Caution", 40 Fam. Ct. Rev. 435 (2002), 437-438; 따라서 통합가정법원 제도의 도입을 고려함에 있어서 소년법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병폐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박광배, "치료사법의 개념과 현황," 사법 창간호 (2007), 137-157; 권재문, "'가정'법원의 역할 확대와 가정'법원'의 바람직한 기능-미국 통합가정법원(UFC)에 대한 비판론을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제430호 (2012), 9-10].

175) 이들 전문 인력의 성격 및 기관 소속 여부에 따라 ① 법원에 속한 조정인(mediator), ② 지역 정신건강(mental health)관련 상담기관, 지역분쟁해결센터(Community Dispute Resolution Center) 등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기관 소속 인력, ③ 사설(private) 상담사로 분류될 수 있다.

176) 가정법원이 책임성(Accountability)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정자, 아동 양육 평가자와 같은 가정법원과 연계된 전문가의 연수와 자격을 관리해야만 하지만 아직 미국에는 조정자와 양육평가자에 대해 통일된 연수체계나 자격 기준이 마련되지는 못한 실정이다[Andrew I. Schepard(주 171), 10; Stahl, M. Philip(주 155), 3-31];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68.

특히 '가족과 이혼조정을 위한 실천 기준(Model Standards of Practice for Family and Divorce Mediation)'[177]에서는 13개의 기준 및 이에 대한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2기준(Standard Ⅱ)에서는 조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법 및 부모, 자녀 및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훈련에 대해 지식이 있는 자로서, 이혼사건에서 조정자는 이혼조정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178] 그리고 아동 및 이혼한 부모가 겪는 정서적 이슈 · 가정폭력 · 아동학대에 관한 지식 · 문화의 영향과 다양한 '가족 재구성(family reorganization)'에 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Standard Ⅷ).[179] 또한 이혼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조정자에게 부담시킨다(Standard Ⅶ).[180]

미국 가정법원의 전문 인력들의 업무에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부모에 대한 양육 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가정법원화해위원회(Association of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AFCC)[181]가 발행한 '아동의 양육 평가 기준(Model Standards of Practice for Child Custody Evaluation)'에서는 아동의 양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신건강 분야에서 정식 교육 및 연수를 받은 석사학위 이상이고, 아동 감호와 관련한 법학, 사회학, 가족학 또는 문화학 전공자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182]

이와는 별도로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몇몇 주들은 양육평가를 할 수 있는 자

177) 1982년 내지 1984년 사이에 AFCC(Association of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가 소집한 회의를 통해 '가족 및 이혼조정의 1984년 실천 기준 모델(1984 Model Standards of Practice for Family and Divorce Mediation: 1984 Model Standards)'이 승인되었고, 이후 조정자가 되기를 원하는 법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족법 분쟁에 관한 법률가 조정자를 위한 1984년 실천 기준(Standards of Practice for Lawyer Mediators in Family Law Disputes in 1984: 1984 ABA Standards)'이 '가족과 이혼조정을 위한 실천기준(model standards of practice for family and divorce mediation)'의 모태가 되었다 [Andrew Schepard, An Introduction to the Model Standards of Practice for Family and Divorce Mediation, Maurice A. Deane School of Law at Hofstra University (2001), 10-11 (https://scholarlycommons.law.hofstra.edu/cgi/viewcontent.cgi?article=1496&context=faculty_scholarship) (2018. 8. 21. 확인)].

178) Model Standards of Practice for Family and Divorce Mediation, STANDARDS OF PRACTICE, ALL OTHER CONFLICT RESOLUTION PROFESSIONALS, Ethical Standard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SPIDR Ethics Committee (2001. 2.), 3-4(https://cdn.ymaws.com/acrnet.org/re-source/resmgr/docs/Model_ Standards_of_Practice_.pdf) (2018. 8. 21. 확인).

179) Model Standards of Practice for Family and Divorce Mediation(주 178), 7.

180) Model Standards of Practice for Family and Divorce Mediation(주 178), 6.

181) https://www.afccnet.org/ (2018. 8. 21. 확인).

182) Martindale, David A. · Martin, Lorraine · Austin, William G., Model Standards of Practice for Child Custody Evaluatio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AFCC) (2006. 5.), 8-10 (https://www.afccnet.org/Portals/0/ModelStdsChildCustodyEvalSept2006.pdf) (2018. 8. 21. 확인).

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양육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소한 석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최초 40시간의 일반 교육과 16시간의 가정폭력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2018 California Rules of Court, Rule 5.220, 5.225, 5.230).[183] 또한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8시간의 일반 교육과 4시간의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에 대한 이수가 요구된다(2018 California Rules of Court, Rule 5.225).[184]

뉴저지 주에서는 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조정관에게는 행동과학, 사회학 등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와 실무경험이 요구되며, 가족법 분야의 40시간의 강의 이수 및 매년 4시간의 보수 교육 또한 이수해야 한다.[185]

2. 소년보호관찰관

소년법원의 전문 인력은 소년보호관찰관(Juvenile Probation Officer)으로 불리는데, 성인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과 다르게 소년보호관찰관의 채용은 소년법원판사가 담당하게 되며, 이들에 대한 급여 등의 처우도 소년법원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소년보호관찰관의 자격요건은 '형사사법에 관한 기준 및 목적에 관한 전미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가 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심리학, 카운슬링, 법학, 사회복지학, 형사행정학 등의 학위를 대학에서 취득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186] 하와이 주의 경우에는 소년 심리

183) 2018 California Rules of Court, Rule 5.220. Court-ordered child custody evaluations, (g) Requirements for evaluator qualifications, training, continuing education, and experience (http://www.courts.ca.gov/cms/rules/index.cfm?title=five&linkid=rule5_220), (2018. 8. 23. 확인); 2018 California Rules of Court, Rule 5.225. Appointment requirements for child custody evaluators, (c) Licensing requirements and (d) Education and training requirements (http://www.courts.ca.gov/cms/rules/index.cfm?title=five&linkid=rule5_225) (2018. 8. 23. 확인); 2018 California Rules of Court, Rule 5.230. Domestic violence training standards for court-appointed child custody investigators and evaluators, Rule 5.230. Domestic violence training standards for court-appointed child custody investigators and evaluators, (d) Mandatory training (http://www.courts.ca.gov/cms/rules/index.cfm?title=five&linkid=rule5_230) (2018. 8. 23. 확인).

184) 2018 California Rules of Court, Rule 5.225. Appointment requirements for child custody evaluators, (i)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requirements, (http://www.courts.ca.gov/cms/rules/index.cfm?title=five&linkid=rule5_225) (2018. 8. 23. 확인).

185) Rules governing the courts of the state of New Jersey, Rule 1:40-12. Mediators and Arbitrators in Court-Annexed Programs, (a) Mediator Qualifications, (b) Mediator Training Requirements, https://www.njcourts.gov/attorneys/assets/rules/r1-40.pdf, (2018. 8. 23. 확인).

186) Juvenile Probation Officer Careers, What it Takes to Become a Juvenile Probation Officer,

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전공의 학사 학위 및 사회학 관련 석사 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187]

그리고 소년보호관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 약물테스트 및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188] 위의 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전과자의 경우 소년보호관찰관이 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소년보호관찰관의 채용 요건으로 1년 또는 2년 이상의 보호관찰, 공판 서비스, 가석방, 교정, 범죄 수사, 또는 약물 중독 치료 등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189]

Ⅳ. 가정법원 전문 인력의 직무

이하에서는 가정법원 전문 인력과 소년보호관찰관의 직무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법원 전문 인력의 직무

미국 가정법원 전문 인력의 명칭이 조정자나 상담사인 것과 같이 사실상 이들의 주요 업무는 우리 조사관과는 달리 사실조사가 아니며, 상담이나 조정을 비롯한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 상담기관의 연결 등의 확장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가정법원 조사관이 사실상 미국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영향을 받아 설립되었음을 고려할 때 미국의 가정법원 전문 인력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190]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가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과 명칭, 관할권

---

https://www.probationofficeredu.org/juvenile-probation-officer/, (2018. 8. 24. 확인); 1971년 10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소년보호관찰관을 위한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73년 최종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해당 기준은 모두 428개이다[The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of 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A National Strategy to Reduce Crime, The Pennsylvania Committee for Criminal Justice Standards, https://www.ncjrs.gov/pdffiles1/Digitization/54466NCJRS.pdf (2018. 8. 23. 확인)].

187) Juvenile Probation Officer Careers in Hawaii, How to Become a Juvenile Probation Officer in Hawaii: Education Requirements, https://www.probationofficeredu.org/hawaii/hawaii-juvenile-probation-officer/ (2018. 8. 24. 확인).

188) Juvenile Probation Officer Careers(주 186).

189) 홍영오 · 황태정(주 83), 409.

190)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미국 가정법원의 counselor 또는 mediator를 전문 인력으로 지칭하였음.

범위, 법원 카운슬러의 법원 내 채용 및 역할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191] 각 주의 가정법원 전문 인력의 공통적인 업무는 이혼 전 부모 교육(가), 조정(나), 상담(다), 양육 평가(라) 및 서비스의 조정과 맞춤형 사례관리(마)로 구성된다.

가. 이혼 전 부모 교육

(1) 의의

각 법원에 따라 '이혼하고자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divorce education for parents)', 즉 이혼 전 부모 교육은 parent workshop, children of divorce seminar, orientation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976년에 캔자스 주의 Johnson County Mental Health Center[192]와 법원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1986년부터 이혼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참석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매우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193]

1987년 '이혼 전 부모 교육 센터(Center for Divorce Education: CDE)'[194]에서는 법률가들과 심리학자들이 이혼 가정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제공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이혼하려는 부모를 위해서는 이혼의 효과와 관련한 법적 ·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이들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사회적 · 감정적 발달을 위한 교육을 제안했다.[195] 특히 '이혼 전 부모 교육 센터(CDE)' 중 하나인 'Children In the Middle (CIM)'을 통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혼 전 부모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기관에서 시행하는 이혼 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연방정부의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으로부터 이혼 전 부모 교육을 위한 "모델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196]

이혼 전 부모 교육의 효과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의 시행 후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부부의 이혼 소송은 57%가 감소되었고, 부모의 이혼과 관련하여 아동이

191) 각 주의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회자원들과 당사자를 연계하는 서비스공급시스템 외에도 각 기관의 조정 · 감독 업무도 부담하게 된다.
192) https://www.jocogov.org/dept/mental-health/home (2018. 8. 23. 확인).
193) http://www.kscourts.org/programs/Parenting-Planning/information.asp (2018. 8. 23. 확인).
194) The Center for Divorce Education, https://www.divorce-education.com/ (2018. 8. 23. 확인).
195) Collins, Christina L. · Fetsch, Robert J. "A Review of Children in the Middle: Divorce Education for Parents", The Journal of Extension, https://www.joe.org/joe/2009october/tt4.php (2018. 8. 23. 확인).
196) 그리고 'Children in the Middle (CIM)'의 이혼 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Active Parenting Award from the National Council for Children's Rights"으로부터도 인정받았다[Collins, (주 195)].

정신과 상담을 받는 비율은 54%가 감소되었으며, 해당 아동들의 학교에서의 결석률은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97]

이와 같은 이혼 전 부모 교육은 주에 따라서 의무화한 곳도 있으며, 최근에는 이혼 전 부모 교육이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198] 해당 교육은 현재 미국 전역의 541개 County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199]

(2) 이혼 전 부모 교육 프로그램

해당 교육의 대상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되며, 교육의 내용은 이혼사건에서 대화에 의한 해결의 중요성, 조정 절차의 중요성, 지역사회 상담기관 및 서비스기관 소개, 이혼 후 적응과정과 자녀와의 관계,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 강화 및 협력적인 공동부모 역할 등을 포함한다.[200]

프로그램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민영기관, 대학 등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이 되며,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법원 직원과 외부 기획자가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법원 직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이혼 전 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도 주 정부가 중재하는 경우, 법관의 결정에 의한 경우,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 다양하며, 교육방식도 비디오 시청, 교재를 통한 강의, 강의 중심과 토론 및 비디오 시청 혼합, 직접적인 기술습득 훈련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혼 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법원과 연계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

이혼 전 부모 교육의 내용은 이혼 등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대화에 의한 해결의 중요성, 조정 절차의 중요성, 지역사회 상담기관 및 원조기관의 소개, 이혼 후 적응과정과 자녀와의 관계,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 강화 및 협력적인 공동부모 역할 등에

197) Children in the Middle: Divorce Education for Parent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www.mckeanfc.com/Documents/Program_Reports/CIM.pdf (2018. 7. 15. 확인); The Center for Divorce Education, Children in Between Online, https://www.divorce-education.com/parent/ (2018. 7. 15. 확인).

198) The Center for Divorce Education, Children in Between Online, https://www.divorce-education.com/ (2018. 7. 15. 확인).

199) Geasler, Margie J. · Blaisure, Karen R., "A Review of Divorce Education Program Materials", Family Relations Vol. 47, No. 2 (1998. 4.), 167-175, (https://www.jstor.org/stable/585621?seq=1#page_scan_tab_contents) (2018. 7. 15. 확인).

200) Children in the Middle(주 197).

201) Divorce Education, Kentucky Court of Justice, (https://courts.ky.gov/courtprograms/divorceeducation/pages/default.aspx) (2018. 7. 15. 확인).

관한 교육과 세미나로 이루어져 있다.[202] 특히, 법원과 연계된 이혼 전 부모 교육은 부모의 갈등이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가족이 재구성되는 동안에 자녀 양육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203]

(3) 현황

이혼 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실례를 보면, 조지아 주의 Fulton County Family Court의 경우는 Conference 시행 이전에 Transition Seminar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204] 해당 세미나는 이혼, 양육권 변경, 면접교섭권, 기타 가족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도 함께 참석하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4시간으로 구성되어, 훈련된 상담자와 치료자들에 의해 진행된다.[205]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동발달 단계와 아동의 욕구, 이혼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감소, 면접교섭에서의 부모들의 협의 등으로 이루어진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하는 오리엔테이션은 조정 참석 전에 이루어진다.[206] 오리엔테이션 교육[207]은 법원에 대한 일반적 소개, 조정의 개요와 절차의 흐름, 부모가 양육계획을 세우는 방법, 자녀의 발달상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 가정폭력과 조정의 관계, 이혼과 관련된 각종 도서 및 상담기관 리스트 등에 대한 약 14면의 자료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당 교육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앞서 배포한 14면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해당 교육 후에, 참석자들은 약 30분의 부모 교육용 비디오를 시청하게 된다.[208] 오리엔테이션 교육 및 비디오 시청의 교육은 총 100분 정도이다.

오리건 주의 Portland에서는 우선 교육자가 부모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혼절차에 대해 강의한 후에, 참가자들은 부모의 이혼문제로 갈등이 있는 미성년 자녀의 인

202) Schepard, I. Andrew, Children, Courts, and Custo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67.
203) Pollack, D. & Mason, S., "Parenting plans and visitation: Mandatory visitation,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Family Court Review 42 (2004), 74-84;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66.
204) https://www.fultoncourt.org/family/family-fit.php (2018. 11. 5. 확인).
205) https://www.fultoncourt.org/family/family-fit.php#schedule (2018. 11. 5. 확인).
206) 캘리포니아 법원은 "Families Change"라는 온라인을 통한 이혼 전 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https://www.familieschange.ca.gov/) (2018. 7. 20. 확인).
207) 캘리포니아의 오리엔테이션은 Sacrament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성례식의 의미이다.
208) Family Law, California Court (http://www.courts.ca.gov/cfcc-familylaw.htm) (2018. 7. 20. 확인).

터뷰가 담긴 교육용 비디오를 시청하게 된다.[209] 비디오 시청 후에는 조정관과 참가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참가자는 약 30분 동안 이혼 문제 및 조정의 중요성에 대한 법관의 강의에 참석해야 한다.[210] 또한 Portland는 약 3시간 정도의 '이혼한 부모를 위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양육강좌(parenting classes)'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강좌에서는 다양한 원조단체와 참고도서 등을 소개하기도 한다.[211]

오하이오 주의 Mahoning County Domestic Relation Court Family Service Department에서도 전문가인 법원직원이 이혼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부모 교육(parents' workshop)'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212] 해당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약 2시간 30분 동안 제공된다.[213]

(4) 미성년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Northern California 법원에서는 '이혼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Education for Children)'으로 'Kids' turn'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14] Kids' turn 프로그램은 5세 내지 17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회 약 90분 정도의 수업으로 구성되며, 총 교육 기간은 6주로 교육 또는 심리학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다.[215]

해당 프로그램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했을 때 가족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게임과 활동을 통해 교육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과 별거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알아내고 소통하며, 집이나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나 어른들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이혼의 법적 절차에 관한 기본 개념들과 아동의 양육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우고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흔히 직면하는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 또한 학습하게 된다.[216]

---

209) Caring discipline, Parent support center (https://www.parentsupportcenter.org/) (2018. 7. 20. 확인).
210) Caring discipline(주 209).
211) Hope house visitation Center, Annual report (2016) (http://www.hopehousevisitation.org/upload/456302/documents/Annual%20Report%20FY%202016.pdf) (2018. 7. 20. 확인).
212) Parents Workshop, Welcome to the Mahoning county communicator, Mahoning County Domestic Relations Court (https://www.mahoningcountyoh.gov/706/Family-Services), (2018. 7. 20. 확인).
213) 해당 교육은 "Alta Behavioral Healthcare(The D &E Counseling Center)"에 의해 제공된다(http://www.altabehavioralhealthcare.org/) (2018. 11. 2. 확인); Parents Workshop(주 212).
214) Kids' Turn Workshops, Safe & Sound (https://safeandsound.org/for-parents/family-support/kids-turn/) (2018. 7. 20. 확인).
215) Kids' Turn Workshops(주 214).

(5) 이혼 전 부모 교육에 대한 평가

이혼 전 부모 교육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평가는 이혼 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부모들의 만족도와 태도에 대한 조사이다.

이러한 부모 교육에 대한 평가 방법은 4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은 첫째, 부모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둘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들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 자녀의 적응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직접 조사, 셋째, 법조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와 소송 유형이 어떤지를 묻는 설문조사, 넷째, 법원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소송 감소에 대한 평가 조사로 이루어진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 강제적인 출석에 반감을 표현하던 참여자조차 이혼 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유익성과 유용성에 동감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프로그램 참여가 궁극적으로 부모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217]

가정법원 판사들은 대체적으로 부모 교육이 아동 복지와 관련된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소송이나 재소송 빈도를 낮추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218] 이혼 전 부모 교육이 해당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의 적응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들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참여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녀 중심적 인식과 태도로의 변화에는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보고 있다.[219]

나. 조정

최근 미국에서는 화합형 상담보다는 가정법원 분쟁의 평화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정법원 전문 인력은 조정자(mediato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해당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조정 외에도 해당 지역의

216) Schepard(주 202), 10;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68.
217) Schepard(주 202), 10;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68.
218) 유희정, "미국의 이혼 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평가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 제43권 제6호(2005), 81-96.
219)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해 제공되는 이와 같은 부모 교육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대화에 의한 해결 촉진, 이혼 절차에서 당사자의 참여 유도, 이혼 후의 적응 및 자녀복리의 증진 기능 등의 효과가 있다[유희정(주 218), 81-96].

정신건강관련 상담기관, 지역분쟁해결센터 등의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220] 사설조정기관에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221]

(1) 이혼조정(divorce mediation)

(가) 의의

이혼조정은 해결 중심의 단기 서비스이며 이혼하는 당사자들이 적대감을 최소화하고 분쟁의 원인이 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합의하도록 중립적인 제3자가 원조하는 이혼상담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혼조정은 전통적인 사법적 분쟁해결 방식과 전통적인 인간관계학적 접근과의 경계선에서 새롭게 탄생하여 발전한 이혼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이라 할 수 있다.[222]

미국에서는 1940년대 전후로 상담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당사자의 원만한 재결합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중심적으로 제공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상담보다는 조정(mediation)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39년부터 법원에서 인간관계조정서비스(Court-connected conciliation service)를 제공하기 시작해 초기에는 파탄 위기에 직면한 부부의 화합조정(reconciliation)을 위한 가족 상담을 제공했으나 이후 시간이 변화하면서 이혼상담이나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조정으로 서비스의 목적이 전환되었다.

1980년대에는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한 조정이 부부의 이혼결정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무조정법(Mandatory Mediation Law)이 제정된 후, 현재에는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가 이혼조정과 관련한 법을 도입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다. 몇몇 주의 경우에는 조정을 법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조정의 실시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미국의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에 대한 대상은 친권과 면접교섭권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23]

---

220) 비영리 단체는 재단, 지방, 국가의 지원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21) 가정법원에서의 이혼조정은 법원에 속한 조정자,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등에 소속된 조정자, 사설 조정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222) 기존의 이혼상담과 이혼조정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혼상담이 스트레스 경감, 개인행동의 변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목표를 관계의 재건, 불안이나 스트레스 경감에 두는 반면에, 이혼조정은 결혼관계가 해체되면서 파생되는 이혼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타협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 초점을 두고 관계의 재건 등은 일차적인 목표가 아닌 이혼조정의 부수적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다[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71].

223) 김상용, "협의이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법조 578호 (2004), 5.

(나) 배경 및 현황

이혼조정은 전통적인 당사자 대립구조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전통적 대립적 당사자 구조로 인해 야기된 당사자들의 인간관계 악화와 이로 인한 자녀복지의 침해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이 '비쟁송적 법률서비스(non-adversarial legal services)'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들은 심리학, 사회사업학, 정신의학 등에서 발전된 상담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사자들의 감정적 대립을 진정시키고 이혼에 동반한 재산문제, 부양,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 등의 자율적 해결을 원조하고자 하였다.[224]

특히 1974년 변호사이며 가족상담가이었던 O. J. Coogler는 가사조정센터(Family Mediation Association: FMA)를 설립하고,[225] 1978년에는 '이혼조정을 위한 구조적 조정(Structured Mediation in Divorce Mediation)'이라는 책을 통해 이혼조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26]

1980년대 이전까지도 미국의 법원은 이혼과정에서 갈등이 높은 당사자들이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들에 의한 문제해결 방법을 중요시하지 않았다.[227] 하지만 이혼조정에 대한 중요성 및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1980년대부터는 소송절차보다는 당사자들이 관련 문제를 조정(mediation)을 통해 해소한 경우가 이혼 후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 등에 따라 조정에 대한 활용이 높아지게 되었다.[228]

미국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이혼 전 부모 교육과 연계한 조정 프로그램이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사법의 인간화(humanism)라는 움직임과 관련해 조정이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229] 2001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13개 주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고소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조정을 의무화했고, 24개 주 대부분은 이혼중재에 대한 참여 명령을 판사 재량에 맡기고 있다.[230]

---

224) Milne, Ann L. · Folberg, Jay. · Salem, Peter, "The evolution of divorce and family mediation", Divorce and Family Mediation: Model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2004), 3-4 (https://www.guilford.com/excerpts/folberg3.pdf) (2018. 8. 16. 확인).
225) Milne, Ann L. · Folberg, Jay. · Salem, Peter(주 224).
226) A Brief History of the Academy of Professional Family Mediators, Academy of Professional Family Mediators (2016), (https://apfmnet.org/mission-and-history/) (2018. 8. 16. 확인).
227) Milne, Ann L. · Folberg, Jay. · Salem, Peter(주 224), 4-5.
228) Milne, Ann L. · Folberg, Jay. · Salem, Peter(주 224), 6.
229) Schepard(주 202), 10;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69.
230) 13개 주의 경우에는 조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내용

이혼조정은 특히 아동양육권 분쟁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조정은 당사자들이 원고와 피고로 대립하기 보다는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원조하는 '협력적 분쟁해결 수단(cooper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으로 작용하며, 둘째, 자녀들이 부모들의 이혼분쟁이라는 불행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존재로서 존중받고 부모들이 자녀의 욕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셋째, 조정이 부모들의 대립감정을 감소시키고 의사소통과 협력관계를 개선하여 자녀를 인질로 삼거나 자녀의 부적응을 일으키는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이혼조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요구된다. 첫째, 상담과 조정에의 참여 여부가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당사자의 주체성, 자주성, 비강제성의 보장과 관련된다. 둘째, 상담과 조정은 신뢰 보호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과 조정의 내용은 비밀보장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셋째, 상담과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정보란 이혼으로 파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간관계학 전반의 지식 등 이혼과 자녀에 대한 전반적 지식, 의사소통 이론 및 실천, 법률지식이 포함되는데, 물론 상담원의 중립성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231]

(라) 현황

Los Angeles County에서는 법원에 조정관을 두어 별거 또는 이혼하려는 부부 사이에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합의를 위해 조력하는 Family Custody Mediation 절차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232] 조정관은 Los Angeles Superior Court의 법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관이 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가족법 지식이 있는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 또는 상담경험이 있는 변호사여야 한다.[233] 조정자는 통상 각 사건마다 약 2시간의 조정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속행하기도 하는데,[234] 이혼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조정관은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와 대리

231) 김상용, "협의이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법조 578호(2004), 5.
232) Child Custody Mediation, Th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 (http://www.lacourt.org/division/familylaw/FL0050.aspx) (2018. 7. 22. 확인).
233) Who Are The Mediators?, Th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 (http://www.lacourt.org/division/familylaw/FL0062.aspx) (2018. 7. 22. 확인).
234) How Do You Prepare for Mediation?, Th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 (http://www.lacourt.org/division/familylaw/FL0052.aspx) (2018. 7. 22. 확인).

인에게 확인서명을 받은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235] 조정이 불성립되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의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자녀의 감호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Mahoning County Domestic Relation Court에서는 이혼 소송의 70%가 조정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36] 해당 법원에서는 파탄된 부부들의 이혼과정을 보다 원만하게 하고 미성년 자녀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정자 자격이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다.[237] 이들이 소속된 가족부서는 조정과 화해회의(settlement conferences)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이 실패하면 자녀 양육자 선정을 위한 '부모역할에 대한 사정 및 평가(parenting assesment and evaluation)', 직접 상담 및 외부상담기관에의 상담 의뢰, 가정폭력 상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부모강습(parent's workshop) 및 당사자의 임의에 의한 '미성년 자녀 교육(children workshop)'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양육 조정자(parenting coordinator)

갈등이 심각한 가족의 경우에는 이혼과정 또는 이혼 후에 상호불신이 크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 감정이 높으며 상대방을 이기려는 감정에 휩싸여 있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38] 이러한 경우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이나 면접교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판결에 의해 결정이 난 후에도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39]

양육 조정자는 면접교섭 등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을 계속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부모들을 관리하며, 주로 이혼조정이나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가이다. 주에 따라서 Parenting coordinator, Parent coordinator, Special master 등 양육

235) What Happens in Mediation?, Th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 (http://www.lacourt.org/division/familylaw/FL0054.aspx) (2018. 7. 22. 확인).
236) Mediation, Welcome to the Mahoning county communicator, Mahoning County Domestic Relations Court (https://www.mahoningcountyoh.gov/706/Family-Services) (2018. 7. 22. 확인).
237) Mediation, Welcome to the Mahoning county communicator, Mahoning County Domestic Relations Court (https://www.mahoningcountyoh.gov/709/Mediation) (2018. 7. 22. 확인).
238)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72.
239) Pollack과 Mason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갈등가족(High conflict family) 사건은 가정법원 전체 사건의 5%만을 차지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법관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ollack, D. & Mason, S., Parenting plans and visitation: Mandatory visitation: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Family Court Review 42 (2004), 74-84];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72.

조정자의 명칭은 다양하다. 양육조정의 경우는 고갈등 가족, 가정 폭력 등 역기능적 가족력을 가진 가족들이 대상이 된다.

미국의 10여개의 주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갈등이 심각한 가족에 대한 양육조정자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했다.[240] 특히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2016년 개정 법령을 통해 아동이 있는 부부의 이혼, 후견인의 의무 등에 대해 경청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를 양육 조정자로 정의하고 있다(43 OK Stat § 43-120.3).[241] 양육조정자는 준사법적 역할을 수행하여 부모들의 합의를 돕고, 이후에 합의된 사항을 법원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242]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사항은 학교선택, 과외 활동, 양육 시간의 조정, 치료에 대한 결정, 의사소통 교육, 비양육자의 양육시간 확보, 법원 외부의 일반적 이슈 해결 등이다.[243] 그리고 양육 조정자는 양육권 지정 변경과 같은 중대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으며,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244]

다. 상담

미국에서 이혼하려는 부부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상담은 우선 면접교섭관리(supervised visitation)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는데,[245] 우선 상담 대상자인 부부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친족이나 지인과 함께 면접교섭을

240) 애리조나(2005), 캘리포니아(2001), 콜로라도(2005년), 아이다호(2002년), 아이오와(2005), 캔자스(2000), 켄터키(2006), 루이지애나(2007년), 메인(2007), 미네소타(2004), 노스캐롤라이나(2005년), 뉴햄프셔(2009년), 오클라호마(2001년), 오리곤(2002년), 사우스다코타(2008), 텍사스(2004년), 플로리다(2009년), 매사추세츠(2014년): Parenting Coordination State Legislation, Summary of the States with Parenting Coordination Programs, by Barbara Ann Bartlett, J.D. (March, 2005) (http://www.onlineparentingcoordinators.com/pg5.cfm) (2018. 12. 18. 확인).

241) 또한 아동이 관련된 소송의 경우, 소송, 분노와 불신, 언어 학대, 신체적 학대나 위협, 의사소통과 양육협조의 어려움 등의 상황이 반복되어 법원이 양육 조정자를 임명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고갈등 사건(High-conflict case)'으로 정하고 있다[2016 Oklahoma Statutes Title 43. Marriage and Family §43-120.3. Appointment of parenting coordinator-Party agreement-Authority-Meetings-Parental rights-Removal (https://law.justia.com/codes/oklahoma/2016/title-43/section-43-120.3/) (2018. 8. 29. 확인)].

242) Parenting Coordinator Act Section 120.3, 120.4, 120.5 (http://www.onlineparentingcoordinators.com/docs/PC_legislation_Oklahoma_PC_Act.pdf) (2018. 7. 23. 확인).

243) Parenting Coordinator Act Section 120.3, 120.4, 120.5(주 242).

244) Parenting Coordinator Act Section 120.3, 120.4, 120.5(주 242).

245) 각 주에서 개별적으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의 경우는 다음 자료 참조: Oehme, Karen · Perko, Ann · Castillo, Kirsten · Lodes, Morgan, A Training Manual for Florida's Supervised Visitation Programs, Clearinghouse on Supervised Visitation · Institute for Family Violence Studies Florida State University · College of Social Work (2017)]; https://familyvio.csw.fsu.edu/wp-content/uploads/2017/07/Supervised-Visitation-Manual-2017-Edition.pdf (2018. 8. 23. 확인).

실시할 수 있다. 반면에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함께 면접교섭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법원 전문 인력은 '사회적 서비스의 조절 및 연계(social service coordinating and delivery)'라는 유형의 상담을 통해 보호관찰, 정신건강, 아동 보호, 아동 감호 평가와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분노조절, 재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되어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까지 약 100년 동안 이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해서 모성우선주의 원칙이 강조되어, 이혼 후 실제 양육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게 되었고,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주로 아버지)과의 면접교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를 이루었다. 당시 양육자 및 면접교섭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심리적 부모(psychological parent)' 이론은 부모의 이혼 후에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갈등이 일어나가 쉽다는 이유 등으로 면접교섭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에는 부모의 별거 및 이혼 후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와의 안정적 면접교섭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가정법원도 이에 따라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다.[246]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의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을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해 부모와 피해 자녀 사이의 관계를 무조건 단절하는 것보다는 법원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정서적 유대(significant emotional bond)'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미성년 자녀 사이의 관계 유지를 위한 양육계획에 대한 의무 또한 부담하고 있다.

법원의 면접교섭관리는 법원이 안전하게 가해 부모와 피해 미성년 자녀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방식은 ① 단순히 부모들 사이의 자녀 인계과정에만 관여하는 면접교섭관리, ② 친척이나 친구가 동석하는 면접교섭관리, ③ 전문가인 슈퍼바이저가 관여하여 교육이나 치료가 결합된 면접교섭 관리 등 다양하다.

마지막의 ③ '전문가에 의한 면접교섭 관리 서비스(expedited visitation service)'의 경우는 계획을 세우고 각 부모와 통화하여 면접교섭 동의를 얻고 중립적인 장

246) Schepard(주 202);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71.

소에서 면접교섭 인계와 참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해당 면접교섭은 미성년 자녀들의 활동이 가능한 장난감이 구비된 공간에서 시행되며, 전문가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게 된다. 이때 전문가는 면접교섭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부모에게 아이들과 귓속말, 다른 부모 혹은 확대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자녀에게 신체적 접촉 강요 등이 금지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만약 부모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전문가는 면접교섭 관리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즉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247]

미국 오하이오 Mahoning county는 면접교섭관리센터(Hope house visitation center)[248]를 통해 가정 및 청소년 법원, Mahoning county children Services, 변호사 등에 의해 의뢰된 면접교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실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과 안전하고 중립적인 환경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관리하며, 자녀양육법을 교육하기도 한다.

라. 양육 평가(custody evaluation)

법원은 양육권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기능수준을 평가하고 양육에 대한 결정과 관련한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받기 위해 양육평가자를 지정한다. 양육 평가자는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사회복지사, 가정법원의 직원 등이 될 수 있다. 지정된 양육 평가자는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자녀의 입장을 법원에 제시하게 된다.

양육 평가자는 능동적으로 부모와 자녀를 면접하고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고, 교사, 치료자 등으로부터도 정보를 얻는다. 해당 양육 평가자에 대한 비용은 법원 명령을 통해 부모가 지불하게 되므로, 양육 평가의 결과는 부모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는다. 양육 평가자는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양육 평가자는 심리전에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다.[249]

아동양육평가에 대한 명령이 요구되는 사건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경우,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애착 등에 대한 복잡한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이

247) Schepard(주 202);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71.
248) Hope House Visitation Center (http://www.hopehousevisitation.org/) (2018. 7. 21. 확인).
249) Schepard(주 202);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71.

다. 아동양육평가는 갈등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의 최상의 복리를, 법원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요인(아동의 욕구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해당 평가를 통해서 부모는 아동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판결을 예측하여 스스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마. 사회서비스 조정 및 맞춤형 사례관리

(1) 사회서비스 기구들 간의 조정(social service coordinating)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나 이혼한 가족에게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 등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면, 단편적인 직접 서비스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복합적 문제를 가진 소년이나 이혼한 가족에게 사회의 다양한 자원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연결하게 되는데, 이를 가정법원의 사회서비스 조정이라고 한다.[250]

가정법원이 연결하는 서비스의 영역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첫째, 아동보호, 입양, 입양부모 연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둘째,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nd Food Stamps)' 등과 관련한 구호 프로그램, 셋째, 정신건강 프로그램, 넷째, 발달장애나 정신장애를 위한 서비스, 넷째, 여성 · 아동 · 유아에 대한 건강지원서비스, 다섯째, 청소년 서비스 정도로 분류된다.

가정법원의 사회서비스 조정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나 이혼한 가족에 대한 사후서비스로 이해될 수 있다.[251] 이와 같은 가정법원의 사회서비스 조정자로서의 역할에는 관련 사회서비스 기관들과 당사자를 연계하는 업무와 이들 기관들 사이를 조정 · 감독하는 역할까지도 포함된다.

Jackson County에서는 Community Family Court 내에 사회서비스 조정을 위한 가족자원센터(Family Resource Center: FRC)를 1996년에 창설하여,[252] 현재

250) 그러므로 단편적인 직접 서비스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당연히 사법 영역과 사회서비스 영역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Schepard(주 202)];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72.

251) 가정법원은 이혼가족과 비행청소년과 같은 대상자에게 보호관찰, 정신건강, 아동 보호, 아동 감호 평가와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 분노조절, 재산관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73].

252) Jackson County Family Resource Center (http://jacksoncountyfrc.org/resources/) (2018. 8. 26. 확인); Jackson County Community Family Court Process, Outcome, and Cost Evaluation Final Report, NPC Research (2010. 6.) (https://npcresearch.com/wp-content/uploads/Jackson_Byrne_06101.pdf) (2018. 8. 26. 확인).

35개의 사회서비스 기구를 수용하고 있다.[253] 가정법원과 가족자원센터(FRC)는 이와 같은 복합적 문제가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3단계 사회서비스 조정 절차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게 된다.[254]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에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유효한 명령, 조사 내용, 서비스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해당 문제를 담당할 판사가 정해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사업 조정자는 대상이 되는 가족, 이해당사자, 사회서비스 기구를 만나 해당 가족의 이익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서 가족자원센터(FRC)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해당 가족계획은 법원에 제출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은 당사자에 대해서 서비스의 수용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해당 수용 여부에 관한 설문 참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255]

(2) 맞춤형 사례관리(differentiated case management)

앞서 살펴본 사회서비스 기구를 통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심사, 집중적 서비스 및 밀착된 사법감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갈등 수준이 매우 높은 가족이나 소년에 대해서는 각 사안에 따른 개별적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맞춤형 사례관리라고 한다.[256]

맞춤형 사례관리는 앞서 살펴본 사회서비스 조정 단계보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맞춤형 사례관리는 5가지 원칙에 따라 수행되는데, 첫 번째 원칙은 통합적 치료로 판사 1인과 지원팀이 담당가족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게 되며, 두 번째 원칙은 심사부분으로 법원 직원이 가족구성원의 욕구와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서비스 승인을 위한 서비스 계획을 제시하게 되며, 세 번째 원칙은 가족의 사안에 따른 적합한 개별적 서비스 계획으로,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는 교육과 중재, 심사와 폭력예방, 안전예방조치를 통합하는 치료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며,[257] 네 번째 원칙은 사례관리와 심리로써, 사례관리자가 사안별로 배치되어 서비스의 대상인 가족이 법정기한 내

253) 가족자원센터(FRC)는 현재 이백여 가족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Jackson County Family Resource Center(주 252)].
254) 지역에 따라서는 가족자원센터(FRC)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는 달리 사회사업가를 법원의 직원으로 임용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이나 당사자를 사회사업단체, 공익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서비스와 연결하기도 한다[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73].
255) Jackson County Community Family Court Process(주 252).
256)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74.
257) 반면에 갈등이 크지 않은 가족은 전형적인 교육 및 중재와 같은 덜 집약적이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의뢰한다[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74].

에 의무화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서비스제공자와 의사소통하며, 서비스계획에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이를 알리고,[258] 법원은 정기적으로 '서비스 진행 회의(status conferences)'를 통해 서비스 계획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며, 다섯 번째 원칙은 양육계획의 개발로 부모의 양육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와 포럼의 제공에 해당한다.[259]

2. 소년보호관찰관의 직무

가. 개설

소년보호관찰관은 각 county의 지역보호관찰소(local juvenile probation department)라는 명칭의 소년보호관찰소에 소속되어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각 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county마다 소년보호관찰소가 설치되어 있다. 소규모 county의 경우에는 2개 내지 6개의 county에 하나의 소년보호관찰소가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260]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과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보호관찰소도 있다.[261]

county의 소년위원회(juvenile board)에서 임명하는 소년보호관찰소장(chief juvenile probation officer)은 해당 소년위원회에 보호관찰소의 일상적인 운영을 비롯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인 소년에 대한 지도 · 감독 및 보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262]

미국의 소년보호관찰관은 제도의 신설부터 사회복지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고,[263] 현재에도 소년사법체계에서 ① 법의 집행, ② 사회복지 서비스, ③ 자원중재자(resource broker)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소년보호관찰관의 첫 번째 역할인 ① 법의 집행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순응(compliance)과 처벌이 중요시되며, 두

258) 사례관리자는 폭력사건, 아동에 의한 자살시도와 같이 가족의 역기능 또는 갈등수준이 변화한 경우를 법원에 알릴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59) 아동양육사건에서 차별화된 사례관리는 소장 접수, 심사, 서비스 계획, 사법부 승인, 사례 관리, 합의 또는 심리(hearing), 양육계획의 순서로 진행된다[Schepard(주 202), 10];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74.

260) 예를 들어, 텍사스 주의 경우 164개의 소년보호관찰소가 있으며, 개별적으로 소년보호관찰소가 있는 county는 120개에 이른다.

261) 일반적으로 성인보호관찰은 county에 소속된 'Community Supervision and Corrections Department (CSCD)'에서 담당한다.

262) 김양곤(주 158), 39.

263) Peter, C. M, "Social work and juvenile probation: Historical tension and contemporary convergences", Social Work 56(4), National Association Social Workers (2011), 356.

번째 역할인 ②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욕구, 동기, 원조를 중시하면서 사례관리자 또는 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인 ③ 자원 중재자 부분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실제적인 욕구를 평가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한 서비스 계획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나. 사건의 접수 · 선별 · 평가

소년보호관찰관은 접수된 사건을 선별하여 평가하게 된다.

초기접수단계(the intake process)는 소년범죄자가 소년법원과 갖는 첫 대면으로, 기소 청구 여부나 구금 여부에 관한 초기 사정, 권고 등이 포함된다. 특정 관할의 경우에는 접수관(intake officers)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대부분의 경우 소년보호관찰관이나 법원의 다른 전문가들이 초기면접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264]

소년보호관찰관이 접수된 사건을 선별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가족, 관련 사회 기관, 처한 상황 및 지위, 학교 출석 여부, 집과 지역 사회에서의 행동, 가족관계, 친구와 같은 해당 소년의 배경이 되는 모든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265] 또한 사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특히 해당 소년의 전과기록 및 사건의 정황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해된다. 소년보호관찰관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소년법원판사가 해당 소년에 대한 구금이나 보석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 석방하는 경우에 석방의 조건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266] 해당 결정은 첫째, 사건의 종결, 둘째,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법원의 절차를 진행, 셋째, 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절차를 진행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267]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에는 해당 소년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 위협적인 존재인지, 도주의 위험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지,

264) 홍영오 · 황태정(주 83), 405.
265) 김양곤(주 158), 80.
266) 소년보호관찰관이 선별하고 평가한 소년범죄에 대한 정보는 체포된 소년에 대한 처리 절차 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소년의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절차로, 중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재판절차로 진행하게 된다[김양곤(주 158), 80].
267) 사건의 접수 단계는 체포된 소년에 대한 면접과 48시간 내지 72시간 내에 구금여부 결정을 위한 구금심리(detention hearing)를 포함하며, 해당 면접 및 구금심리 후에 세 가지 결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이춘화, 소년사건에서의 조사 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청구 (2002)]; 홍영오 · 황태정(주 83), 405.

가정환경의 안정성이 결핍된 상태인지 등의 여부가 고려된다.

다. 판결 전 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

소년보호관찰관은 판결 전에 소년법원판사에게 제출하는 판결 전 조사 보고서를 통해 소년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소년들에게 어떠한 판결이나 처분이 가장 적절한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판결 전 조사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들은 소년에 대한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나 견해를 위해 처우 담당자, 가족 등을 만나 정보와 의견을 수집하게 된다. 판결 전 조사 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범행 정황, 해당 사건에서 소년의 역할 및 소년의 사회적 경력 또는 직업적 경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268] 그리고 판결 전 조사 보고서에는 해당 사건이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 적합한 처분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견 등에 관한 소년보호관찰관의 권고도 포함된다.[269]

라. 지도 감독(supervision)

소년보호관찰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감독이다. 소년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은 해당 소년과 직접적 · 정기적 접촉을 통해 소년의 부모, 학교, 고용주나 관련 기관들과 소년의 교화개선을 위한 공동 작업으로 이해된다.[270] 소년보호관찰관에 의한 지도 감독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소년의 감독 불응 등과 같은 특정의 상황에서는 보호관찰처분의 취소나,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의 경우에는 보다 중대한 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년보호관찰관의 소년에 대한 감독 책임은 대상자인 소년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비롯하여 소년의 행동이나 교우관계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찾고, 소년의 약물사용이나 학교에의 결석과 같은 개별적인 문제들을 파악하여,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야간외출금지 등의 법원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소년보호관찰관은 소년에 대한 감독 업무뿐만 아니라 해당 소년이 처한 상황에 따른 다중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271]

---

268) 홍영오 · 황태정(주 83), 408.
269) 김양곤(주 158), 81.
270) 홍영오 · 황태정(주 83), 408.

제3절 독일

I. 가정법원 설립 배경

독일에서는 1976년 혼인법개정과 더불어 가정법원이 설립되었다.[272] 독일에서 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최초의 논의는 1928년 제35차 독일법률가 대회에서 법무부장관이었던 Eugen Schiffer가 법원이 이혼소송절차에서 사회심리학의 연구 성과와 방법론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발표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이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절차와 법원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273] 이러한 제안은 당시 독일 사회에서는 아무런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혼법과 이혼절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점차 지지를 얻게 되었다.[274] 가정법원의 설립에 동조하면서 Müller-Freienfels 교수는 가정법원 판사의 자질 확보를 비롯하여, 가정법원의 인력과 관련해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전문가의 조직적 결합을 제안하였다.[27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사회에서의 유책주의 이혼법을 폐지하고 파탄주의 이혼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혼법과 이혼절차에 대한 개정론은 결국 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276] 당시 가정법원 설치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첫째, 가사사건에 관한 관할을 가정법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 둘째, 가정법원이 이혼과 이혼의 결과(친권, 부양,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동일한 절차에서 병합 심리하여 재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277]

---

271) 소년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의무를 비롯하여 경찰관, 상담자, 가족치료가, 교육자, 조언자, 엄격한 규제자와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김양곤(주 158), 81].

272) 이하의 독일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에 관해서는 '김상용(주 5)'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273) Leonardy, Der Familienrichter – ein groß er Wurf geriet zu kurz, DRiZ (1977), 353/354; 김상용(주 5), 108.

274) Habscheid, Das Familiengericht, FamRZ 1955, 153; Habscheid, Bericht der Kommission zur Vorbereitung einer Reform der Zivilgerichtsbarkeit(1961), S. 109; Habscheid 교수는 가정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1인의 전문법관과 2인의 비전문가(그 중 1인은 여성이어야 함)로 구성된 재판부를 제안하였다. 또한 가정법원과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조직적 결합을 강조하였다[Bosch, Probleme einer Reform des Unehelichenrechts, FamRZ (1961), 457/463]; 김상용(주 5), 108-109.

275) Müller-Freienfels 교수는 가정법원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가정법원판사의 자질확보를 강조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의 하나로서 나이가 적당히 든 기혼자를 가정법원판사로 임명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Müller-Freienfels, Ehe und Recht(1962), S. 304]; 김상용(주 5), 108-109.

276) 김상용(주 5), 109.

1972년 2월 18일에 독일정부가 제시한 개정은 이혼과 이혼의 결과(이혼 후의 배우자 부양, 연금분할, 재산분할, 친권,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하며,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외의 가사사건(혼인취소 등)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었다.[278]

II.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에 대한 논의 및 절차보조인 제도

1. 조사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

1972년 2월 18일의 개정안은 가정법원판사의 업무를 지원, 보조하는 전문 인력인 상담원이나 조사관을 채용하여 법원의 조직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법원에 부부와 부모 등 당사자를 교육시켜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의 가족치료의 업무를 제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나 전문상담원이 담당해야 할 과제까지 법원에 부담시키는 것은 법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개정위원회는 가정법원의 권한은 혼인의 파탄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가에게 사실조사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서를 재판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굳이 법원내부에 전문가 조직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279] 개정위원회의 이러한 입장은 가정법원이 굳이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법원 내부로 가져와 법원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과 함께 심리 및 상담과 관련한 외부의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

277) 당시 독일에서는 친권, 부양, 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은 구법원(Amtsgericht)의 관할이었고, 이혼사건은 지방법원(Landgericht)의 관할로 되어 있는 등 절차와 관할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독일에서 가정법원을 설치하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가사사건에 관한 관할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김상용(주 5), 109].

278) 김상용(주 5), 109.

279) Eherechtskommission, Vorschläge zur Reform des Verfahrensrechts in Ehesachen zum Recht der Kinder geschiedener und getrennt lebender Eltern zur Behandlung der Ehewohnung und des Hausrats sowie zum ehe-und familiengerechten Steuerrechts (1971), S.40.

2. 절차보조인 제도

독일에서는 가정법원 내부에 이와 같은 조사관이나 상담자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에, 1997년 개정친자법[280]을 통해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가사재판절차에서 자녀의 의사와 입장을 반영하고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절차보조인(Verfahrenspfleger) 제도, 즉 '자녀의 변호사(Anwalt des Kindes)'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사재판절차에서 자녀를 대리할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 제1항)[281]. 절차보조인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자녀의 복리 보호 여부가 그 기준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사재판절차에서 법정대리인과 자녀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절차보조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자녀와 관련된 재판절차에서 자녀는 더 이상 소송 객체의 지위에 머물지 않고, 부모와 대등한 주체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었다.

그리고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2008년 6월 27일 법을 통해 통일된 단일법으로서 가사소송법은 새롭게 규정된 절차보조인에게 대화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신가사소송법[282] 제156조 제2항).[283] 구체적으로는 가정위탁양육의 경우, 가정위탁양육이 장기간 지속되면 위탁아동과 관련된 절차에서 위탁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는데, 이때 위탁부모는 절차보조인으로 해당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모 사이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고, 면접교섭의 이행을 보조하는 면접교섭보조인(Umgangspfleger)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 제1항을 통해 자녀의 신분에 관한 가사재판절차에서 자녀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개정된 2008년 가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법원은 절차보

280) Gesetz zur Reform des Kindschaftsrechts v. 16. 12. 1998, BGBl. I S. 2942; 김상용, "절차보조인 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론(시론) -가사절차에서 자녀의 지위 강화와 관련하여-", 사법 제27호 (2014), 76.

281) 김상용(주 5), 109; 개정 전의 비송사건절차법(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FGG)을 가리킨다.

282)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barkeit(FamFG).

283) 2008년 6월 27일 법은 가사재판절차에 관한 통합된 단일법으로서의 독일가사소송법을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가사재판절차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을 대리하는 절차보조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절차보조인의 선임을 법원의 의무로 하였다.[284] 이는 절차보조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녀의 신분과 관련된 가사재판절차에서 절차보조인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285]

III. 아동복지기관을 통한 상담(Beratung) 및 조정(Mediation)

독일에서는 가사재판절차 중 특히 양육, 친권, 면접교섭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부모 스스로 협의하여 갈등을 극복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286]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써 독일은 가정법원이 아닌 외부기관인 아동복지기관을 통한 상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1. 가정법원의 상담서비스 권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아동복지기관에 대하여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통지하게 되고(사회법 제8편[287] 제17조 제3항), 가정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아동복지기관은 양육, 친권, 면접교섭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가 협의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288]

즉, 가정법원에 이혼청구가 접수되는 경우 법원은 즉시 아동복지기관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소송이 계속되었음을 통지하게 되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아동복지기관은 신속하게 해당 부모에게 연락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혼청구의 접수와 동시에 아동복지기관과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되도록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

284) 김상용(주 280), 77.
285) 김상용(주 280), 77.
286) 이러한 독일법의 태도는 “법원의 개입에 앞서 당사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제공한다(Hilfe vor Eingriff)”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Wiesner, Zur gemeinsamen Verantwortung von Jugendamt und Familiengericht für die Sicherung des Kindeswohls, ZfJ (2003), 121].
287) SGB VIII Kinder-und Jugendhilfgesetz.
288) Kunkel in LPK-SGB VIII(3. Aufl., 2006), §17 Rn.20.

또한 가정법원은 이혼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자녀의 양육, 친권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신가사소송법 제156조 제1항), 가능한 한 초기에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 후의 양육, 친권과 관련하여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 제613조 제1항 2문]. 이때 법원은 당사자에게 상담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289]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자녀의 양육, 친권, 면접교섭 등과 관련하여 상담기관에 의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반복해서 인식시키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부모에게 상담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가능한 한 많은 부모들이 상담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여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합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첫째, 당사자가 양육, 친권,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아동복지기관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290] 둘째, 법원이 판단하기에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비송사건절차법 제52조 제2항) 언제든지 가사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직권으로 친권,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52조 제3항).

이러한 독일의 가사재판절차는 법원에 의한 결정보다는 법원 외부에서 상담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291] 그 이유는 법원의 재판절차가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은 부모간의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연장, 심화시킴으로써 자녀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292]

사실상 상담 및 조정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독일의 입법자들은 상담 및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상담 및 조정을 의무화하지 않은 근거로는 첫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과 조정을 강제하는 것은 당사자에 의한 자율적인 갈등의 해결이라는 조정 제도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 둘째, 당사자가

289) Zöller/Phlippi, Zivilprozessordnung(26. Aufl., 2007), §613 Rn.2a.
290) 당사자가 상담을 통하여 친권, 면접교섭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의 상담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Kunkel in LPK-SGB VIII(3.Aufl., 2006), §17 Rn.11].
291) Büttner, Änderungen im Familienverfahrensrecht durch das Kindschaftsrechtsreformgesetz, in: Schwab (Hrsg.), Das neue Familienrecht (1998), S.482.
292) Willutzki, Familiengericht und Jugendamt – neue Formen der Zusammenarbeit, ZfJ (1994), 202-203.

원하지 않는 조정을 시도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단지 절차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293]

2. 상담의 의의

이혼 후의 양육, 친권, 면접교섭과 관련된 상담의 목적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부모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294]

상담은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하도록 돕는 것에 중점을 두며, 조정은 당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완화시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95] 이때 필요한 정보는 이혼의 결과, 이혼이 당사자인 부부 및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특히 부모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독일의 아동복지기관이 제공하는 상담의 개념에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상담과 조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담은 궁극적으로 법률정보와 심리학, 교육학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당사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상담 경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상담을 받게 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첫째, 가정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아동복지기관이 해당 부모에게 상담서비스의 제공을 알리고, 상담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둘째,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외부의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셋째,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모가 스스로 상담의 필요성을 느껴서 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경우[296] 등이다(사회법 제8편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

293) BT-Drucks. 13/4899, S. 75.
294) 이 경우 자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녀와의 상담이 병행된다(사회법 제8편 제17조 제1항 3호, 제17조 제2항).
295) Balloff, Familiengerichtshilfe als Aufgabe der Jugendämter, ZfJ (1991), 379/385f.
296) 독일에서는 이와 같이 무상으로 상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4. 상담 방식

대화와 상담은 아동복지기관 또는 제3의 장소(당사자의 가정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나 편지로도 가능하다. 방문을 요청하는 편지는, "가정법원의 연락을 받고 귀하에게 이혼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매우 힘든 상황을 의미하며,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결정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귀하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귀하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원하신다면 상담을 통하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와의 대화는 법원에서의 재판절차를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0일 0시에 귀하가 배우자와 함께 대화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이 귀하에게 적당하지 않다면, 사전에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하와 의논하여 다른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일반적으로 포함하게 된다.[297]

그러나 양육, 친권에 관한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나 편지를 통한 대화, 상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반드시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직접 만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아동복지기관에 부모와 자녀를 초대하여 상담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기도 하는데, 특히 부모와 자녀의 일상적인 관계나 자녀의 성장에 적합한 주거환경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방문상담의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298]

5. 상담 내용

이혼 후의 양육, 친권과 관련된 상담의 경우에 있어서, 우선 아동복지기관은 당사자에 대하여 이혼 후의 양육, 공동친권 또는 단독친권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 만일 부모가 이혼 후에도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한다면 이혼한 부모가 실제로 어떻게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게 되는데, 아동복지기관은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제1687조가 규정하는 이혼 후의 공동친권 관련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299]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

297) 김상용(주 5), 119.
298) Oberloskamp, Jugendhilferechtliche Fälle für Studium und Praxis (10. Aufl., 2001), S. 317f; 김상용(주 5), 120.
299) 김상용, "이혼 후의 공동친권", 가족법연구 I (2002), 208 이하.

여 친권자 지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이혼 후에도 혼인 중과 같이 공동친권이 유지된다. 즉, 부모가 공동친권에 합의한 때에는 법원은 친권에 관하여 재판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혼 후의 공동친권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기관은 미성년 자녀의 부모의 공동친권에 대한 대안으로서 단독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부모의 일방이 단독친권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합의는 법원에 전달되어 재판의 기초자료로 이용된다(사회법 제8편 제17조 제2항). 상담 결과 단독친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자신을 단독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할 수 있다.[300]

부모 중 일방의 단독친권 청구에 상대방이 동의하고, 자녀(14세 이상)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청구를 인용하게 된다(민법 제1671조 제2항 제1호). 만약 부모 중 일방의 단독친권 청구에 상대방이 단독친권에 동의하지 않고, 자녀 또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 해도, 단독친권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사자에 대하여 상담기관에 의한 상담을 권유하고,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52조).

그러나 부모 중 상대방이 단독친권에 동의하고 자녀가 이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단독친권을 청구한 부모 중 일방을 단독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아동복지기관과 가정법원이 공동으로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아동복지기관의 보고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사회법 제8편 제8조의a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즉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697조).

부모가 단독친권에 합의한 경우에는 아동복지기관은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사회법 제8편 제18조). 이때 단독친권자가 된 부모의 일방에 대해서는 자녀의 양육비확보를 위하여 아동복지기관이 부양청구를 대리하는 서비스인 보좌 제도(민법 제1712조 이하)를 제공한다는 사

300) 예를 들어 친권의 일부인 거소지정권에 대해서만 단독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도 가능하다[김상용(주 5), 121].

실 또한 고지되어야 한다.

6. 아동복지기관의 직무

가. 가정법원과 아동복지기관의 협력

아동복지기관은 친권상실선고, 이혼 후의 친권자 결정, 면접교섭권, 자녀의 인도청구 등과 같은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안(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의a 제1항)에 있어서 가정법원과 협력하고, 가정법원의 업무를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사회법 제8편 제50조). 따라서 아동복지기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된 사실관계를 분석, 평가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안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301] 예를 들면 이혼 후의 친권에 관한 사안의 경우 아동복지기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공동친권의 적합성이나 단독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독일의 아동복지기관은 자녀의 신상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가 된다.[302]

(1) 아동복지기관의 의견서

아동복지기관이 제출하는 의견은 법원의 판단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은 아동복지기관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당사자와 상담원과의 대화내용만이 기록되어 있거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반론을 서술한 것만으로는 법원이 요구하는 의견서의 수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303] 아동복지기관의 의견서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을 넘어서 사실관계의 분석과 평가, 이에 기초한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304]

---

301) 가사재판절차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신가사소송법 제26조). 아동복지기관의 사실조사 및 사실관계의 분석, 평가 작업은 이와 같은 법원 고유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성격을 갖는다[김상용(주 5), 122].

302)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동복지기관은 자녀의 신상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이다[Kunkel in LPK-SGB VIII(주 288), §50 Rn.5]; 김상용(주 5), 122.

303) BGH, FamRZ (1954), 219; OLG Frankfurt, DAVorm (1991), 1075ff.; Willutzki(주 292), 202/203.

304) 이것은 전문기관으로서의 아동복지기관에 대한 당연한 요구이며, '자녀의 복리실현'이라는 아동복지기관의 임무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상용(주 5), 122].

(2) 상담의 비강제성

당사자가 아동복지기관과의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복지기관은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즉 가능한 범위 내의 조사에는 미성년 자녀의 학교나 이웃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방식까지도 포함한다.

아동복지기관이 상담과정에서 얻은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려면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사회법 제8편 제65조).

나. 아동복지기관의 의견에 대한 가정법원의 청취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선고, 이혼 후의 친권자 결정, 면접교섭권, 자녀의 인도청구 등과 같은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사안(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의a 제1항)에 관하여 결정하기 전에 아동복지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다. 가정법원이 아동복지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의무는 결국 가정법원에 대한 아동복지기관의 협력 의무(사회법 제8편 제50조)와 필연적 관계에 있다.

가정법원이 아동복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목적은 첫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둘째,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305]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기관은 법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306]

가정법원이 아동복지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안 중에서 특히, 그 중요성이 큰 부분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이 있다. 민법 제1361조의b 및 폭력방지법[307] 제2조는 부부 중 일방(청구인)이 상대방(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혼인주택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그 주택에서 동거하고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러한 청구를 기각하기 전에 아동복지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신가사소송법 제

305) Jansen/Zorn, FGG (3. Aufl., 2005), §49a Rn.22; 김상용(주 5), 123.
306) BGH, FamRZ (1986), 895.
307) 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Gewaltschutzgesetz - GewSchG).

205조 제1항). 해당 규정은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첫째, 청구를 기각하기 전에 아동복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게 함으로써 사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둘째, 청구를 기각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부부의 일방과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308]

다. 가정법원에 대한 아동복지기관의 통지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아동복지기관은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사회법 제8편 제8조의a 제3항). 아동복지기관은 자녀의 복리를 지키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의견서(감정서) 형식의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09] 아동복지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보는 판단기준은 독일민법 제1666조 및 제1666조의a에서 찾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복리가 친권의 남용, 방임에 의해서 위태롭게 되는 경우, 둘째, 부모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경우(정신질환 등), 셋째, 제3자에 의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가정법원과 아동복지기관은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며, 어느 일방의 협력이 없이는 다른 일방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아동복지기관은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를 통지하여 법원의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 즉 이러한 아동복지기관의 통지가 없으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아동복지기관으로부터 이러한 통지를 받은 가정법원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권의 상실, 자녀를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시설이나 다른 가정에서 보호하는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법원이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

308) BT-Drucks. 14/5429, S.40.
309) Röchling, Die Stellung des Jugendamtes in familiengerichtlichen Verfahren, ZfJ (2004), 257/259.

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기관으로서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직무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310]

Ⅳ. 아동청(Jugendamt)을 통한 소년사법보호인

1. 아동청

독일의 아동청은 아동복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 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관련 상담, 탁아소와 유치원의 자리를 제공하고 이러한 시설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 및 감독, 방과 후에 부모들이 직접 돌보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학교와 직업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311] 이외에도 아동청은 아동이 관련되어 있는 형사재판,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재판절차, 이혼절차, 입양절차 등의 재판 절차에 간여하며, 부모가 사망했거나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아동을 위하여 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312]

독일의 아동청은 독일 전역에서 법률에 규정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일적인 국가기관으로, 각 대도시에는 아동청이 있으며, 소도시와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소도시나 지방자치단체를 묶어서 하나의 아동청을 두고 있다.[313] 독일의 16개의 주마다 설치된 주아동청은 해당 주의 아동복지업무를 관장하며, 아동청은 무상으로 필요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14]

---

310) 이러한 의미에서 가정법원은 아동복지기관과 함께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김상용(주 5), 125].

311) Rainer Frank, "Das deutsche Jugendamt: Geschichte, Organisation, Aufgaben", 법학논문집 제37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317; 김상용(역), "독일 아동청의 역사, 조직 및 임무", 법학논문집 제37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321-322.

312) Rainer Frank(주 311), 317; 김상용(역)(주 311), 321-322.

313) 즉 독일 전역에 아동청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Rainer Frank(주 311), 317; 김상용(역)(주 311), 321].

314) 독일인이라면 누구나, 아동양육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입양을 하려는 경우, 아동이 궁핍에 처한 경우에는 아동청에 조언과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Rainer Frank(주 311), 317; 김상용(역)(주 311), 321-322].

2. 소년사법보호인의 자격과 업무[315]

아동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소년법원법의 소년사법보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소년법원법 제38조 제1항).

가. 자격

소년사법보호인은 일종의 사회복지행정기관으로서 조직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소년법원이나 법무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316] 소년법원법이나 아동 및 소년보호법은 소년사법보호인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교육학이나 심리학, 사회학 등을 전공하고 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아동청에서 아동 및 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임명하여, 이들이 소년사법보호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아동 및 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사설단체의 구성원에게 소년사법보호인의 직무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사회법 제8편 제76조 제1항), 아동청의 직원만이 소년사법보호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업무

소년법원법은 소년사법보호인의 업무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소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소년의 인성과 발달 및 환경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와 더불어 교육적 · 사회적 · 후견적 관점에서 파악한 제재처분에 관한 의견을 소년검사와 소년법원에 보고하는 업무이다.[317] 소년검사와 소년법원에 보고하는 업무와는 별도로, 소년사법보호인은 소년법원이나 소년검사 및 소년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소년법원법이 정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둘째, 소년에 대한 지시(Weisungen)와 의무부과(Auflagen)가 있을 때 소년이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여 현저한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이를 소년법원에

315) "소년사법보호인의 자격과 업무" 부분과 조문은 서용성 조사위원의 자문을 받았음.

316) 조광국, "독일의 소년형사사법제도-일반형사절차에 대한 특수성과 보호처분 및 소년형벌의 종류와 체계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126집: 외국사법연수논집(32) 제126집, 법원도서관 (2013), 105.

317) 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서 위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하며, 적합한 처분까지도 재판부에 제안하게 된다. 소년법원법 제55조 제3항에 의하면 재판절차에의 소환이 필요적이며, 재판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재판절차의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은 없으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다[조광국(주 316), 105].

통지하는 업무이다.

셋째, 소년사법절차 전반에 있어서 소년을 보호, 지원하고 형사절차가 초래할 수 있는 의도되지 아니한 부정적 영향이 소년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제반 조치(후견적 조치)를 취할 업무이다.

제4절 일본



I. 개설

우리나라의 가정법원 창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일본 가정재판소[318]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소년법원과 가정법원의 영향을 받아 1949년 설립되었다.[319] 1947년 일본 재판소법이 제정될 당시에 가정사건의 심판과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재판소의 특별지부로 가사심판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1948년 소년법의 전면적 개정(법률 제168호)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기관이 사법상의 재판소로 변경됨에 따라,[320] 가정사건과 소년사건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한 독립된 재판소인 가정재판소가 1949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321]

일본의 가정재판소는 가정의 평화와 건전한 친족공동생활의 유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재판소 단위로 설립되었다(구 가사심판법 제1조). 가정재판소는 설립 초기부터 독립성, 민주성, 과학성, 교육성, 사회성을 지도이념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가정재판소[322]의 설립은 가사심판소를 지방재판소로부터 독립시켜 그 기능을 충실히 한다는 요청과 인권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소년에 대한 강제적인 처분을 포함하는 소년심판을 재판소의 권한으로 하려는 요청을 연합국군총사령부 당국이 실현

318) 우리의 가정법원에 해당한다; 이하의 일본 조문은 김성화 조사위원의 자문을 받았음.
319) 일본 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제260호). 宇多川潤四郎(주 35), 41-42頁; 송현종(주 3), 47면.
320) 1948년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소년보호처분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기관인 소년심판소가 사법상의 재판소로 변경되었다[梶村太市 · 德田和幸, 家事事件手続法 (第2版), 有斐閣 (2009), 11頁].
321) 梶村太市 · 德田和幸(주 320), 11頁.
322) 가사심판소는 1948년 재판소법 개정에 의하여 가정재판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김원태, "일본에서의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 가족법연구 제22권 제3호 (2008), 67].

한 것이라 볼 수 있다.[323]

일본 가정재판소의 조사관 제도에 관한 최초의 규정은 1921년 7월 7일 '가사심판에 관한 요강(家事審判に関する要綱)'의 조사원에 대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은 1927년 10월 가사심판법안(家事審判法案)에 의하여 폐지되었다.[32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년심판소에 소년보호사(少年保護司)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의 조사관 제도와는 다소 달랐다.[325] 1949년 1월 가정재판소 설립 당시에는 소년보호사 제도만 규율되었으나,[326] 1951년에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재판소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소년보호사 제도와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954년 6월 소년보호사 및 가사조사관에 대한 제도가 통합되면서,[327] 가정재판소의 조사관 제도가 정비되었다.[328] 1954년에 재정비된 가정재판소의 조사관 제도는 가정재판소의 지도이념의 실현 및 가정재판소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학성, 교육성, 사회성을 구체화하여 복지적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년조사관 및 가사조사관으로 세분화되었다.[329]

현재 일본 가정재판소의 조사관 제도는 재판소 내에서도 복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시행착오와 연구를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30] 특히 가정재판소 조

323) 内藤頼博, "家庭裁判所の沿革," 家族問題と家族法Ⅶ －家事裁判－, 酒井書店 (1957), 77頁 이하; 김원태(주 322), 68.

324) 박주영, "일본의 가정재판소조사관 제도의 활용: 인사소송법상의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법학논집 제31호 (2014), 133.

325) 당시의 소년보호사는 현재의 조사관과 비교할 때, 대상, 범위 및 역할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박주영(주 324), 133].

326) 사실상 1949년 가정재판소 설립 당시부터 가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를 담당하는 직책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박주영(주 324), 133].

327) 두 제도가 통합된 이후에도 한동안은 조사관들 사이에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둘러싸고 미묘한 감정대립이 있었으나, 이러한 감정의 대립은 초기 단계에서 해소되어 조사관은 가족과 소년을 모두를 포함하는 가정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井上博道, "家庭裁判所調査官のo歴史と役割", 司法書士 第42嫩 (2007. 2.), 14-15頁]. 이러한 초기의 대립은 가정재판소가 설립 당시부터 '가정에 평화를, 소년에게는 사랑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정문제와 소년비행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주영(주 324), 134].

328)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에서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가 가장 발전될 수 있는 요인을 전국 규모의 가정재판소의 설립 및 유지로 보기도 한다[鶴岡健一, "家庭裁判所の福祉的機能と家庭裁判所調査官の役割,"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연구소 주최 2012년 상반기 외부초청 강연 자료집 (2012); 송현종 · 조소연 · 노혜련(주 6), 6].

329) 송현종(주 3), 47; 송현종 · 조소연 · 노혜련(주 6), 4-5.

330) 2009년 가정재판소 60주년을 맞이해 일본최고재판소장관은 가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1949년 1월 1일에 가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가정재판소의 조직, 절차의 재정비와 운영상의 개선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竹崎博允, "家庭裁判所60周年を迎えて", 家庭裁判月報 第61권 第1호, 最高裁判所 (2009), 1]; 2006년 한 해 동안 일본 전국의 가정재판소가 수리한 인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가사조정

사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의 진상을 파악하여 가사분쟁의 원인을 제거 및 해소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331] 이와 같은 일본의 가정재판소 및 조사관 제도의 도입과 발전은 우리나라의 가정법원 및 조사관 제도의 설립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332]

II.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조직 편제

1. 가정국의 설립 및 조직 구성

일본에서는 1949년 1월 1일에 최초의 가정재판소가 설립되면서, 이와 함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내에 가정국(家庭局)도 설치되었다.[333] 가정국의 설치는 가정재판소 내의 조사관의 중요성에 맞게 최고재판소에 조사관을 전담하는 '가정국' 설치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었다. 당시의 조사관은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내에 설치된 가정국에서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과에 나누어져 소속되어 있었다.[334]

그러나 점차 가정재판소의 업무 및 역할의 확대, 발전에 따라 가정재판소의 양적 · 질적 발전에 적합한 조사관 제도에 대한 재정비를 비롯하여 가정국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335] 이에 따라 1980년 4월 1일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분과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기존의 제1과(課) 및 제2과 이외에 제3과를 설치하였다. 제1과장과 제2과장이 재판관인 것과는 달리 제3과장에는 조사관이 배치되며,[336] 제3과에서는 가정재판소 사건의 과학적 조사 · 조사관 및 조사관보의 직무 사항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건, 가사심판사건) 등의 총수는 742,661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총수에서는 24,892건(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숙희(주 59), 277-278].

331) 한숙희(주 59), 278; 박주영(주 324), 128.

332) 박주영(주 324), 128.

333) 박주영(주 324), 129.

334) 윤승은 · 최창훈 · 송현종, "일본 가정재판소 출장보고", 외국의 가사 · 소년 재판제도 세미나 회의자료(내부보고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2006).

335) 윤승은 · 최창훈 · 송현종(주 334).

336) 2018년을 기준으로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내의 가정국은 3개의 과(課), 10개의 계(係) 총 31명의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http://www.courts.go.jp/about/sosiki/index.html, 일본 최고재판소 (2018. 9. 12. 최종확인)]. 가정국은 제1과에 서무계(庶務係), 기획계(企画係), 소년법규 및 사건계(少年法規 · 事件係), 소년자료계(少年資料係)가 있고, 제2과에 가정법규 및 사건계(家事法規 · 事件係), 가사절차 제1계(家事手続第一係), 가사절차 제2계(家事手続第二係), 가사자료계(家事資料係)가 있으며, 제3과에 조사제도계(調査制度係), 과학조사계(科学調査係)가 있다.

그리고 약 1년 후인 1981년 3월 18일에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규칙의 일부 개정을 통해 사무총국 내에 조사관 출신의 가정심의관을 배치하게 되었다.[337] 가정국 내의 가정심의관이라는 직위의 창설은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업무가 최고재판소의 가정국 내로 한정되지 않고, 외부적으로 연계나 조정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 가정국의 가정심의관은 가정국의 사무를 사무총국의 총무국, 인사국 및 경리국의 사무와 밀접히 연계하고, 재판소직원총합연수소(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338]와 재판소 서기관연수소에서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내의 가정국은 전국 가정재판소의 정책, 제도 개선, 예산, 간행물, 협의회 운영, 연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339] 가정국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은 가정국장, 제1과장 및 제2과장으로 총 4명이고, 조사관은 가정심의관 및 제3과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이다.[340] 특히 조사관의 업무는 가정국 내에서 제3과가 중심이 되어 전국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341]

2. 가정재판소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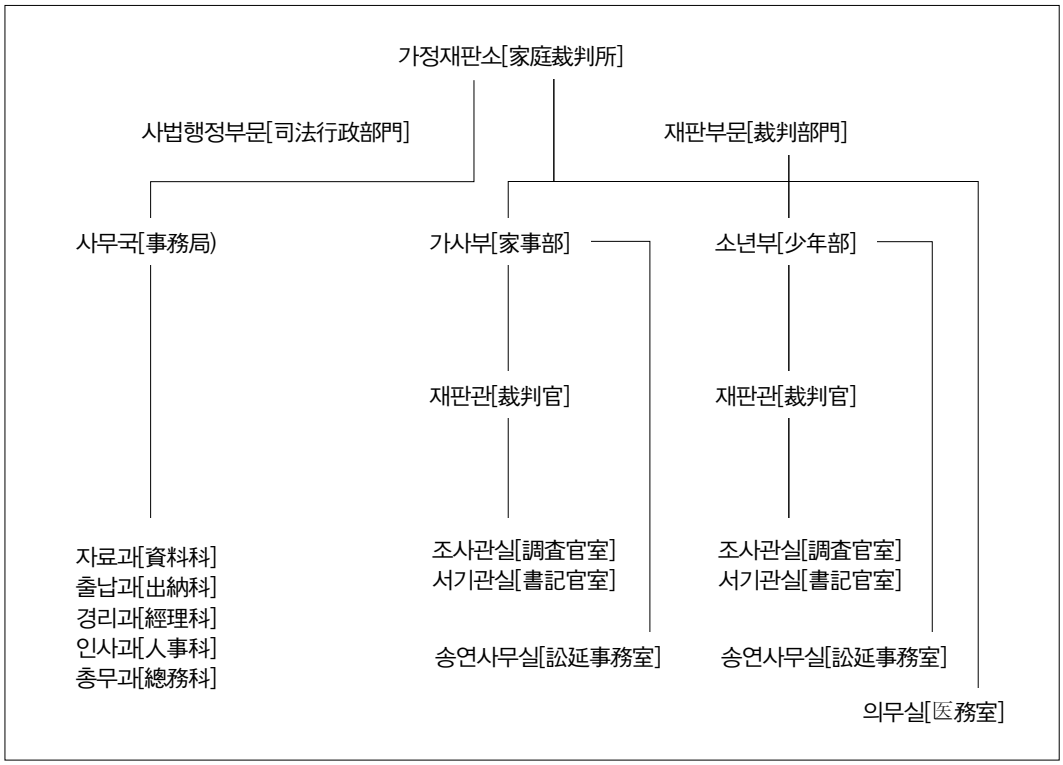
각 가정재판소는 ① 사법행정부문과 ② 재판부문으로 나뉜다.[342]

우선 ① 사법행정부문 “사무국” 하에 자료과, 출납과, 경리과, 인사과 및 총무과의 5과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리고 ② 재판부문의 경우에는 “가사부”와 “소년부”로 분류된다. 가사부의 경우는 직속인 송정사무실과 재판관 하의 조사관실 및 서기관실로 구성된다. 둘째, 소년부의 경우는 가사부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 직속인 송정사무실과 재판관 하의 조사관실 및 서기관실로 구성된다. 또한 다른 재판소에 없는 특이점으로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337) 우리의 차관 또는 차관보급으로, 조사관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직위에 해당한다.
338) 채용시험에 합격한 조사관보에 대한 신규 연수를 담당하는 연수 기관으로 우리의 법원공무원교육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39)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233.
340) 해당 인원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한다[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233].
341)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233.
342) 家裁調査官の仕事がわかる本, 公務員の仕事シリーズ, 法學書院編集部 (2014), 21.

[그림1] 가정재판소의 구조



가정재판소의 인적구성은 위의 국, 과나 실에 속한 재판관, 가사조정관, 참여원, 조정위원, 조사관 및 의무실기관에 해당한다. 조사관은 주임조사관을 조장으로 3인 1조가 되어 재판부에 배치되어, 가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실조사를 담당하게 된다.[343]

이와는 별도로 가정재판소에서는 ① 과학 조사관실이나 ② 카운슬링 조사관실을 설치하여 조사를 돕고 있다.

① 과학조사관실을 통해서는 심리검사와 같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당사자의 건강과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약물교실, 사춘기 교실 등 청소년 상대의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과 공동으로 공동조사, 공동시험관찰 등을 시행한다.[344] 과학 조사관실에는 모래놀이 치료 기구, 장난감 등이 준비되어 있고

343) 家庭裁判所長あて事務總長依命通達, 高等裁判所長官, 最高裁總1 第145号 (1982. 6. 25.);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100.
344)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101.

'한 방향 거울(one-way mirror)'을 설치하여 옆에 설치된 방에서 아동 등의 행동 관찰, 자녀와 아동의 면접교섭 관찰 등이 가능하다.[345]

② 카운슬링 조사관실을 통해서는 가정의 평화와 소년의 건전한 보호 육성의 차원에서 당사자가 처한 인간관계를 조정하거나 조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구성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일반사무직과 직렬이 분리되어, 최고재판소의 가정국을 통해 전국적으로 조직 체계가 다음과 같이 일원화되어 있다. 각급 가정재판소 내에서 조사관의 조직은 수석조사관의 지휘 하에 차석조사관, 총괄주임조사관, 주임조사관, 조사관, 조사관보로 구성되어 있다.[346]

가. 조직구성 및 직무

조사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당해 가정재판소 재판관회의에 있는 사법행정상의 감독권을 보좌,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조사사무의 처리의 적법성 · 효율성, 기록의 인수인계 및 관리, 장부제표의 비치 및 보존, 재판소 직원 및 조사관으로서의 복무, 관계기관과의 연락조정, 조사관보의 실무수습 중 지도감독, 재판관 및 재판소서기관 · 조정위원 등과의 연계 사항이 있다.

이와는 달리 조사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재판기관으로서 재판관에게 있는 재판사무 상의 지휘감독권을 보좌, 보충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사사무에 관한 지도감독은 재판관의 명령 보조, 조사계획 · 조사대상 · 조사방법에 대한 사항이 대상이 되며, 지도감독의 방법으로는 기록 및 조사보고서의 사열, 조정(調整) · 조언 · 지도 · 지시, 주의 등이 있다. 재판관의 명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관의 조사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당 분야의 장인 수석조사관이 담당하고, 차석조사관, 총괄주임조사관, 주임조사관이 이를 보좌, 보충하게 된다.

345) 동경가정재판소의 경우 가사부와 소년부에 개별적으로 과학 조사관실이 배치되어 있다[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101].
346)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88-89.

(1) 수석조사관

각급 가정재판소에서는 수석조사관을 통해 전문적인 조사관의 직무 및 사법행정과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347] 가정재판소에는 수석조사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재판소법 제61조의2 제3항), 조사 영역에 관련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조사관 중에서 최고 책임자를 설정하여 조사관의 재판사무 행정상의 지휘감독과 조사 분야의 조사업무를 지도감독 해야 한다(수석가정재판소조사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또한 수석조사관은 대외적으로는 관계 행정기관 기타 기관과의 연락조정, 시안의 기획입안 및 실행, 가정재판소장 보좌 등을 직무로 한다.

그러나 실제 수석조사관이 조사관의 일반사무 및 조사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아, 수석조사관 하에 차석조사관, 총괄주임조사관 및 주임조사관을 배치하고 있다.

(2) 차석조사관

차석 조사관은 수석조사관의 사무전반을 보좌하고, 총괄주임조사는 여러 개의 조(組)를 지독 및 감독할 의무를 진다(수석가정재판소조사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3) 총괄주임조사관

총괄주임조사관의 경우는 조사관 제도 초기부터 있었던 직위는 아니었다. 대규모의 가정재판소 본청에서는 각 조를 담당하는 주임조사관의 수가 많아서, 수석조사관 및 차석조사관이 주임조사관을 적정하게 지도, 감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해 수석 · 차석 조사관과 주임조사관 사이에서 여러 개의 조를 지도 ·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2년 수석가정재판소조사관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함께 총괄주임조사관 직위가 설치되었다.

(4) 주임조사관

모든 가정재판소 본청과 최고재판소가 지정한 지부에 주임조사관을 두게 되는데

347) 最高裁判所事務総局, 改訂主任家庭裁判所調, 査官執務資料集, 家裁裁判資料 (2008), 185 ; 송현종 · 조소연 · 노혜련(주 6), 7.

(수석가정재판소조사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주임조사관은 본인이 속한 조에 속한 조사관과 조사관보의 일반사무 및 조사사무를 지도, 감독하게 된다. 주임조사관은 실제로 조사관 및 조사관보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하게 되므로, 조사관의 업무능력 및 조사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동경가정재판소에서는 가정폭력 등을 당한 자녀의 면접교섭 사건 등과 같은 곤란한 사건과 같은 가사사건 및 소년사건 중 신병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계획 단계부터 주임조사관이 적극 지도 · 감독하고 조사보고서에 주임조사관과 함께 날인하도록 하는 등 주임조사관에 의한 지도감독을 중요시하고 있다.

조사관과 조사관보에 대한 실제적인 지도 및 감독을 하게 되는 주임조사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사무로는 조사사무 처리현황 파악 및 보고, 기록의 일반적 관리 및 재판소외 소지 및 관리, 장부제표의 보관 및 기재, 사무태도 및 직무상황의 파악 및 지도, 이동에 따른 조사사무의 인계, ② 조사사무로는 절차선별, 명령보좌, 사무분배, 조사사무에 대한 파악, 조사보고서 등의 사열, ③ 수석조사관과 차석조사관 등의 사무 및 관련 업무로서 각종 연락협의회 기획 · 준비 및 운영, 자청연구 기획 · 준비 및 운영, 보도위탁처 연락조정, 회의(주임조사관 회의, 간부직원연락회 등)의 출석, 최고재판소로부터의 각종 조회 등에 관한 회답 · 보고 등, 관계기관의 설치된 각종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 연수회 등의 강사 추천, ④ 조사관연수소양성부연수생에 대한 실무수습 담당.[348]

(5) 조사관

조사관은 원칙적으로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의 조사관양성과정을 수료한 조사관보에서 임명된다. 조사관은 조사업무를 하며 주임조사관의 사무를 보좌하게 된다. 그리고 고등법원에도 조사관이 배치되어 항고심의 심리 및 부대사항의 재판에 따른 항소심의 심리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한다.

(6) 조사관보

각 가정재판소에는 조사관보를 두게 되는데(재판소법 제61조의3 제1항), 각 가정재판소가 조사관보의 임면과 근무할 재판소를 지정하게 된다. 조사관보는 임명과 동

348) 最高裁判所事務総局 (1998); 最高裁判所事務総局 (2008);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89.

시에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에 입소하여 2년 동안 조사관양성과정연수를 받는데, 약 13개월의 실무수습 기간 동안에는 해당 주임조사관의 조에 소속되어 실무수습과 지도 감독을 받게 된다.

나. 현황

일본 재판소법 제6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각 가정재판소 및 각 고등재판소에는 조사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관은 2001년에 1,533명이었으나, 2004년 4월부터 인사소송법이 시행된 후, 인사소송사건이 가정재판소의 관할이 되면서 그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가정재판소의 본청 50개소와 지부 111개소에 조사관 1,591명이,[349] 2015년에는 가정재판소의 본청 50개소, 지부 203개소, 출장소 77개소에 1,596명의 조사관이 배치되었다.[350]

2018년을 기준으로 조사관의 직무별 현황으로 수석조사관은 50명, 가사차석조사관은 29명, 소년차석조사관은 26명, 차석조사관은 27명, 총괄주임조사관과 주임조사관은 454명, 조사관은 901명, 가사조사관보는 116명이 있다.[351] 특히 동경가정재판소에는 수석조사관 1명, 차석조사관 4명[다치카와(立川)지부 1명 포함][352]을 포함하여 총 110명(가사계 61명, 소년계 48명)의 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다.

전국 가정재판소에 소장전임청이 있는 곳은 26개소이고, 소년법이 정한 소년의 보호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부는 102개소이며, 합의사건을 취급하는 지부는 63개소이다. 그리고 3인의 차석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2개소, 2인의 차석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23개소이다. 그 외의 가정재판소(24개소)에는 1인의 차석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다. 총괄주임조사관은 13개소의 본청과 13개의 지부에 규모에 따라 1인 또는 여러 명이 배치되어 있다.[353]

사실상 일본은 지방법원과 유사한 수의 가정재판소를 설치해 사건을 처리하고

---

349)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86; 2008년을 기준으로 일본 가정재판소 판사의 수는 3,491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50) 송현종 · 조소연 · 노혜련(주 6), 6; 2007년 7월을 기준으로 일본의 가정재판소에는 재판관 약 700명(해당 지방재판소의 재판관을 겸하는 경우도 많다), 서기관 · 사무관 약 3,300명이 배치되어 있다[김원태(주 322), 9]; 日本 最高裁判所, 「裁判所データブック」, 2018, 22頁.

351) 裁判所の官職要覧 (https://chrysanthemum-paulownia.hatenablog.jp/entry/officials/courts) (최종 확인 2018. 9. 12).

352) 2018년을 기준으로 동경가정재판소 다치카와(立川)지부에는 가사계 21명, 소년계 17명의 가사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다.

353)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86.

있으며, 사건 수에 따라 지부에 주임조사관 1인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354] 사건 수에 따라 재판관뿐만 아니라 조사관의 배치도 조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 가정재판소는 전국적으로 균등한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조사관 조직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성과로도 볼 수 있다.[355]

최근 일본에서는 가사사건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356] 소년비행의 양상 또한 보다 심각하고 복잡해지면서 현재는 1인의 주임조사관과 2인 내지 3인의 조사관이 하나의 조(組)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때 주임조사관은 조의 책임자로서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확인, 지도 및 감독하고, 양성부 연수생의 실무수습을 지도하는 업무를 부담하게 된다.[357]

각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관에게는 1인의 주임조사관과 2인 이상의 조사관으로 구성된 1조가 배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의 재판관에게 1조의 조사관이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전속제의 의미는 아니며, 실제 운영은 다수의 재판관에 다수의 조가 연결되어 있는 풀(pool)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358] 물론 사정에 따라서 2인의 재판관에 1조가 배치되기도 하고, 1인의 재판관에 2조 이상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359] 그리고 사건 수에 따라 주임조사관 1인이 배치되어 있는 지부도 있다.

조사관은 일반적으로 3년 내지 5년 마다 가정재판소 본청과 지부로 전국적인 이동이 이루어진다.[360]

---

354)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87; 일본의 경우 사건 수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임용하고 있어, 우리와 같이 조사관의 업무 과다에 따른 불만족 등의 반응은 조사되지 않는다.
355) 송현종(주 28), 13.
356) 日本 最高裁判所(주 350), 63頁.
357) 最高裁判所事務総局, 改訂主任家庭裁判所調, 査官執務資料集, 家裁裁判資料 第172(2) (1998); 송현종 · 조소연 · 노혜련(주 6), 7.
358)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87.
359)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87.
360) 한숙희(주 59), 281.

III.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선발

1. 개설

일본은 조사관 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후에 연수를 통해 갖출 수 있는 자질이 풍부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채용시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판소직원채용종합직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해당 시험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인문과학을 전공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2. 응시 현황

매년 채용되는 조사관의 수는 평균적으로 40명 내지 50명으로, 2017년의 조사관 채용 예정 인원은 대학원 졸업자 10명, 대학 졸업자 30명의 총 40명이었다. 2009년에 시행된 조사관 채용시험의 경우 채용 인원이 50명이고, 응시자는 약 1,400명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45명 채용 인원에 약 800명이 응시하여, 2009년과 2014년의 5년 사이에 조사관 채용시험의 응시 인원은 약 절반으로 감소했다.[361] 이와 같이 최근 조사관 채용시험에 대한 응시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3년 내지 5년 마다 전국으로 이동해야 하는 순환 업무에 대한 부담감 및 채용시험에 대한 어려움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응시 인원 감소에 대해 최고재판소 가정국은 '가재조사관[362] 설명회(家裁調査官ガイダンス)'를 전국의 각 가정재판소에서 매년 2회 개최하도록 하여, 역량 있는 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채용 정책에 따라 동경가정재판소의 경우 매년 2회에 걸쳐 3일 동안 '가정재판소조사관 인턴 과정(家庭裁判所調査官インターンシップ)'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16명이 해당 인턴 과정에 참여했다.[363] 그리고 2016년 12월 5일과 6일에 '가정재판소조사관 설명회'를 개최하여 127명의 참여를 유도하였다.[364]

---

361) 東京家庭裁判所委員会報告 (http://niben.jp/niben/books/frontier/frontier201512/2015_NO12_49.pdf#search=%27%E6%9D%B1%E4%BA%AC%E5%AE%B6%E5%BA%AD%E8%A3%81%E5%88%A4%E6%89%80%E57%94%E5%93%A1%E4%BC%9A%E5%A0%B1%E5%91%8A%27) (2018. 6. 30. 최종확인).

362) 일본에서는 가정재판소 조사관을 가재조사관으로 통칭하고 있다.

363) 平成２９年度裁判所インターンシップ; 家庭裁判所調査官 (http://www.courts.go.jp/tokyo-h/about/osirase/internship/index.html) (2018. 6. 30. 최종확인).

364) 家裁所調査官ガイダンス (http://www.courts.go.jp/tokyo-f/about/koho/gyomusetsumeikai/index.

3. 업무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일본에서는 조사관이 조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① 사례분석 능력, ② 면접 능력, ③ 보고 능력의 3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365]

이때, ① 사례분석 능력이란 조사가설과 조사계획을 세우고, 면접 등을 통해 얻는 정보에서 당사자의 인격과 가족관계를 이해하여 비행 · 분쟁 · 법률요건 충족 등 사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② 면접 능력은 사례에 맞추어 도입을 적절히 설정하고, 당사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각 사안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는 기본 면접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에 설립한 조사가설과 조사계획에 맞추어 당사자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행동을 관찰하며 조사과정을 전개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분석 능력은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 면접 기법을 활용하여 당사자에게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한다. 조사관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마지막 능력인 ③ 보고 능력은 적정한 보고를 위해 표기방법, 형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서 일관되게 정리하고, 문제점을 이해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으로, 이러한 보고에는 논리적 전개와 문제 해결의 지침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조사관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법률, 인간관계과학 등의 전문적 지식과 함께 케이스워크 활동이나 심리검사를 활용할 능력을 요구하는데, 조사관은 이러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각 사안이나 국면의 전개에 따라서 그 능력을 적절히 발휘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366]

4. 채용시험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경우는 업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재판소직원채용종합직시험으로, 해당 시험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인문과학을 전공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62년부터 조사관 채용을 위한 시험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국가공

---

html) (2018. 6. 30. 최종확인).

365) 最高裁判所事務総局, 家庭裁判所調査官執務必携, 家裁裁判資料第185号 (2008), 176-192; 송현종(주 28), 13.

366) 最高裁判所事務総局(주 365), 176-192; 송현종(주 28), 13.

무원채용에 있어서 최상위 시험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채용 1급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1963년 채용시험은 기본 과목을 첫째, 심리학(A종), 둘째, 사회학(B종), 셋째, 사회복지학(B종), 넷째, 교육학(C종), 다섯째, 법률 · 행동과학(D종)의 5종류로 구분하고, 응시자에게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인간관계학 등에 기본적 소양을 지닌 인력을 다양하게 채용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대학원 졸업자(석사 등)와 대학 졸업자(학사 등)를 나누어 채용하고 있으며, 각 채용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시행된다. 대학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로 채용시험은 2원화되어 있으나, 시험의 구성이나, 배점, 과목명, 과목 수 등은 사실상 모두 동일하며, 대학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채용시험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채용시험은 아래의 '[표 9] 가정재판소 조사관 채용시험 과목'[367]과 같다.

[표9] 가정재판소 조사관 채용시험 과목

		대학원 졸업자		대학 졸업자	
	시험 과목	내용, 출제분야, 출제 수	배점	내용, 출제분야, 출제 수	배점
1차 시험	기초 시험 (선택형)	공무원 기초 능력 시험 지능분야 27문제, 지식분야 3문제	2/15	공무원 기초 능력 시험 지능분야 27문제, 지식분야 3문제	2/15
	필수 전문 지식 시험 (서술형)	15과목 중 3과목 선택		15과목 중 3과목 선택	
		[인간관계제과학과목] 사회학개론, 임상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학개론, 현대사회론, 사회조사법,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원조기술, 지역사회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3/15	[인간관계제과학과목] 사회학개론, 임상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학개론, 현대사회론, 사회조사법,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원조기술, 지역사회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3/15
		[법학과목] 헌법, 민법, 형법		[법학과목] 헌법, 민법, 형법	

367) 最高裁判所 平成29年度 裁判所職員採用試験受験案内 (http://www.courts.go.jp/saiyo/vcms_lf/H29XYCjyukenannai.pdf) (2018. 6. 30. 최종확인).

2차 시험	필수 전문 지식 시험 (서술형)	아래의 13과목(15문제) 중 2과목 선택			아래의 13과목(15문제) 중 2과목 선택		
		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가족사회학, 사회병리학, 사회복지원조기술, 아동복지학, 고령자복지론, 교육방법론,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각1	3/15	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가족사회학, 사회병리학, 사회복지원조기술, 아동복지학, 고령자복지론, 교육방법론,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각1	3/15
		민법, 형법	각1		민법, 형법	각1	
	정책 논문 시험 (서술형)	조직운영 과제를 이해하여 해결책 입안 능력 1 문제(필기시험)		1/15	조직운영 과제를 이해하여 해결책 입안 능력 1 문제(필기시험)		1/15
	인성 시험	인격, 자질 및 능력에 대한 집단 토론 및 개별 면접		6/15	인격, 자질 및 능력에 대한 집단 토론 및 개별 면접		6/15

‘[표 9] 가정재판소 조사관 채용시험 과목’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은 ‘기초시험’(2점)과 ‘필요전문지식시험’(3점)으로 구성되며, 1차 시험의 배점은 채용시험 총점 15점 중 5점에 해당한다. 1차 시험은 첫째, ‘공무원 기초능력시험’에 해당하는 기본시험으로서 지능분야 27문제와 지식분야 3문제로 총 30문제의 선택형시험에 해당한다. 필수전문지식시험의 경우 서술형으로 응시자가 15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15개의 과목은 12개의 인간관계제과학과목(사회학개론, 임상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학개론, 현대사회론, 사회조사법,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원조기술, 지역사회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과 3개의 법학과목(헌법, 민법, 형법)으로 구성된다.

채용시험 중 2차 시험의 경우 ‘필수전문지식시험’(3점), ‘정책논문시험’(1점) 및 ‘인성시험’(6점)의 3부분으로 구성되며, 채용시험 총점 15점 중 10점에 해당한다. 첫째, 필수전문지식시험의 경우 총 13개의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1차 시험의 필수전문지식시험의 경우에는 과목의 성격과는 관계없이 3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2차 시험의 필요지식전문시험의 경우에는 선택에 제한을 두고 있다. 11개의 인간관계제과학과목에 해당하는 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가족사회학, 사회병리학, 사회복지원조기술, 아동복지학, 고령자복지론, 교육방법론,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에서 1과목과, 2개의 법학과목인 민법과 형법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서술형에 해당한다. 둘째, 정책논문시험의 경우에는 조직운영 과제를 이해하여 해결책을 입안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시험으로 서술형이다. 셋째, 인성시험의 경우는

구술시험으로, 응시자의 인격, 자질 및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집단 토론과 개별적인 면접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 채용시험의 특징은 1차 시험의 선택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 논리적 서술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1차 및 2차의 기초시험이나 필수전문지식시험 등의 필기시험에 비해, 마지막에 구술시험 형식으로 실시되는 인성시험에 단일 시험으로는 가장 배점이 높은 6점을 두어 응시자의 인격, 자질 및 능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집단 토론이나 개별 면접을 통해 소통 능력까지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필수전문지식시험의 경우에는 법학 과목도 포함되어 있으나, 1차의 경우 15과목 중 12과목, 2차의 경우 13과목 중 11과목이 인간행동과학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자질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368]

Ⅳ. 가정재판소 조사관을 위한 연수

1. 개설

가정재판소 조사관 채용시험인 재판소직원채용종합직시험에 합격한 자는 조사관보로 채용되고,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에서 2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조사관에 임용될 수 있다(재판소법 제14조의2). 재판소직원채용종합직시험에 합격한 자는 국가공무원종합직시험채용자(国家公務員総合職試験採用者)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초임 연봉은 약 240,000엔(약 240만 원)이고,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약 213,000엔(약 215만원)이다.[369]

일본에서는 가정재판소 조사관을 통한 수준 높은 복지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관이 해당 채용시험을 통과한 후, 법률적 기초뿐만 아니라 인간행동과학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연수를 수료하도록 요구하고

368)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 채용시험에서는 서술형(논술식) 시험과 면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해당 시험의 경우 재판소직원총합연수소의 가정재판소 조사관 교관이 담당한다[송현종(주 28), 13]; 재판소직원총합연수소에서는 1년에 2회 '가재조사관연구개요'를 발행하여 조사업무에 관한 연구 논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가정재판소 월보'에도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369) 家裁調査官の仕事がわかる本(주 342), 47.

있다.[370] 따라서 재판소직원채용종합직시험에 합격한 조사관보는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에서 2년간 연수를 받는다.

해당 연수소는 1956년 가사심판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최초 가정재판소조사관연수소(家庭裁判所調査官研修所)라는 명칭으로 1957년에 설립되었고, 그 후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로 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계속 조사관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371] 일본 재판소법 제61조의3은 조사관보는 각 가정재판소에 소속되어 상사의 지휘 하에 조사관 사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2년 동안의 조사관보를 위한 연수를 이수하여 조사관이 된 후에는 각 가정재판소에 배치되어 주임조사관의 지도를 받으며, 개별적인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혼사건에서의 부부의 현재 상태에 대해 파악하거나,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이나 해당 가정의 실질적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 및 파악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된다.

조사관을 위한 연수는 그 성격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조사관보에 대한 신규 연수인 양성부 연수(2)와 둘째, 조사관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위한 실무연수, 전문연수 및 특별연수(3)이다.

2. 양성부 연수: 신규 연수

가. 개설

'[표 10] 가정재판소 조사관보를 위한 양성부 연수 기간'을 살펴보면, 약 2년 동안에 이론 교육과 실무 실습이 시행된다. 2년 동안의 연수 기간은 실무수습기간, 전기합동연수기간, 실무수습기간 및 후기합동연수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372]

370) 송현종(주 28), 16.
371) 大塚正之, "日本における家事事件の處理処理手續と裁判官・調査官・調整委員等の役割 −離婚及び子の監護を中心として−," 家族〈社会と法〉第21號 (2005), 122頁; 박주영(주 324), 133.
372) 家裁調査官の仕事がわかる本(주 342), 59−63.

[표10] 가정재판소 조사관보를 위한 양성부 연수 기간

연수기간 구분	기간(2년)	연수내용
실무수습기(豫修期)	3주	각 가정재판소 업무개관
전기합동연수기	3개월	조사업무 관련 기초적인 지식과 기법습득
실무수습기	13개월	각 가정재판소의 가사사건 · 소년사건 조사실무 수습
후기합동연수기	7개월	응용지식과 기법 습득

채용시험에 합격한 조사관보는 첫째, 채용시험에 합격한 조사관보는 우선 예수기(豫修期)라고 불리는 3주간의 실무수습기를 통하여 각 가정재판소의 업무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373] 둘째, 전기합동연수라고 불리는 3개월 동안 조사업무와 관련한 기초적 지식 및 기법을 배우게 된다.[374] 셋째, 다른 연수에 비해서 현저히 긴 13개월의 실무수습기를 통하여 가사사건 및 소년사건에 대한 조사실무수습을 하게 된다.[375] 넷째, 7개월의 후기합동연수 기간에는 13개월의 실무수습에서 경험한 사건을 직접 분석하고,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을 학습하게 된다.[376]

나. 조사관보를 위한 양성부 연수 과목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가족분쟁과 관련한 가사조사관으로서의 업무 및 소년비행과 관련한 소년조사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들 업무의 특성상 몇몇 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조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연수과목은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인간행동과학의 다양한 분야와 법학 과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 관련 분야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사관은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분쟁당사자나 비행소년 및 보호자 등과의 면접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과 배경, 비행의 동기와 소년의 성장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분쟁해결의 방법이나 소년의 갱생에 필요한 처우를 검토하여 재판관에게 보고한다. 이는 법률적인 해결뿐 아니라 분쟁이나 비행의 배후에 있는 인간관계 및 환경 등을 배려한 해결이 요구되는 가정재판소의 특징이므로 다른 재판과는 달리 다양한

373) 家裁調査官の仕事がわかる本(주 342), 60-61.
374) 家裁調査官の仕事がわかる本(주 342), 61.
375) 家裁調査官の仕事がわかる本(주 342), 61.
376) 家裁調査官の仕事がわかる本(주 342), 61-62.

연수교육을 통하여 조사관의 실력을 배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재판관으로 가정재판소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조사관과 같은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연수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론적 연수가 아닌 실질적 사례를 통한 체계적인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 11] 가정재판소 조사관보를 위한 양성부 연수프로그램'[377]을 보면, 재판소 직원총합연수소에서 제공하는 조사관보에 대한 연수는 전기와 후기 2단계로 구성되지만, 각 연수는 완전히 개별적인 연수과정으로 전기 연수와 후기 연수를 시작할 때 각기 입소식과 개시식을 하며, 연수를 수료할 때에도 개별적으로 수료식을 시행한다. 전기 연수가 보다 일반적인 과정이라면, 후기 연수는 심화학습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11] 가정재판소 조사관보를 위한 양성부 연수 프로그램

	전기 연수	후기 연수
제 도	재판소직원제도, 조사관 제도, 서기관 제도 등	조사관 윤리와 복무, 서기관 실무 등
법 률	법률의 기초, 헌법, 호적법, 가족법, 가사심판법, 형법, 소년법, 형사법정 방청	민법 · 가사심판법 연습, 인사소송법, 국제사법의 기본문제, 형법 · 소년법연습, 교통법규 등
관계과학	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 가족사회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정신의학, 인격이해, 가족이해, 비행이해, Case work, 심리검사 기초, 조사면접이론	유아기의 정신발달과 정신병리, 정신분석학개론, 성인 · 노인 정신병리, 인간이해와 행동요법, 청소년 정신발달과 정신장애, 아동기 정신장애와 정신발달, 현대가족, 자녀 학대, 범죄정신의학, 범죄사회학, 범죄와 교육, 가족의 구조와 발달, 투영법, 사회사업, 사이코드라마 등
조사실무	가사사건 조사실무, 소년사건 조사실무, 아동자립지원시설견학, 소년원견학	지도감독, 재판관이 본 조사실무, 관계기관의 실정, 수료논문 검토, 갑류 · 을류 사건조사, 문제별사건사례조사 등
실무연습	면접연습, 가사사례연구, 소년사례연구, 보고서 등 작성 연습	면접 · 심리테스트 기법연습, 문제별 사례연구, 보고서 등 작성연습
수료시험		필기시험(민법 · 가사심판법, 형사 · 소년법, 가사조사실무, 소년조사실무), 구술시험
기 타	입소식, 전기합동연수 수료식, 일반교양	개시식, 수료식, 그룹별 총합연습, 각종 교양강좌

377) '[표 3] 가정재판소 조사관보를 위한 양성부 연수 프로그램'은 2009년 양성부 연수 과정의 교과목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家裁調査官の仕事がわかる本(주 342), 65.

2018년을 기준으로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에는 총 16명의 조사관 출신의 교관을 통하여 조사실무에 관한 다양한 이론교육 및 실습형 체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교육은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수업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각의 교육과정(curriculum)은 재판실무의 표준적인 내용을 반영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연수기관에서 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 및 조직한 계획을 의미한다.[378]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직종을 초월한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상호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연수을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도 마련됨에 따라 연수기관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표 10] 가정재판소 조사관보를 위한 양성부 연수 기간'에서의 3주간의 실무수습기간과 3개월의 전기합동연수기간 동안에는 '[표 11] 가정재판소 조사관보를 위한 양성부 연수프로그램'의 전기 연수프로그램을 학습하게 되고, 13개월의 실무수습기간과 7개월의 후기합동연수기간 동안 후기 연수프로그램을 훈련하게 된다.

'[표 11] 가정재판소 조사관보를 위한 양성부 연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기 및 후기 연수의 구체적 연수과목은 다르지만, 연수분야의 경우 공통적으로 제도, 법률, 관계과학의 이론분야(1)와 조사실무 및 실무연습의 실무분야(2)로 구성된다. 그리고 양성부 전기 연수와 후기 연수를 완료하게 되면, 수료시험(3)을 통하여 전체 연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1) 이론연수

이론연수는 '제도', '법률' 및 '관계과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제도' 분야의 경우에 전기 연수에서는 재판소직원, 조사관, 서기관에 관한 제도에 대한 학습을 통해 법원 조직의 구성, 업무분장 및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후기 연수에서는 조사관 윤리와 복무 및 서기관 실무 등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둘째, '법률' 분야의 경우, 전기 연수에서는 법률의 기초, 헌법, 호적법, 가족법, 가사심판법, 형법, 소년법, 형사법정 방청과 같은 조사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법학 과목이 위주가 되며, 후기 연수에서는 민법 · 가사심판법 연습, 형법 · 소년법 연습과 같이 전기 연수에서 학습한 법학에 대한 심화 교육으로서의 연습 과목과 인사소송법, 국제사법의 기본문제, 교통법규 등의 및 특별법을 별도로 학습하게 된다.

---

378) 송현종(주 28), 17.

셋째, '관계과학' 분야의 경우, 전기 연수에서는 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 가족사회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정신의학, 인격이해, 가족이해, 비행이해, Case work, 심리검사 기초, 조사면접이론 등의 조사과정에 필요한 심리학의 기본적 이론 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후기 연수의 과목은 그 성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① 유아기의 정신발달과 정신병리, 정신분석학개론, 성인 · 노인 정신병리, 인간이해와 행동요법, 청소년 정신발달과 정신장애, 아동기 정신장애와 정신발달과 같은 심화된 심리학 이론 과목, ② 자녀 학대, 범죄정신의학, 범죄사회학, 범죄와 교육, 사이코드라마와 같은 정신의학 및 범죄학 과목, ③ 가족의 구조와 발달, 투영법, 현대가족, 사회사업 등과 같은 사회학 관련 과목으로 구성된다.

(2) 실무연수

실무연수는 '조사실무' 및 '실무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조사실무' 분야의 전기 연수에서는 가사사건 조사실무, 소년사건 조사실무, 아동자립지원시설 견학, 소년원 견학을 통해 조사관이 가정재판소, 아동시설 및 소년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살펴보게 되며, 후기 연수의 재판관이 본 조사실무, 관계기관의 실정, 논문 검토, 갑류 · 을류 사건조사,[379] 문제별 사건 사례조사 등을 통해 실제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 문서 작업을 포함하는 조사업무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둘째, '실무연습' 분야의 전기 연수에서는 면접연습, 가사사례연구, 소년사례연구, 보고서 등의 작성 연습을 통해 실제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면접이나 다양한 사례를 연습하고, 해당 연습에 대한 내용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그리고 후기 연수에서 면접 · 심리 테스트 기법 연습, 문제별 사례연구, 보고서 등의 작성 연습을 통해 전기 연수에 대한 심화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후기 연수 기간에는 실무 수습에서 경험한 사건을 직접 분석하며, 이론과 지식을 체득하게 된다.

(3) 수료시험

전기와 후기의 연수 프로그램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은 후기에만 있는 수료

379) 일반적으로 갑류심판사건(금치산선고 및 취소, 준금치산자의 선고 및 취소 기타 준금치산에 관한 처분, 실종 선고 및 취소 등)은 법률요건에 따른 객관적 사실의 보고가 중심이고, 을류심판사건(자의 감호자 지정 기타 감호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친권자 지정에 관한 처분, 유산분할에 관한 처분 등)에서는 법률요건에 따른 객관적 사실과, 미성년자의 관계인의 의지, 성격, 생활력 등에 대한 주관적 사실이 중심이 된다.

시험으로 이는 2년간의 연수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 수료시험은 크게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된다.

필기시험은 양성부 수료 이후 조사관으로서 실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필기시험 과목은 민법 · 가사심판법, 형사 · 소년법, 가사조사실무, 소년조사실무의 4과목으로, 양성부 연수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총체적 평가로 이해된다.

해당 필기시험은 과목의 성격에 따라 민법 · 가사심판법 및 형사 · 소년법의 법학 2과목과 가사조사실무 및 소년조사실무의 조사실무 2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가사조사관 업무와 관련 있는 민법 · 가사심판법 및 가사조사실무 2과목과 소년조사관 업무와 관련 있는 형사 · 소년법 및 소년조사실무의 2과목으로 나눌 수도 있다.

그리고 구술시험을 통해 조사실무 및 실무연습을 통해 학습한 실무적 내용을 평가하게 된다.

3. 실무연수 · 전문연수 및 특별연수: 지속적 연수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에 대한 교육은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에서 2년의 양성부 연수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수료 후 4년 차에 실시하는 2주 동안의 실무연수(가)와 4년 차인 실무연수 수료 후 7년 차에 실시하는 전문연수(나) 등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380] 그리고 전문적 또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인 특별연수(다)는 연차와 관계없이 이수가 가능하다.

가. 실무연수: 4년차

양성부 연수를 수료한 후 약 4년 차가 된 조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실무연수로서, 약 2주(16일) 동안 실시된다. 실무연수의 과정은 중견 조사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수프로그램은 실무경험을 기초로 구성될 뿐 아니라, 사건처리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법이 포함된다.[381]

특히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4년 차의 중견 조사관의 사례를 정리하여 외부의

380) 廣井亮一, 司法臨床の方法, 金剛出版 (2007), 3-29; 송현종 · 조소연 · 노혜련(주 6), 7.
381) 송현종(주 28), 15-16.

전문가들과 함께 사례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인간관계학의 최신정보뿐 아니라 개정 법률에 대한 강의 및 직무토의도 함께 진행된다.

나. 전문연수: 7년차

전문연수는 양성부 연수 수료 4년 차인 조사관이 실무연수를 수료한 후 다시 몇 년 후에 7년차 조사관을 대상으로 2주간(16일) 정도 실시된다. 전문연수과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법을 조사실무에 실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과목과 조사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과목으로 구성된다.[382]

다. 특별연수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양성부 연수 수료 이후 4년차에 이수해야 하는 실무연수와 7년차에 이수해야 하는 전문연수 외에 조사관 실무에서 발생한 문제의 처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관련 과목에 대한 집중적 연수 프로그램인 특별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관을 위한 '특별연수' 프로그램은 가사사건 특별연수, 소년사건 특별연수, 정보처리 연수, 심리테스트 특별연수, 면접기법 특별연수 등으로 구성된다. 각 가정재판소에서는 조사관이 이러한 특별연수 과정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한다.[383]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에 대한 '관리자 연수'는 일반 조사관에 대한 연수와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수석 · 차석 · 주임 조사관에 따라 직급별 연수가 실시된다. 특히 주임조사관 연수의 경우에는 조사관 및 조사관보에 대한 지도감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중견 조사관인 주임조사관은 고등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위탁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연수 이외에도 기관 내 연수나 학회의 참석을 포함하여 해외연수 등이 있다. 반대로 외부기관 주도로 수행되는 기관 외의 연수인 '관계기관 특별연수'를 통하여 아동상담소, 사회복지협의회, 소년원 등에서 약 6개월 동안 파견연구 방식의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382) 송현종(주 28), 16.
383) 송현종(주 28), 16.

V.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직무

1. 조사 방법

가사사건절차법, 인사소송법 및 소년법이 규율하는 조사관의 직무는 그 성격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주임조사관을 조장으로 3인 1조로 재판부에 배치되어 통상 가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일반조사가 있다. 둘째, 심리검사와 같은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당사자의 건강과 정신,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과학조사가 있다. 셋째, 당사자가 처해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조정 및 조언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조사가 있다. 넷째, 법원의 강제집행 전, 의무이행자의 이행상황과 사정을 점검하여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하는 역할수행을 위한 이행조사가 있다. 다섯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후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재산상태와 적절한 후견인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는 후견조사가 있다.

2. 직무 범위

가정재판소는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가사사건절차법 제58조 제1항),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가정재판소의 조사관은 가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의 조정, 심판 및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및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재판소법 제61조의2 제2항). 구체적으로는 조사관은 가사심판사건과 가사조정사건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그밖에도 가사심판 및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도 한다(가사사건절차법 제58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또한 관계인의 환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관과 연락을 취할 수도 있다(가사사건절차법 제59조 제3항). 그밖에 이행확보에 관한 사무(가사사건절차법 제289조 및 제290조)와 후견감독에 관한사무(가사사건절차법 제124조) 등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조사관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은 가사사건절차법, 인사소송법 및 소년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우선, 가사사건절차법에서는 가정에 관한 사건의 심리(가사심판) 및 조정(가사조정)에 필요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실의 조사(동법 제58조, 제258조 및 제261조), 둘째, 심판 또는 조정 기일에의 출석, 의견진술(동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제258조), 셋째,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 조정조치(동법 제59조 제3항, 제258조 및 제261조), 넷째, 자녀의 의사 파악 등(동법 제65조 및 제258조), 다섯째, 성년후견, 보좌, 보조, 미성년후견의 사무의 감독(동법 제124조 제3항, 제133조, 제142조 및 제180조), 여섯째, 임의후견감독인의 사무의 조사(동법 제224조), 일곱째, 심판 또는 조정에서 정해진 의무의 이행상황의 조사 및 이행의 권고(동법 제289조 제3항).

그리고 인사소송법은 2003년에 제정되고 2004년부터 시행되면서 인사소송이 가정재판소의 관할이 되었다.[384] 이에 따라 인사소송의 제1심 재판인 부대처분에 관한 재판(인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재판(동법 제32조 제3항)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의 조사(동법 제34조)와 재판에서 정해진 의무의 이행상황조사와 이행권고(동법 제38조 제3항) 등이 조사관의 업무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년법이 정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조사로는 첫째, 사건의 조사(동법 제8조 제2항), 둘째, 심판에 첨부할 소년의 보고 및 보고전조사(동법 제7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10조), 셋째, 사건의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동법 제9조의2), 넷째, 동행장(同行状)의 집행(동법 제13조 제1항), 다섯째, 조사관에 의한 관호조치(동법 제17조 제1항), 여섯째, 조사관에 의한 관찰(동법 제25조: 시험관찰), 일곱째, 결정의 집행(동법 제26조 제1항), 여덟째, 심판의 출석 및 의견진술(동법 규칙 제28조)이 포함된다.

3. 직무의 내용

최근 가족의 분쟁과 소년의 비행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표면적 현상이나 결과를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가정재판소의 분쟁에서 인간과 사회행동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독자적 관점을 가진 조사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사실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이 1951년 제도의

384) 2004년의 4월부터 시행된 인사소송법의 친권자의 지정 등 자녀의 복리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 조사관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되었다[濱野昌彦, “親権・監護権紛争における家庭裁判所調査官の役割”, 法律時報 第81巻 第2號 (2009. 2.) 23頁].

도입 당시부터 현재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음을 [표 12]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업무 추이 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385]

[표12]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업무 추이 변화

시기	업무 범위
가사조사관 태동기 (1950년대 초반)	▷ 1951년 가사조사관 탄생 · 입법론자 : 미국 Case-Worker, Probation-Officer 기대 · 일선 실무자(재판관) 재판보조 인력기대 → 실무에서의 역할갈등 · 사실조사만 담당 · 부분조사사항 지정하여 조사명령 · 객관적 · 법률적 조사 중심(사실조사의 성격을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석, 갑류 비송 사건 중심) · 소년사건의 '사회적 조사'와 대비 가사사건 사실조사에 대한 문제제기, 연구 · 격론 ▷ 1954년 가사조사관과 소년조사관 → 가정재판소조사관으로 일원화
조사활동의 다양화 (1950년대 후반)	▷ 1956년 가사소송규칙 개정 과학적 조사 규정, 이행조사·권고, 조정조치, 후견감독 규정 · 1955년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전공자 채용 · 동경, 오오사카 가정재판소조사관의 시도와 연구발표 ▷ 1957년 가정재판소조사관연수소 창립 · 사전포괄조사, 인테이크 조사, 가사상담 정착 · 가사조정사건 중심 사실조사 실시 정착 ·「사실조사론」: 사법적 기능 내에서의 케이스워커의 역할, 사회적 조사로 성격 변화 연구, 논의, 정착 · 가사조정관여 : 사실조사, 조정기일 출석, 의견진술, 조정조치 ▷ 과제: ① 각 가정재판소의 서비스 불균등, ② 조사관 역할 기능의 혼란
조정활동 · 관여기준 (1970년대 이후)	▷ 1974년 사무국장 통달 "조정의 운영에 대하여" · 1971년 임시조정제도심의회답신 '調整활동 별도의 규정 설치' 권고 · 위 통달에서 심리적 조정조치를 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명문화 → 카운슬링의 정립 · 사법적 기능에 있어서 케이스워커 역할의 역할 논의·확립 · 이혼사건의 자녀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및 조사방법론의 활성화

이하에서는 가사계 조사관의 직무(가)와 소년계 조사관의 직무(나)를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385) 斎藤正人, "家事係家庭裁判所調査官活動の歴史的推移", 家庭裁判月報 第40巻 第4號 (1988);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91.

가. 가사계 조사관의 직무

조사관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조사관의 직무범위를 첫째, 가사절차안내(1), 둘째, 조사관의 개입 여부 판단 및 절차선별(2), 셋째, 사실조사(3), 넷째, 조정 및 원조(4), 다섯째, 기일 출석 · 의견 진술과 이행확보를 위한 사무(5)로 역할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386]

(1) 가사절차안내

조사관은 가사사건의 접수 전에 이에 관한 가사절차안내를 한다. 가사절차안내라는 명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사용되었고, 그 전에는 가사상담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387] 가사상담제도는 가정재판소 창설 당시에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정재판소에서는 사건의 접수 전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물론 가사절차안내가 조사관의 주요 업무로 볼 수는 없지만, 공신력, 중립성, 서비스의 책임감 등의 이유로 주로 법원직원인 재판소의 서기관, 사무관 및 조사관 등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388] 특히 상담업무의 충실을 기하여 위하여 가사절차안내에 경험이 많은 조사관을 참여시키고 있다.[389]

예전과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절차안내는 지금도 여전히 가정재판소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고 있다.[390] 구체적으로는 가사절차안내를 받은 경우의 약 25% 이상이 ① 실체법의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스스로 잘못 생각한 것을 깨닫거나,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결심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사건 접수 자체를 재고하는 경우, ② 상담내용의 성질상 가정재판소가 아닌 다른 기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적절한 기관을 소개받아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타남에 따라 궁극적으로 사건이 선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91]

---

386) 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 家庭事件調査実務入門 (再訂版), 研修教材 第27号 (2007), 1-2; 송현종 · 조소연 · 노혜련(주 6), 7.

387) 가사상담이라는 명칭은 재판소 외부의 심리, 신상(身上) 상담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송현종, "가정법원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가사조사관의 직무와 맞춤형 사례관리의 소개를 중심으로-",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2013), 34].

388) 일반적으로 가사상담은 접수사무의 일환 내지 그 연장선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재판소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담당해왔으며, 외부 전문가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389) 송현종(주 387), 35.

390) 最高裁判所事務総局, 家事相談の手引, 家庭裁判資料 第170號 (1997), 1-3.

391) 가사절차안내에서는 상담실에 민간상담기관 · 단체 등 자료집을 비치하여 법원외부의 사회복지기관을 소개

(2) 조사관의 개입 여부 판단 및 절차 선별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차석조사관, 총괄 또는 주임조사관은 해당 사건에 조사관이 관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판단하고(가), 어떤 절차가 적합할지를 선별하는(나) 업무를 하게 된다.

(가) 조사관의 개입이 필요한 사건

각 가정재판소에서는 가사사건처리요령 중 '조사관의 조사업무관여기준'을 설정하여 조직적, 능률적, 체계적인 조사업무를 도모하고 있다. '조사관의 조사업무관여기준'에 따르면, 가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에서 조사관의 개입이 필요한 사건은, ① 당사자가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병원 입원 등으로 출두를 거부 · 회피하여 당사자의 출석확보가 곤란한 사건, ② 신청서의 기록만으로는 그 진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 ③ 당사자의 성격 · 행동 등에 문제가 있거나 정서적인 혼란 · 폭력 · 자살 위험과 같이 심신상황 및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건, ④ 낭비 · 태만 · 폭력 · 성문제 ·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등 의학 · 심리학 등 전문적 지식을 통한 조사와 진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나) 절차선별

절차의 선별은 사건 접수 초기에 적정한 절차와 필요한 서비스 개입을 계획하고, 사건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 절차 진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절차선별을 담당하는 조사관은 기록정서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그림 2] 절차선별표'를 작성하고 가사심판관에게 보고한다.[392]

예컨대, 도쿄 가정재판소에서는 기록정서만으로는 절차선별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워 당사자 등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가정폭력 정도, 자녀의 현황, 당사자의 정신적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절차선별에 활용하고 있다.[393]

할 때 참조하고 있다. 이때,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무소, 아동상담소, 부인상담소, 지역 상담실, 사회복지종합센터,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상담소, 장애인갱생상담소, 보건소, 청소년 상담실, 교육위원회, 변호사회 법률상담센터, 지방법무국인권위원회, 지방법무국 등기소, 공공직업안내소, 각 대학 사회복지 · 가정복지 상담실, 민간상담기관, 외국인 상담기관이 있다[家庭裁判所調査官研修所, 家事事件の調査方法について(下卷), 東京: 家庭裁判所調査官研修所 (1991), 523-532; 裁判所職員總合研修所, 家庭事件調査實務入門(再訂版) 研修教材 第27號 (2007), 1-2]; 송현종, "가정법원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가사조사관의 직무와 맞춤형 사례관리의 소개를 중심으로-,"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2013), 35.

392) 송현종(주 391), 35-36.

[그림2] 절차선별표 예시

<table>
<tr><td colspan="4">절차선별표</td><td>조사관인</td></tr>
<tr><td colspan="4">사건번호</td><td></td></tr>
<tr><td>관련사건</td><td>유
무</td><td colspan="2">사건번호</td><td>선별연월일</td></tr>
<tr><td rowspan="2">선
별
의
견</td><td colspan="3">○ 심판선행상당
○ 조정회부상당
○ 조정선행상당
○ 이송·회부상당

○ 기일출석상당
○ 사건조사상당
□ 포괄
□ 부분 ( )
□ 과학조사관실
□ 의무실기관
□ 카운슬링조사관실
○ 기타 ( )

[이유]
□ 출석곤란 원격지·입원·질환·노령·신병구속
□ 긴급사정 자의감호·생활사정·심신상태·
관련기관과의 연락조정
□ 당사자문제 폭력·성격편향·정신장애·정서혼란
□ 기타 ( )</td><td>○ 요주의사건(A, B, C)

○ 의무실기관관여
필요검토
○ 진행중관여필요검토</td></tr>
<tr><td>특
기
사
항</td><td></td></tr>
<tr><td rowspan="3">가
사
심
판
관

조
치</td><td colspan="2" rowspan="3">○ 선별의견과 같이

○ 아래와 같이 지시한다.
□ 심판선행
□ 조정회부
□ 조정선행
□ 이송·회부
□ 기일출석
□ 사전조사
□ 기타 ( )</td><td>○ 요주의사건(A, B, C)</td><td>가사심판관인</td></tr>
<tr><td rowspan="2">[지시 또는 연락사항]</td><td></td></tr>
<tr><td>연 월 일
. .</td></tr>
</table>

(3) 사실조사

(가) 사실조사의 의의

가정재판소의 사건은 부부와 자녀 등의 인간관계나 성격, 생활환경 등의 문제가 복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재판소가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393) 裁判所職員總合研修所(주 391), 48.

는 광범위한 사회조사(social study)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가사사건에서는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소년사건에서는 비행사실, 소년의 인격, 생활사, 가정환경, 학교, 직업관계, 교우관계, 지역사회 환경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다.[394]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관의 전문성이 가지는 의의는 조사사항인 사실인정을 위하여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재판소의 재판관이 사건과 관련하여 항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이 직접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심판, 소송절차 과정에서 인접학문의 지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사관이 관여하게 된다.[395] 따라서 이러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 다양한 인관관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과학적 보조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조사관의 역량이 필요하게 된다.[396]

(나) 사실조사 방법

가정재판소는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명할 수 있는데(가사사건절차법 제58조 제1항), 조사관의 사실조사는 조사 사항이 된 사실의 존부와 관련된 사실을 수집하고, 수집된 각 자료로부터 조사사항이 되었던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판관 등에게 보고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성격, 경력, 생활상황, 재산상태 및 가정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의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사사건절차규칙 제44조)를 부담하게 된다.

조사관은 심층적 면접조사 이외에도, 가정, 학교, 유치원 방문 등의 출장조사(자녀문제와 관련된 사건에서 적극 활용), 각종 심리검사, 직접관찰, 사실조회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한다. 예컨대, 가정재판소에서 실시하는 사실조사방법에는 재판관이 미성년 자녀를 직접 면접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로 아동의 진술뿐이다. 특히 연령이 낮은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조사의 경우에는 아동심리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사관을 통하여 적절한 면접기법

394)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90.
395) 大塚正之(주 371), 122頁; 박주영(주 324), 135-136.
396) 박주영(주 324), 134.

을 선택하거나, 심리테스트 등의 보조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아동의 내면을 파악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397]

(다) 사실조사의 범위

조사관은 가사사건의 사실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의향 파악, 자녀의 생활상태 조사, 자녀의 의향 확인, 면접교섭 시행 원조, 친권자 및 감호자(양육자)의 적격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혼인관계사건 이외에도 양자관계 허가, 후견인 선임, 부양사건, 실종선고 등에서도 사실조사가 이루어진다.

2004년 4월부터 개정 인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인사소송이 가정재판소의 관할이 되었고, 재판관은 친권자의 지정이나 부대처분의 사실조사를 가사조사관에게 명할 수 있게 되었다(인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398] 이에 따라 최근 이혼소송에서 친권자의 지정 및 자녀의 복리에 직접 관련된 사항 및 자의 감호에 관한 처분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조사관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되었다.[399] 인사소송에서 조사관 사실조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부모), 당사자간의 미성년자, 감호보조자(당사자의 친족 등), 관계기관(유치원, 보육원, 학교, 아동상담소 등)의 담당자이다. 그러나 인사소송의 사실조사의 결과는 이혼의 원인판단에 있어서 활용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조사관이 자의 감호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 당사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진술하더라도 이는 이혼의 원인 유무를 판단하는 소송자료 또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400]

또한 최근에는 조사관의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관련 사건에 대한 역할 비중이 커지고 있다. 조사관은 사실조사 초기단계부터 '향후 면접교섭을 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라는 면접교섭지침을 활용하여 당사자를 교육하기도 하고, 면접교섭의 시범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면접교섭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시범적으로 가정재판소에 설치된 아동실에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397) 松原正明, "我が國の家事調整制度の基本構造," 九州大學 法廷学会 法廷研究 第79卷 第3號 (2012. 12.), 568頁; 박주영(주 324), 142.

398) 판사는 심리의 경과, 증거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조사관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고(통상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명령하고 구두변론 기일 사이에 시행), 조사명령은 사안에 따른 조사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다(인사소송법 제20조 제2항).

399) 인사소송법에서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濱野昌彦(주 384) 23頁].

400) 野田愛子 · 安部嘉人 監修, 人事訴訟法解說, 東京: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2004), 17.

그리고 최고재판소에서는 부모의 이혼위기에 처한 아동의 심리, 신체적 특성과 어려움, 면접교섭 등을 교육할 수 있는 DVD를 제작하여 가사조정 대기소에서 시청하도록 하고 있다.[401]

(라)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사실조사의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가정재판소에 보고하며(가사사건절차법 제58조 제3항),[402] 조사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의견을 붙일 수 있다(동조 제4항).

조사관은 사실조사의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내린 가정재판소에 이를 제출하게 되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조사관의 의견이 첨부될 수 있다. 조사관의 의견은 수집된 자료를 통해 조사사항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조사활동으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가치에 관한 의견이 된다. 조사보고서에 의견을 첨부할지 여부는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의 재량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사관이 의견을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관이 조사관의 의견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403]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① 실종선고사건 조사보고서, ② 양자 결연(緣組)허가사건 조사보고서, ③ 후견인 선정사건 조사보고서, ④ 혼인비용 분담사건 조사보고서, ⑤ 재산분할사건 조사보고서, ⑥ 친권자변경사건 조사보고서, ⑦ 양육비청구사건 조사보고서, ⑧ 부양사건 조사보고서, ⑨ 유산분할사건 조사보고서, ⑩ 부부관계 조정사건 조사보고서, ⑪ 조정기일 출석보고서의 11종의 사건별 조사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다.[404]

조사관이 조사과정 중에 획득한 증거자료로부터 어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실인정에 관한 경험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민사

401) 해당 DVD의 시청은 조사관의 조정기일 사이에 이루어진다[윤승은 · 최창훈 · 송현종(주 334); 송현종(주 391), 37].

402) 조사관은 사실조사의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재판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가사사건절차법 제58조 제3항 및 인사소송법 제34조 제3항). 이때, 구두로 보고하는 것은 예정된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하며, 통상적으로는 '조사보고서'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내린 재판소에 제출하게 된다. 조사결과를 보고할 때 조사관은 자신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는데(가사사건절차법 제58조 제4항 및 인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이러한 경우에도 조사관의 전문성이 전제가 된다[박주영(주 324), 142].

403) 만약 부분조사명령이 내려진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관이 전체 사안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분조사에서도 조사관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에 관하여 의견을 기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松原正明(주 397), 14頁; 박주영(주 324), 143-144].

404) 最高裁判所事務總局, 家事事件定型調査報告書の作成要領, 家庭裁判資料第 第168號 (1996), 7-52.

분쟁에서의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하는 경험법칙과는 다르며, 조사관이 가지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405] 실제로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조사관의 의견은 신뢰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관의 사실조사는 실제로 감정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406]

그러나 사실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자료는 심리판단의 기초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원인이나 위자료의 산정 등과 같은 소송사항에 관한 판단자료는 될 수 없다. 이는 이론적으로 사실조사는 가사사건절차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자료도 본래 가사사건절차에서 심리하고 판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각 사안의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음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소송자료가 될 수는 없다.[407]

(마) 조사보고서의 공개

소송기록 중 사실에 관한 조사, 즉 사실조사부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1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혹은 등사, 그 정본, 등본 혹은 초본의 교부 또는 그 복제의 청구는 재판소가 허가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인사소송법 제35조 제1항)[408]고 규정하여 사실조사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가정재판소가 이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부분의 열람 등을 허가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사실조사부분 중 열람 등을 허가하는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인사소송규칙 제25조).

(4) 조정 · 원조

가정재판소 조사관이 수행하는 조정 · 원조의 기능이란 가족분쟁이나 비행의 원인이 되는 인간관계를 조정하고 감정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마련하거나, 소년이 건전한

405) 松原正明, “我が國の家事調整制度の基本構造,” 九州大學 法廷学会 法廷研究 第79卷 第3號 (2012. 12.), 568頁; 경험칙은 일반적으로는 경험으로부터 귀납되는 사실에 관한 지식이나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민사분쟁에서의 경험칙은 경제활동에서 사람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

406) 松原正明(주 405), 564頁.

407) 만약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소송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실의 소송결과의 보고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서증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松原正明(주 397), 12頁]. 다시 말해, 부대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사실조사의 결과가 심리판단의 자료가 되는데 반하여, 소송사항에 관해서는 사실조사의 결과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재한 서증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박주영(주 324), 142].

408) 인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소가 허가한 때는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한다.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교육적 개입의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 및 원조를 위한 조치는 가사사건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의 연락 · 조언 및 조정 조치(1)와 소년사건에서 보호자에 관한 지도, 사회봉사활동과 가족 캠프 시행과 같은 보호적 조치와 시험관찰(2)을 들 수 있다.[409]

(가) 연락 · 조언 및 조정 조치

가정재판소는 창설 초기부터 가사분쟁 및 소년비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많은 공사기관과 연계해 왔는데, 가정재판소의 수석조사관은 사회기관과의 연락 및 조정 의무를 진다(수석가정재판소 조사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항).

가정재판소는 매년 1회나 2회로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협의회를 개최하고, 조사관 등이 사회복지관련 회의나 학회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외부기관과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경가정재판소와 같이 규모가 큰 가정재판소에서는 기획조사관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외부기관의 발굴 및 이에 대한 감독 업무를 보좌토록 하고 있다. 가정재판소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생활보호관계, 모자복지관계, 아동복지관계, 노인복지관계, 정신장애관계, 지체장애 관계, 양자 조직 및 국제사회사업단체, 전문상담기관 등이 있다.[410]

가정재판소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조사관에게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사건절차법 제59조 제3항 및 제261조 제5항). 조사관이 조정 조치를 실행하는 방법은 첫째,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조정, 둘째, 조언 · 원조, 셋째, 심리적 조정 조치가 있다.[411]

첫째,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조정은 사회복지기관의 원조나 협력이 필요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재판소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분담이라는 입장에서 시행하는 조정 조치를 가리킨다. 해당 조정 조치는 신청인이 당장의 생활상태가 곤란하여 생활보장법에 의한 잠정적인 보호 구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사건본인이 정신장애를 일으켜 가족이나 주변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활용된다. 둘째, 조언 · 원조활동이란 당사자가 인간관계 또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조언을 하거나 원조하는 조정 조치이다. 셋째, 심

409) 廣井亮一(주 380), 3 이하; 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주 386), 1-27; 송현종 · 조소연 · 노혜련(주 6), 7-8.
410) 家庭裁判所調査官研修所(주 391), 523-532; 송현종(주 391), 38.
411) 最高裁判所事務總局, 家庭裁判所調査官執務必携, 家裁裁判資料 第185號 (2008), 29-30; 송현종(주 391), 38.

리적 조정 조치는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감정의 갈등이 심한 당사자에게 정서를 완화시켜 주고 감정을 진정시켜 이성적인 상태로 조정이나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이다.

(나) 보호적 조치와 시험관찰

① 보호적 조치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요보호성을 파악할 뿐 아니라, 소년이나 보호자를 상담 · 지도하거나 학교 기타 관계기관에 협력을 구해 재비행을 예방하는 '보호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412]

조사관이 시행하는 보호적 조치에는 소년과 보호자의 개별상담, 약물 · 성 집단교육, 사회봉사, 가족 캠프, 피해자를 생각하는 교육 등이 있다. 특히 피해자를 생각하는 교육은 가정재판소에 소년비행 피해자를 초청해 소년과 보호자에게 피해자의 심정 등을 설명하는 강좌이다.

② 시험관찰

소년사건의 경우에 조사관은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유보한 채 소년을 관찰하는 중간 처분적 성격의 시험관찰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시험관찰을 통해 가정재판소는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에 따라 상당 기간 조사관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소년법 제25조). 결국 시험관찰은 조사결과를 보강 · 수정함과 동시에 종국처분을 유보하고 소년에게 교육적 개입을 통해 시행된다.[413]

시험관찰의 종류에는 첫째, 크게 소년의 신병을 보호자에게 맡기고 조사관이 직접 관찰하고 개입하는 재택시험관찰, 둘째, 담당 조사관의 관찰과 더불어 시설 ·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해 개입하는 보도위탁, 셋째, 최근의 사회봉사, 부모 자녀 합숙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분류된다. 그리고 최근 소년법에 피해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조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대처가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배려 제도는 살인 등 일정한 중대사건 피해자 심판 방청의 허가(소년법 제22조의4), 피

412) 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주 386), 180-181; 송현종 · 노혜련, "가정법원 소년조사관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소년정책학회 제20호 (2012), 315.

413) 最高裁判所事務総局, 家庭裁判所調査官執務必携, 家裁裁判資料 第185号 (2008), 35頁; 송현종 · 노혜련 (주 412), 315.

해자에게 심판 상황 등 설명(동법 제22조의6), 피해자 기록의 열람 · 복사(동법 제5조의2), 피해자로부터의 의견청취(동법 제9조의2)제도가 있다.

그리고 조사관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에 관한 심정 등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는 신청이 있을 때 명령을 받아 그 의견을 청취해 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소년심판규칙 제13의4 및 제13의6 Ⅱ).

(5) 기일 출석 · 의견 진술과 이행확보를 위한 사무

(가) 기일 출석 및 의견 진술

가정재판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판 또는 조정기일에 조사관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전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한 조사관에게 의견을 진술시킬 수 있다(가사사건절차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조사관에 대한 출석 및 진술은 매우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14]

조정기일에 출석한 조사관은 단순히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해결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조사관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조사 및 조정 명령의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 가사조정위원회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 등에 관한 결과보고, 조정장면의 관찰, 당사자에 대한 조언 및 원조,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진행 또는 사건처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이다.[415]

(나) 이행상태의 조사 또는 이행권고

가정재판소는 조사관에게 이행상태의 조사 또는 이행권고를 명할 수 있다(가사사건절차법 제289조 제3항). 또한 가정재판소는 인사소송의 부대처분 등 재판으로 정해진 의무에 대하여 조사관에게 조사 또는 이행권고를 시킬 수 있다(인사소송법 제38조). 이 때 이행권고는 가사사건의 재판이나 조정의 결과로 생긴 권리의무관계가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정재판소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국의 가정재판소에서는 매년 약 14,000건 정도의 이행권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416]

---

414) 송현종(주 391), 38-39.
415) 송현종(주 391), 38-39.
416) 이행권고 중에서 약 50% 내외의 사건이 전부이행 및 일부이행을 포함한 이행 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승은 · 최창훈 · 송현종, "일본 가정재판소 출장보고", 외국의 가사 · 소년 재판제도 세미나 회의자료(미간행),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2006)]; 송현종(주 391), 38-39.

(6) 성년후견 사무

가정재판소는 후견개시, 보좌 개시, 보조개시와 같은 성년후견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때에는 피후견인인 될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는데(가사사건절차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재판관이나 조사관이 모든 경우에 당사자인 본인을 면접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다.[417] 가사심판규칙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 조사관이 본인을 직접 만나 청취하고 동의에 대한 확인도 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관이 본인의 의견 조사를 위하여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418]

조사관의 진술청취 및 동의확인 조사에서 신청인 또는 성년후견인 후보자와의 면접을 통한 사안의 파악, 본인의 재산상태 파악, 분쟁원인의 파악, 성년후견인 등 후보자의 적격성 파악, 대리권 또는 동의권 내용의 검토 등이 이루어진다. 조사보고의 내용과 형식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419] 조사보고내용에는 당사자의 진술청취 내용은 당사자의 정신능력을 판단하고, 성년후견후보자의 생활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등에 간략하게 보고하는 방안 등이 있다.

성년후견 등의 감독에 있어서도 서류검사 후에 친족 사이의 분쟁가능성이 높거나, 친족과 후견인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하여 오해가 발생 한 사건, 후견인의 권한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관은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동경가정재판소에서는 13층에 후견센터를 개설하여 재판관, 서기관, 조사관 30여명 및 참여원 36명이 성년후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420]

최근 성년후견사건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재판소 조사관을 증원하지 않고 있는데, 가사사건은 성년후견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소년사건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421] 구체적으로는 소년사건이 가장 많았던 1983년에 비하여 2014년 신규 소년사건은 약 6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고, 가사 및 소년사건 전체를 합해도 2014년 신규 건수는 1984년에 비하여 약 7만 건 정도 감소했다.[422]

---

417) 재판관 또는 조사관이 성년후견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가정재판소 직무태세, 무리한 심판이 본인에게 줄 악영향이 있어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았다고 한다[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98].
418)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98.
419)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98.
420) 東京家庭裁判所 (2002);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98.
421) 日本 最高裁判所(주 350), 65頁.

나. 소년계 조사관의 직무

(1) 조사

일본에서는 소년사건의 경우 법원선의주의(전건송치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사전치주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모든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소년감별소에 위탁된 사건도 조사관이 종합하여 보고하게 된다. 조사관은 면접조사 이외에 출장조사, 심리검사, 조회조사 등의 조사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조사관이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대상은 비행의 사실, 소년의 인격이해, 생활사, 가정환경, 학교, 직업관계, 교우관계, 지역 환경 등이다.

(2) 보호자에 대한 조치

일본에서 소년법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비행소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재판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자에 대하여 소년의 감호에 관한 책임을 자각시키고 그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심판에서 직접 훈계, 지도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조사관에게 명하여 이들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방법으로는 문제점 지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 및 방법 교육하는 훈계 · 지도, 부모관계 조정, 경청, 공감, 수용 등을 통한 감호능력 향상,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참여 동기화가 있다. 최근에는 보호자 집단활동도 시도하고 있는데, 시험관찰 중에 소년의 부모들을 집단 교육, 교통강좌 등에 부모를 동석시켜 집단교육, 소년을 보호위탁을 이용한 합숙 등에 참가시키고 마중 나온 부모들을 모아서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개정 소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재판소의 재량에 의한 국선보조인제도 및 검찰관 관여제도의 대상사건범위를 확대하고, 소년의 형사사건에 관한 처분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한 비행소년에 대한 엄벌화는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교육에 의한 개선과 갱생의 가능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중대한 소년범죄를 처벌중심으로 종래 규제를 전환하여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행소년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중재역할로서 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422) 이러한 감소현상은 재정당국과의 절충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기일출석과 의견진술

조사관은 심판에 출석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 불출석시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판에 출석하기 전에 심판관, 조사관, 서기관 등이 참여하여 '심판 전 협의'를 실시한다. 통상 재택사건의 경우 조사관은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신규사건의 경우에는 기일에 출석한다. 심판 후에는 조사관을 통하여 비행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보호처분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언이나 지도를 한다.

(4) 시험관찰

가정재판소에서는 비행소년에 대한 최종적인 보호처분 여부를 유보한 채, 소년의 갱생을 위하여 조사관의 시험관찰을 시행하게 된다. 이 때 시험관찰은 대상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성행교정 및 환경조정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시험관찰은 해당 심판의 자료수집기능도 가지고, 보호관찰보다 비행소년의 성행교정 및 환경조정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시험관찰은 상당한 기간 동안 비행소년을 관찰하는 중간적인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시험관찰의 방법으로는 조사관이 직접적으로 지도 및 관찰하는 재택시험관찰, 담당조사관의 관찰과 병행하여 보호자 이외의 적당한 시설에 위탁하는 보호위탁, 보호자의 감독 하에 비행소년을 학교장 등의 보도위탁위원에게 관찰하게 하는 재택보도위탁 등이 있다.

(5) 보호적 조치

보호적 조치 또는 교육적 조치는 비행소년과 그 보호자에 대한 재범방지의 교육을 말한다. 보호적 조치는 조사관의 면접과정과 재판관의 심판과정에서 교육적 개입을 의미한다.

조사관에 의한 보호적 조치의 방법으로는 면접 또는 심리검사를 통한 문제점의 발견 및 조언, 보호자에 대한 감호방침 등에 관한 조언, 직업상담, 카운슬링 및 가족치료기관의 소개, 피해자에 대한 조언, 생활리스트, 행동검진표에 의한 생활태도 등의 점검 및 개선, 훈계, 노력목표 설정 등이 있다.

(6) 기타

전술한 조치나 개입 이외에도 조사관이 심판에 회부하여야 할 비행소년을 발견한 때 재판관에게 보고하는 소년사건의 입건보고, 동행영장의 집행, 결정 집행의 직무가 있다. 예컨대, 소년감별소의 송치에 의한 관호조치가 강제적인 조치인데 비하여, 조사관에 의한 관호조치는 재택조치로서 이는 강제성을 띠지 않고, 조사관의 권위와 인격적 영향력 등에 의하여 비행소년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높지 않아 실무상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가정재판소가 적절히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 결정 이후에도 결정된 보호처분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성적시찰도 있다.

제5절 정리

앞서 살펴본 각국의 조사관 제도는 각 국가의 조사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도의 정착 배경,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서 현저히 다르게 적응하고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미국의 가정법원 조사관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특히 아동이 있는 부모의 이혼사건에서는 법원 내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서비스의 의뢰, 부모교육, 상담, 약물 ·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상담 등의 서비스에의 참여를 명하거나 외부의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사건 접수 단계에서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 상황을 평가하고 개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조사관들에 의해 시행되는 이혼 전 부모교육[423]을 의무화하는 주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424]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423) 이혼 전 부모교육에서는 법원 및 조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혼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처 방법, 유용한 외부기관 등의 소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424) 각 법원에 따라 Parent Workshop, Children of Divorce Seminar, Orientation 등과 같은 제목으로 이루어지며, 강의시간(30분 내지 90분 등)이나 강의 방법(직접교육, 집단교육, 비디오 시청)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많은 법원에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고 추세이다[송현종, "가정법원의 복지서비스 방안에 관한 검토",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2004), 519].

기관과의 조율이 강조되고 있어, 법과 서비스 양 영역 모두에 익숙한 전문가(Social Service Coordinator)[425]로서, 가정법원 전문 인력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426]

미국의 가정법원 전문 인력의 업무는 그 명칭에서도 조사관이 아니라 상담이나 조정에 근거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명칭에 부합되게도 이들의 주요 업무는 상담, 조정, 부모교육, 전문기관의 연결 등으로 선발 조건 및 취지에 맞는 본래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미국의 가정법원 전문 인력의 업무가 우리의 가정법원 조사관의 직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조정이나 화해 등의 특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우리 조사관들 또한 이들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사실조사에 보다 치중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관계학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업무 수행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소년보호관찰관의 경우에도 우리의 소년사건조사관과 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가정법원의 전문 인력과 소년보호관찰관들은 우리에 비해 이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독일의 경우는 우리의 가정법원 조사관과 유사한 개념의 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 내에서는 절차보조인을 통해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외부의 아동복지기관의 상담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거나 조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한 이와 같은 상담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만약 사건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되어 있고, 아동인 자녀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 대리인으로 가정법원의 절차보조인을 재판에 참여하게 하고, 상담이나 조정을 포함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외부의 아동복지기관을 활용하는 이중적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 제도는 조사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있어서 우리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본의 제도는 우리와는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경우, 선발은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연수기간도 2년으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조직적 측면에서 조사관의 업무는 조사관 3인이 하나의 조로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관은 사무를

425) 사회학, 사회사업(복지)학 등 석사학위 이상, 필요분야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전문 인력을 가리킨다[송현종(주 424), 518].
426) 송현종(주 424), 518.

담당하는 법원공무원과는 별도의 조직체계인 가정국에 편제되어, 그 인원은 우리의 약 10배인 1,6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4 장

개선 방안을 위한 구체적 제언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개설

가정법원의 설립 취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법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가정법원의 조사관의 역할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는 미국이나 독일과도 다르며, 업무를 비롯하여 임용방식이나 직위의 성격에 있어서 우리 가정법원의 설립 및 조사관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일본과도 차이점이 있다.

우리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가 가진 문제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가사전문법관 1호'라고 불리는 손왕석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427] 손 변호사는 가사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조사관 증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전문조사관을 충원하고 처우를 개선해 그들의 사기를 올리지 않으면 좋은 조사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가정법원 조사관들의 역할과 관련하여 가사 · 소년 재판에서 전문조사관의 조사는 재판의 수준과 성격을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 예컨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몇 대를 때렸느냐?"는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정신적 문제나 심리적 상호역학관계 등을 심층 분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428] 이러한 역할은 조사관을 통해 수행될 수 있을 것인데, 해당 역할의 수행 부분이 조사관의 전문성에 해당한다.

우리 가정법원이 전문조사관을 통해 가사조사 업무를 보다 세분화 · 전문화하고, 다양한 가정법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음에도, 외국의 가정법원 서비스와 비교하면 양적 · 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429] 따라서 우리의 현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사관 인력 및 조직과 관련한 운용적 측면(제2절)과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제3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427) 박수연, "한국 최초 '가사전문법관'… 손왕석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법률신문 (2018. 6. 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512) (2018. 7. 31. 확인).
428) 박수연(주 427).
429) 송현종(주 3), 52 이하.

제2절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I. 개설

우리 가정법원의 조사관 제도의 안정적 운용이나 전문화에 대한 실패 원인으로는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에게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이원화된 인적 구조와 전문조사관의 승진기회의 미비 등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들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조사관의 조직 및 증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첫째, 가정법원 조사관의 선발 및 조직 체계의 일원화(Ⅱ), 둘째, 지역별 조사관의 배치(Ⅲ), 셋째, 가사조사 기간(Ⅳ), 넷째, 사실조사 의견서(Ⅴ)로 나누어,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운용적 측면에서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발 및 조직 체계의 일원화

가정법원 조사관 선발 및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법원의 조사관은 선발 방식 및 조직 배치와 관련하여 이원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조사관의 조직과 관련하여 단기적 개선 방안(1) 및 장기적 개선 방안으로의 조사국의 설치(2)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단기적 개선 방안

가정법원 조사관의 조직 및 인원과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단기적 대안으로, 첫째, 조사 직렬로의 일원적 편제(가), 둘째, 조별 구성(나), 셋째, 업무 분류(다)를 순서대로 검토하고자 한다.

가. 조사 직렬로의 일원적 편제

법원 내부의 기존의 법원 공무원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 직렬의 일반조

사관으로서 조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이와는 달리 외부에서 임용되는 경우에는 조사 직렬의 전문조사관으로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표 4] 일반조사관과 전문조사관의 담당 업무'와 같이 일반조사관과 전문조사관의 조사 업무의 대상 및 범위 또한 동일하지 않은데, 일반조사관의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으로서 객관적 조사 업무만을 한정하여 담당하는 반면에, 전문조사관의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으로서 객관적 사실조사를 비롯하여, 주관적 조사, 면접,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년사건조사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또는 아동보호사건조사관으로서의 업무 또한 수행하게 된다. 결국 조사관의 이원적 선발은 이원적 조직 배치와 연결되고, 이는 다시 일반조사관과 전문조사관의 업무 또한 이원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경우에는 조사관은 전문조사관만을 의미하며, 법원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조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업무 구분의 근거로 일본의 조사관 선발은 임용 시험을 통한 선발이라는 점에서 우리 전문조사관의 선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도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및 별도의 경력 조건을 통한 전문가의 선발이라는 임용 기준이 있으므로, 단순히 선발 방식의 차이를 근거로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이 조사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게 된다.

또한 초기와는 달리 우리 가정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이 조사관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자발적인 지원을 통한 방식으로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2년의 기간 경료 후에 조사 업무를 연장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조사관이 해당 기간 경료 후에는 조사 업무를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조사관의 조사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반조사관의 경우에는 본래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2년 동안의 기간은 조사 업무에 대한 기초적, 전반적 이해가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2년의 기간 후에 조사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은 일반조사관이 2년의 기간을 통해 조사 업무를 통한 노하우가 있다고 해도 축적될 수 없어, 사무 직렬 공무원을 통한 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의 문제와 관련해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조사관과 전문조사관의 이원적 체계 및 상이한 조사업무로 인하여 불균형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데, 이는 선

발에서 요구되는 자격 요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과 관련해서도 법률 관련 지식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업무 또한 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관에게 요구되는 인간관계학 분야의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경우, 조사관의 업무는 상담 및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와는 업무에 있어서도 본연적인 차이가 있어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전문조사관들의 선발 기준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학 관련 학문에 기초한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조사관을 통해 기대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의 조사관 직무 수행은 가정법원의 설립 목적과 조사관 제도의 도입 취지와도 상반되기 때문에, 법원 사무 직렬 공무원을 통한 조사관 업무의 수행은 재고될 필요성이 충분하다.

정리하면, 일반조사관의 업무가 가사조사관으로서의 “객관적 사실조사” 업무에 한정되어 있고, 2년의 기간 후에 조사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과거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고려한다면,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이 굳이 조사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사무 직렬의 일반조사관에 의해 수행되던 객관적 사실조사 업무를 없애고, 조사 직렬의 전문조사관으로 조사관을 일원적으로 편제하여, 조사 업무를 전문조사관에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일반조사관과 전문조사관의 인원은 비슷하거나 일반조사관의 수가 더 많았으나, 최근 10년 동안 전문조사관에 대한 증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전문조사관 수는 153명, 일반조사관은 3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가정법원 조사관 중에서 일반조사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적다고는 볼 수 없는 수치이다. 만약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에게 가사조사관으로서 객관적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전문조사관의 인력 부족이라면, 이는 전문조사관의 인력 증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에 해당한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 판사의 수는 약 3,500명, 가정재판소의 조사관의 수는 약 1,600명인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판사의 수는 약 2,500명, 가정법원 조사관의 수는 약 150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430] 전체 판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조사관의 비율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조사관 선발의 일원화 및 조사관 조직 편제의 일원화는 조사관을 통한 법원 서비스의 일원화로 연결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도입 취지인 복지적, 후견적 법원으로서의 역할의 수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나. 조별 구성

현재 가정법원 조사관은 수석조사관 이하, 5급 사무관인 전문조사관이 몇 명 있지만, 이들 전문조사관의 업무는 5주간의 신규 연수를 마치고 새로 임용된 조사관의 업무와 별반 다르지 않다. 5급 사무관인 전문조사관의 경우에는 많게는 15년 이상 적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임에도 신규 임용된 조사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경력과는 관계없는 동일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 임용된 조사관의 경우 5주간의 연수만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어, 경력 10년 이상의 조사관들과 신규 임용된 조사관을 하나의 조로 편제하여, 실무연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무연수뿐만 아니라, 연수 후의 실제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팀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조사관의 경우에는 주임조사관을 조장으로 3인 1조로 편성되어 재판부에 배치된다. 따라서 신규 임용된 조사관은 약 2년간의 연수 후에 3인으로 구성된 조로 편제되며, 조장인 경력이 많은 주임조사관에 의해 자연스럽게 실제 업무를 통한 여러 가지 사항을 학습 받게 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일본과 같이 정형화된 3인 1조의 체계로 편제하지 않더라도 실무연수를 포함하여, 조사관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10년 이상의 전문조사관 1명이나 2명을 선임으로 하고, 2명이나 3명의 신규 임용자를 하나의 조로 구성하는 팀제 운영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경우나 상황에 따라서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며, 주로 3명 내지 5명 정도의 인원이 하나의 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임조사관들에게는 기존의 조사관 업무를 비롯하여 본인이 가진 노하우를 신규 임용된 조사관에게 학습 및 전달 할 기회가 되며, 반대로 신규 임용

430)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주 74), 61.

자의 경우에는 실무를 통해 조사관 업무에 대한 훈련 및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선임조사관의 경력 기간과 관련해 우리 조사관 제도가 정착된 시기인 200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약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사관을 경력조사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선임조사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력과 관련한 기간 또한 상황에 따라 현실적으로 점차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표 1] 가정법원 조사관 수: 2001년과 2017년 비교'를 보면, 현재 각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배치되어 있는 가정법원 전문조사관의 수는 5명 미만인 곳이 대다수이고, 지원의 경우는 대부분 1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의 인원으로는 경력이 있는 전문조사관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 하나의 조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조사관의 팀제 운용은 최소한의 조사관 인원이 확보되어야 함을 전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표 1]에서 1명이 배치된 지원 및 지방법원은 25곳으로 이곳에 배치된 조사관 중에서 신규 임용된 조사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가정법원에서의 경력이 많은 선임조사관들을 배치시켜 3인으로 구성된 조를 편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약 50명의 신규 조사관의 선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2명인 지방법원이나 지원도 10곳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소한 3인을 하나의 조로 구성하기 위해서도 조사관의 증원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에는 1명으로 배치된 조사관이 2개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직무의 성격에 따라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하여 각 사건 별로 하나의 팀을 구성한다고 가정하면, 각 사건마다 조사관 3명으로 하나의 조를 구성하면 최소한 12명이 필요하고, 결국 11명의 충원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1명의 조사관이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현재 25곳이므로, 사건별 및 조별로 조사관을 편제한다면 약 300명의 증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게다가 특정 가정법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법원에서는 현재 12명의 조사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모든 법원 및 지원에 증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문조사관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출산이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 휴직 중인 경우도 전체 조사관 중에서 평균적으로 약 10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휴직 중인 조사관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의 보충이 현실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증원 시에는 이 부분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업무의 분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약 150명의 전문조사관들은 경력이 많은 선임조사관과 신규 임용된 조사관이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경력에 따라서 사안의 어려움이나 복잡성의 경중에 따른 사건의 분류를 통해 사실조사 대상을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우리의 경우에도 팀제나 조별로 선임조사관과 신규 임용자를 함께 구성하는 경우에, 선임조사관에 대해서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직렬에 있는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팀장이나 조장으로서 다른 조사관들과 직무를 달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팀장이나 조장이 될 수 있는 경력 있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첫째, 신규 임용된 조사관에 대한 지도, 둘째, 흔히 고갈등 사건이라 불리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 보다 복잡하고 당사자 간 충돌 및 미성년 자녀의 문제에 대한 대립이 큰 사건을 선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고갈등 사건의 경우에는 팀 내에서의 활발한 토론이나 해결과정을 통해 경력이 많지 않은 조사관들에게 선임조사관의 경험 등을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임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업무로는 신규 임용된 조사관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에서의 교육 참여나 교재 개발 등도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이하에서 살펴볼 제3절에서의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써, 신규 연수와 실무연수에 대한 기회의 확대로 연결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사조사관을 위한 5주간의 신규 연수 및 4주간의 실무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및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 또한 선임조사관이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임조사관들은 연수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 개발 등의 업무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기적 개선 방안: 조사국의 설치

앞서 살펴본 전문조사관으로의 조사 직렬 일원화 및 팀제 운영 방안이 조사관 조직 편제와 관련한 단기적 방안이라면, 장기적 방안으로는 가정법원의 역할 및 기능의 확대와 관련한 인력 증원을 통한 별도의 조사국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은 전국의 조사관 인력을 최고재판소의 가정국이 일원적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물론 일본 가정재판소의 조사관의 수가 약 1,400명인데 반해서, 우리 가정법원

의 전문조사관은 약 150명(2018년 8월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본의 조사관 인원에 비해 우리의 조사관 수는 약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국의 설치는 사실상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법, 소년법 등의 개정으로 인해, 가사조사관 및 소년사건조사관의 업무 확대를 비롯하여,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과 같은 조사관 직종의 세분화는 결국 인력 확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가정법원의 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때로부터 조사관 수의 부족 및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사법서비스 수요 및 전문조사관의 직무영역 확대에 비해 가사조사관을 비롯하여, 소년사건의 조사에 있어서도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431] 또한 전문조사관의 부족으로 인해 소년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충분한 면접기회와 출장 · 심리검사 등의 조사기법을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32]

현재 가사조사관의 경우 매달 작성하는 조사보고서의 수는 10개 내지 15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히 조사보고서 작성업무만을 보아도 업무량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소요되는 2회 내지 3회의 사실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문조사관 1인의 업무량은 적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조사보고서의 작성 업무 이외에도, 법률 개정을 비롯한 가정법원의 서비스 확대로 인해 가중된 별도의 업무가 많다는 점이다.

앞서 소개한 가사전문법관 1호로 불리는 손왕석 변호사는 인력 충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10여 년 전부터 약 200억 내지 300억 원의 규모로 적어도 조사관이 500명 정도 증원되어야 한다고 보았다.[433] 이와 같은 조사관의 증원에 요구되는 인력은 우리의 가사사건, 소년사건 및 가정보호사건의 수를 고려할 때 많은 수의 인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본의 가사사건 및 소년사건 수와 조사관의 수를 비교해도 최소한 500명 정도의 인력 증원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00명 정도의 조사관이 증원된다면 예상되는 전문조사관의 수는 약 650명으로, 해당 수의 인력 규모는 현재 사무국 하의 조사 직렬에 있기 보다는 오히려 별도의 독립

431) 송현종(주 28), 7.
432) 송현종(주 28), 7.
433) 박수연(주 427).

된 국의 편제를 통해 조사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사무국에 소속된 조사 직렬을 사무국 외로 분리하여 조사국을 신설할 수 있다면, 조사관 조직 내에서의 업무를 보다 세분화하고, 연수나 세미나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 구성은 국장을 비롯한 법원의 일반적인 조직 체계를 따를 수도 있지만, 조사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수평적인 조직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수평적 조직으로서는 앞서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검토한 3명 내지 5인으로 구성된 각 조를 통한 팀제 형식의 조직 구성 또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조사관의 지역별 배치 및 순환보직

1. 개설

'[표 1] 가정법원 조사관 수: 2001년과 2017년 비교'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하에서는 조사관의 배치와 관련하여 첫째, 신규 임용된 전문조사관의 배치(2), 둘째, 한정된 지역 내에서의 순환보직(3)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신규 임용자의 배치

전문조사관의 배치와 관련한 문제점은, ①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가정법원이나 규모가 있는 지방법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에는 1인이 가사조사관, 소년사건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때 조사관으로는 신규 임용자가 배치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② 신규 임용자의 연수가 5주로 사실상 업무를 바로 수행하기에는 기간 상으로도 너무 짧아,[434] 5주간의 해당 과목에 대한 연수만으로는 신규 임용자가 업무를 습득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③ 해당 신규 연수 교육 또한 가사조사관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문제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첫째,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최

434) 신규 채용된 인력들이 업무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유정(주 132), 12].

소한 2인 이상의 전문조사관이 있는 법원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치를 통해 신규 임용된 전문조사관이 단독으로 가사사건을 비롯한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모두 담당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둘째, 이는 앞서 제안한 사건별로 조사관을 3명 내지 5명의 조를 구성하는 방안과도 연결될 수 있다. 팀제로 조사관을 구성할 필요성은 신규 임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크다고 보일 수 있으나, 신규 임용자가 실제 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단계에서 각 법원에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는 법원이용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문제가 된다. 결국 신규 임용된 조사관에 대한 단독 지원 배치는 나중에 살펴보게 될 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및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후견적 · 복지적 기능의 수행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3. 조사관의 순환보직

현재의 가정법원 조사관의 신규 임용의 경우에는 각 법원에서 필요한 인원을 법원행정처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선발된 전문조사관은 5주간의 신규 연수를 거쳐 해당 법원에 배치된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이외의 나머지 법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순환보직은 전무한 실정이다.

순환보직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데, 단순히 업무가 정형화된다는 우려에 따른 문제만이 아니라, 각 법원에 따라서 사건의 양상이나 성격, 법원의 환경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관 업무의 형평을 고려할 때 순환보직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임용 시에 각 소속 법원에서의 충원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문제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임용 공고의 수정을 통해 이후의 충원에서는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미 임용된 조사관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의 순환보직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사관에 대한 순환보직은 이미 서울 · 경기권을 하나의 권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지역별로 고려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경상남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및 거창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가정법원의 12명, 울산지방법원 3명, 창원지방법원 3명의 조사관을 비롯하여 각 지원의 1명의 조사관인 총 24명의 조사관이 경상남도라는 하나의 권역에서 순환 보직하는 방안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동일한 지역별을 하나의 권역으로 편제하여 순환보직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중에는 각 도라는 권역을 확장하여,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등과 같은 보다 확장된 권역 또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조사관의 팀제를 통한 업무 수행과 함께 조사관들의 순환보직을 통해 보다 적합하고, 균등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사실조사 기간

조사 기간과 관련한 문제점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첫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조사 기간 소요로 궁극적으로 해당 소송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점, 둘째, 대부분의 조사기일이 한 달에 한 번의 간격으로 총 3회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 기간에는 최소한 3월 내지 4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조사기일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어 당사자나 조사관의 입장에서도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435]

사실조사 기간과 관련해 당사자가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나 쟁점이 잘 정리되어 있고, 굳이 조사관의 조사가 필요 없다고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사실조사가 행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사실조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사자들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조사 기간과 관련하여 조사기일 간격을 한 달이 아닌 2주 내지 3주로 단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조사기일의 간격이 너무 길어져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기일 단축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며,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사관의 조사기일 단축은 조사관 인력 및 업무량 등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력 증원 관련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사기일의 단축과 관련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2주나 3주의 짧은 간격으로 직장에 휴가를 요청해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어, 당사자 모

435) 2017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의 내용.

두가 조사기일 단축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당사자가 조사 기간의 간격을 단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조사기일 단축의 가능성은 조사관에 의해 결정되는데, 조사관의 조사기일 단축은 결국 조사관의 업무량과 연결되고, 이는 다시 조사관의 인력 증원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게 된다.

V. 사실조사 의견서의 도입

조사관의 사실조사를 거친 당사자의 경우 조사과정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조사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한 발언이나 무리한 조정의 시도, 소송절차에 대한 부적합한 법률적 충고, 당사자 일방에게 적대적이거나 호의적인 표현이나 태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입장과 조사관에게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든가, 상대방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거나 하는 긍정적인 경우가 있었다.[436]

그러나 앞서 언급된 부정적인 평가는 사실상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역량을 넘어서, 조사관을 통한 사법서비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사실조사를 경험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사의견서를 도입한다면, 사실조사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의 견해를 들을 수 있어,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실조사에 대한 피드백을 포함해, 고쳐야 할 점이나 보완할 부분 등을 알 수 있어 일차적으로는 사실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조사 의견서를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 의견서는 사실조사에 참여한 당사자로 한정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가에 참여한 작성자인 당사자의 신분을 익명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조사 의견서에 대한 설문은 해당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후에 실시되어야 하며, 설문의 전송 및 반환은 우편이나 전자 우편을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화를 통한 설문 또한 담당 인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을 보완한다면, 사실조사 의견의 수집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36) 사실조사서와 관련해, 판사들의 약 88%가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유용하다고 답했으며, 판결에 대한 기여도는 약 44%, 조정에 대한 기여도는 약 53%로 보았다(서울가정법원의 2002년 조사 설문) [송현종(주 17), 7].

사실조사 의견서의 내용은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 사건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첫째, 사실조사를 통한 본인의 입장이나 사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상황 인식 여부, 둘째, 사실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에 대한 의견, 셋째, 사실조사에서 추가 또는 수정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실조사 후에 조사관들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특히 가사조사 보고서의 경우 이의 열람이나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당사자를 비롯한 변호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사조사보고서가 사건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열람이나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조사보고서는 사실조사 부분만 공개되며 조사관의 의견 부분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조사관들도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열람 또는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사조사보고서와는 달리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의 조사보고서는 조사 대상이나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사조사보고서와는 별도의 공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 보인다.

물론 앞서 제안한 사실조사 의견서의 도입이나 이의 반영이 조사보고서의 열람이나 공개에 대한 대안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조사보고서의 열람이나 공개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당 의견서의 도입은 사실조사에 대한 다른 방식의 피드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사실조사에 변호인들이 동석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사실조사가 가진 비공개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조사의 대상이었던 당사자들의 의견을 알고,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3절 가정법원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I. 개설

가정법원 조사관의 전문성의 확보는 조사관의 업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조사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비롯해, 이들의 선발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인간관계학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법원은 석사 이상의 인간관계학 관련 전문가를 신규 선발하여, 가사조사관에 중점을 둔 5주간의 신규 연수를 시행한 후에, 조사관으로 배치하고 있다.

결국 5주간의 신규 연수만으로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해당 신규 교육만으로는 조사관 업무를 바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관들은 해당 신규 교육만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실제 조사되었다. 더구나 신규 임용된 조사관이 지원에 단독으로 배치되어 가사, 소년보호 및 가정보호 사건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경우에 세분화된 조사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또한 이미 예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법원 조사관의 업무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복지적 기능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건의 당사자는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조사관의 역량에 따른 서비스의 편차가 심하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제기되어 오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조사관의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도 있지만, 단순히 개인적 문제만으로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자질 및 자격 있는 조사관을 선발하였으나 이들이 조사과정에서 제공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의 미비를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조사관의 전문성을 조사관을 위한 연수(Ⅱ)와 직무(Ⅲ)로 분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조사관을 위한 연수

1. 연수의 필요성

우리의 경우 가정법원 조사관으로 신규 임용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연수를 비롯하여, 2010년 이후에나 정착된 후기 연수 제도 기간도 4주 내지 5주로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외부 교육에 관한 참여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교육 연수제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437]

437) 송현종 · 조소연 · 노혜련(주 6), 11.

가. 업무의 차별성에 대한 이해

앞서 살펴본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유사한 임용 요건의 전문가를 선발하고 있는데, 직무에 따라서 수행 전에는 약 40 내지 50시간의 교육이 의무화된 경우도 있고, 매년 약 8시간의 후기 연수 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경우는 직무의 대상에 있어 우리의 가정법원 조사관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들이 수행하는 이혼 전 부모 교육, 조정, 상담 및 양육 평가, 서비스의 조정 및 맞춤형 사례관리 등의 가정법원 전문 인력의 업무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서의 소년보호관찰관의 업무는 이들의 임용 요건인 인간관계학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질 및 전문성은 이들의 임용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정법원 전문 인력이나 소년보호관찰관으로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임용 후에 길지 않은 연수 기간으로 충분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가정법원 내부에서의 절차보조인 제도를 최근에 도입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가정법원이 안내, 상담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외부 기관에 해당 임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리하면, 우리 가정법원은 독일과 같이 외부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관을 직접 선발하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미국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상담사나 조정자라는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가정법원 전문 인력의 주요 업무는 상담이나 조정을 포함한 이혼 전 부모교육 등으로, 전문 인력의 원래 전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우리 가정법원의 조사관의 사실조사 업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나. 업무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경우에는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과 가장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상담, 조정을 비롯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부담하며, 이들은 임용 후 약 2년 동안의 연수를 이수한 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 조사관이 약 2년간의 이론 및 실무연수를 거친 후에야 각 가정재판소에 배치되어 실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5주의 신규 연수는 실제 업무를 위한 연수로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사관으로 인간관계학 관련 전문가를 선발했기 때문에 5주간의 짧은 교육으로 이들이 실제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인식은 조사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의 직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조사인데, 사실상 사실조사 업무는 그 성격상 인간관계학 관련 전문성만이 요구되는 분야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가사사건을 비롯하여, 소년보호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조사를 법원의 사무 직렬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은 가정법원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학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사실조사라는 업무 자체가 인간관계학적 전문성에 기반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의 업무가 미국과 같이 인간관계학적 전문성이 거의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오히려 우리의 가정법원의 조사관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이는 일본의 조사관의 경우에는 인간과학 분야의 학사와 석사를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시험과목도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뿐만 아니라 법학이 포함되어 있어, 이미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법학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선발된 자에게는 실제 조사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약 2년간의 연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심리학, 교육학, 법학 등의 학문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가족분쟁과 관련한 업무나 소년비행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본인의 전공에 대한 지식만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임용 후의 연수를 통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 정리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조사관의 직무의 성격이 인간관계학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미국과 다르고, 해당 직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독일과도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우리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조사관의 경우에 2년의 연수 후에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들이 임용 전에 인간관계학 관련 분야 외의 법률적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신규 임용자에 대한 5주간의 교육 후에 바로 조사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우리의 5주간의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사관 개인이 가지는 어려움 유무를 떠나, 이들을 통한 사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2. 연수의 확대

현재 이루어지는 신규 임용자를 위한 5주 교육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 과목에 대한 확대 및 기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가. 신규 연수

현재 신규 연수는 3주 정도의 이론 수업 및 2주 정도의 실무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의 연수 프로그램은 민사소송, 가족관계등록, 성년후견 등 가사조사관 중심의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으나, 이 또한 3시간 내지 7시간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규 임용된 조사관들이 해당 수업을 통해 관련 과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가사조사관을 위한 이론 교육으로는 가사소송법 및 친족법과 관련한 과목을 비롯하여, 입양, 성년후견 등 확대된 가사조사관의 업무와 관련한 과목에 대한 심도 있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과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교육 시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신규 연수가 가사조사관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신규 연수에서는 소년사건조사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을 위한 교육 과목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수습은 사실상 조사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 신규 임용된 조사관들은 앞서 제안한 팀제로 운영되는 각 조에 배치되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의 업무에 대한 수습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연수를 위한 기간은 추가 및 보충되어야 하는 세부적 과목이나 각 과목에 대한 교육 시간과 관련되어 있으나, 최소한 3월(약 13주)의 연수 기간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이론연수와 실무연수의 기간, 이론 교육 과목, 교육 강사, 실무연수를 위한 조별 배치 등에 대한 결정은 경력이 있는 선임조사관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결국 가정법원 조사관들의 조별 배치나 인력 증원 등이 현실화된다면, 신규 연수 관련 교육 과목이나 시간 등은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후기 연수

현재 이루어지는 후기 연수는 가사조사관을 위한 연수와는 별도로 소년사건조사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아동보호사건조사관에 대한 공동연수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의 후기 연수 또한 신규 연수와 마찬가지로 교육 과목이나 기간 등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후기 연수의 기간 및 횟수 및 과목에 대해서, 조사관들은 연수 기간이 짧다는 문제점 외에도, 연수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현재 제공되는 과목 외에도 가사조사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과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는, 후기 연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후기 연수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실제로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들이 후기 연수에 참여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후기 연수를 매년 보장할 수 없다면 2년 또는 3년 주기로 후기 연수의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사건관계인의 고갈등 사건의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전문적으로 분류된 가사조사관, 소년사건조사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도 과제로 남아 있다.[438]

다. 외부 연수

가정법원 조사관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학이나 전문 상담기관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해 각종 심리검사 등 조사관련 과목에 대한 교육 등 지속적인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439]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이나 전문상담기관의 각종 교육을 수강하거나 워크숍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정 대학 또는 전문 상담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

438) 가정법원은 매월 조사과 회의와 사례회의 등을 통해 조사관의 적절한 언행과 개입을 위해 논의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에는 가사조사 내용을 참관 모니터링하고 체크리스트 작성 및 결과분석을 실시하는 등 법원 차원에서도 가사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2017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의 내용).

439) 홍영오 · 황태정(주 83), 33.

는 지속적인 교육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현재 각종 조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심리검사 및 점차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각종 재범위험성평가의 요강과 지침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3. 연수 과목, 교재 및 연구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 연수 및 후기 연수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교재 작성, 강사진 확보 등의 업무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임조사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규 임용자에게 필요한 이론과목에 대한 선정을 비롯하여, 실무 수습을 위한 팀제 편성 등의 문제, 후기 연수를 위한 과목 및 프로그램의 선정, 외부 강사의 섭외 등의 문제까지, 선임조사관은 연수와 관련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계획 및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조사관 직무 관련 개선 방안

가사조사관을 비롯하여, 소년사건조사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의 직무와 관련한 공통적인 문제는 증원 및 배치에 관한 부분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개별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만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1. 가사조사관

가사조사관의 경우 법규의 개정이나 신설로 인해 추가된 업무 이외에도 각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캠프 등의 업무로 인해, 가장 주요한 업무인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시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규의 개정 및 신설을 통해 가중된 업무에 대한 해결은 인력 증원을 통한 해결을 제외하면, 결국 직무 범위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문제는 법규로 정해진 가사조사관의 직무를 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이 규정하지 않는 업무에 대한 가사조사관의 부담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2. 소년사건조사관

소년사건조사관의 업무가 수사, 재판, 교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이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시스템화 하고, 조사서 양식을 통일하며, 경찰, 검찰 및 법원의 각 수사단계의 업무를 분할함으로써 조사관이 중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정보호사건조사관

가정보호사건은 단순히 수사기록만으로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화나 면담을 비롯한 출장조사 등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출장조사가 중요한데, 지원에 단독으로 배치된 조사관에게 출장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 확보가 요구된다. 물론 가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의 업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도 출장조사를 위한 시간확보가 요구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4. 아동보호사건조사관

아동보호조사관의 직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2017년부터 가정법원에서는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이 배치되기 시작했으므로, 해당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 대행했던 아동보호사건을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론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은 1963년에 제도화된 이후로, 전문조사관의 수는 현재 약 150명에 이르렀다. 우리 가정법원이 지향하는 복지적 · 후견적 법원의 실현을 위한 여러 제도 중 하나가, 심리학, 복지학, 교육학 등의 인간관계학의 전문가를 사법적 절차에서 활용하는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이다. 사실상 지금과 같은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가 정착된 시점을 2001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 이는 조사관이 최초로 제도화된 후 약 40년간 가정법원 내에서 정착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던 원인으로는 법원 사무 직렬 공무원을 통한 가정법원 조사관의 업무 수행, 전문조사관 수의 부족, 조사관의 승진 기회의 제약, 사법부의 관심 결여, 연수기회의 부족 등이 지적되어 왔다.

우리와 같이 가정법원에서 인간관계학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상담이나 조정을 비롯한 이혼 전 부모 교육 등의 분야에서, 법원의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독일 가정법원은 아동의 친권 및 양육과 관련된 사건에서 절차보조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상담이나 조정 등의 업무를 가정법원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이를 외부 기관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일본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비롯해 상담 및 조정 업무까지 담당하고, 그 수도 약 1,600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던 문제점과 관련해서, 우선 조사관 제도의 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전문조사관의 선발 및 조직 체계의 개선, 조사관의 팀제 운영, 전문조사관의 증원, 둘째, 지역 단위의 순환보직 및 신규채용자의 단독배치 금지, 셋째, 사실조사 의견서의 도입을 통한 조사보고서의 비공개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 넷째, 가사조사 기간의 효율적 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법원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관으로 채용된 후에 실시되는 신규 연수 및 임용 후에 이루어지는 후기 연수의 확대 및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의 주요업무가 사실조사라는 측면에서, 인간관계학 관련 전문가인 전문조사관의 경우에는 법학 및 소송 관련 지식 등에 대한 연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이나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서 우리 가정법원의 후견적 · 복지적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2017 가정보호조사관리모델 실무편람, 서울가정법원 (2017)

Rainer Frank, “Das deutsche Jugendamt: Geschichte, Organisation, Aufgaben”, 법학논문집 제37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김상용(역), “독일 아동청의 역사, 조직 및 임무”, 법학논문집 제37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곽한영, 청소년 참여법정의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11)

권재문, “‘가정’법원의 역할 확대와 가정‘법원’의 바람직한 기능 –미국 통합가정법원(UFC)에 대한 비판론을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제430호 (2012)

김동림, 소년법, 화성사 (2000)

김상규, “문제해결법원–미국 뉴욕의 예를 중심으로–”, 제32회 비교사법연구발표회 자료집 (2005)

김상용, “독일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 가족법연구 제22권 제3호 (2008)

김상용, “이혼 후의 공동친권”, 가족법연구 I (2002)

김상용, “절차보조인 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론(시론) –가사절차에서 자녀의 지위 강화와 관련하여–”, 사법 제27호 (2014)

김상용, “협의이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법조 578호 (2004)

김양곤,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 제도 연구 –미국, 영국, 일본의 소년보호관찰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김원태, “일본에서의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 가족법연구 제22권 제3호 (2008)

김주영 · 송진경 · 신소정,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의 비교를 통한 이혼의 특성변화 연구”, 가정관리연구 제15권 (1996)

김진석, “입양제도 개선방안: 입양 절차상 공적개입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제도 개선방안 발표토론회 국회자료집, 대구 · 포천 입양아동 학대 ·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2017. 5. 31.)

노혜련,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제도 개선방안 발표토론회 국회자료집, 대구 · 포천 입양아동 학대 ·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2017. 5. 31.)

노혜련 · 유서구 · 황혜신, “가정법원 전문조사관 제도의 활용과 성과에 대한 법관의 인식”, 비판사회정책 제37호 (2012)

대법원, 사법발전계획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2003)

문준필, “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족법연구 제18권 제2호 (2004)

박광배, “치료사법의 개념과 현황,” 사법 창간호 (2007)

박부진, “한국사회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제9집 (2000)

박우동, “가정법원 20년의 회고와 전망,” 재판자료 18 (1983)

박주영, “일본의 가정재판소조사관 제도의 활용 –인사소송법상의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법학논총 제31호 (2014), 1사법사편찬위원회, 역사 속의 사법부, 사법발전재단, (2009)

법원행정처, 2012 사법연감 (2012)

법원행정처, 2017 사법연감 (201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2003)

변미희 · 안재진 · 강지현, 예비양부모교육 교재 개발, 중앙입양원 (2015)

사법사편찬위원회, 역사 속의 사법부, 사법발전재단 (2009)

사법정책연구원,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8)

서울가정법원, 실무편람 가사조사관리모델 (2010)

서울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에 관한 종합검토 (2003)

송현종, “가사조사관의 인력과 직무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26권 제3호 (2012)

송현종, “가정법원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가사조사관의 직무와 맞춤형 사례관리의 소개를 중심으로–”,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2013)

송현종, “가정법원조사관 인력 개선 필요사항”, 내부보고서 (2017)

송현종 · 조소연 · 노혜련,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사관 인력과 교육에 관한 법관과 조사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9권 제3호 (2012)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가사 · 소년보호 · 가정보호 조사관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1)

신아람, “법원 ‘자녀양육안내 담당자 워크숍’ 개최”, 파이낸셜뉴스 (2014. 7. 3.)

양정자, “가정법원의 현황과 발전방안 –전국에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며–,” 가족법연구 제14호 (2000)

오영근, “개정 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춘계 형사정책연구세미나 자료집 (2008)

유희정, “미국의 이혼 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평가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 제43권 제6호 (2005)

윤승은 · 최창훈 · 송현종, “일본 가정재판소 출장보고”, 외국의 가사 · 소년 재판제도 세미나 회의 자료(내부보고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2006)

이유정, “가정법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2권 제3호 (2008)

이윤호, 교정학개론, 박영사 (2003)

이재화, “가정법원 30년의 발자취,” 재판자료 제62권 (1993)

이춘화, 소년사건에서의 조사 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청구 (2002)]; 홍영오 · 황태정, “소년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1. 12.)

임재훈, “국내외입양 가정법원 허가관련 고려사항,” 입양특례법 시행 관련 간담회 자료(Ⅱ), 법원행정처, (2012. 8. 14.)

전보성, “가정법원 운영 현황보고,” 가정법원 심포지엄 자료집, 대법원 (2012)

전영주 “이혼치료, 이혼: 치료적 개입과 사례”, 가족치료학회 제26회 학술모임 및 사례발표 자료집 (2006)

전현덕,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중 출장조사 방법에 관한 검토”, 전국법원 조사관 세미나 자료집 (2006)

조경애, “가정법원의 변화에 대한 약간의 제언,” 가정법원 심포지엄 자료집, 대법원 (2012)

조광국, “독일의 소년형사사법제도-일반형사절차에 대한 특수성과 보호처분 및 소년형벌의 종류와 체계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126집: 외국사법연수논집(32) 제126집, 법원도서관 (2013)

조은혜, “전국 법원 6급 계약직 정규직 전환 논란”, 미디어다음 (2006. 9. 12.)

주명식, “가정법원은 이혼법원이 아니다(上) -조사 · 조정을 중심으로-”, 법률신문 1234호 (1978. 1. 5.)

최선경, “서울가정법원의 가사조사현황과 조사방법”, 전국법원 조사관 세미나 자료집, 서울가정법원 (2010)

최선경, “소년보호사건의 새로운 절차에서 조사관의 역할”, 서울가정법원 실무연구회 (2011. 3. 28.)

최영길, “협의이혼 하려면 ‘자녀양육안내’ 들어야”, 법률신문 (2012. 10. 31.)

한숙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의 운영개선방안”, 가사재판연구Ⅰ,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논문집 (2007)

홍영오 · 황태정, “소년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1. 12.)

2. 외국문헌

【독일 문헌】

Balloff, Familiengerichtshilfe als Aufgabe der Jugendämter, ZfJ (1991)

Bosch, Probleme einer Reform des Unehelichenrechts, FamRZ (1961)

Büttner, Änderungen im Familienverfahrensrecht durch das Kindschaftsrechtsreformgesetz, in: Schwab (Hrsg.), Das neue Familienrecht (1998)

Eherechtskommission, Vorschläge zur Reform des Verfahrensrechts in Ehesachen zum Recht der Kinder geschiedener und getrennt lebender Eltern zur Behandlung der Ehewohnung und des Hausrats sowie zum ehe-und familiengerechten Steuerrechts (1971)

Habscheid, Bericht der Kommission zur Vorbereitung einer Reform der Zivilgerichtsbarkeit (1961)

Habscheid, Das Familiengericht, FamRZ (1955)

Kunkel in LPK-SGB VIII(3. Aufl., 2006)

Leonardy, Der Familienrichter – ein großer Wurf geriet zu kurz, DRiZ (1977)

Oberloskamp, Jugendhilferechtliche Fälle für Studium und Praxis (10. Aufl., 2001)

Röchling, Die Stellung des Jugendamtes in familiengerichtlichen Verfahren, ZfJ (2004)

Wiesner, Zur gemeinsamen Verantwortung von Jugendamt und Familiengericht für die Sicherung des Kindeswohls, ZfJ (2003)

Willutzki, Familiengericht und Jugendamt – neue Formen der Zusammenarbeit, ZfJ (1994)

【미국 문헌】

A Brief History of the Academy of Professional Family Mediators, Academy of Professional Family Mediators (2016)

Alexander, Paul W., "Legal Science and the Social Science: The Family Court," 20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58)

Babb, Barbara A., "Where we stand: an analysis of America's family law adjudicatory systems and the mandate to establish unified family courts", 32 Fam. L. Q. 31 (1998)

Burke, Susie · Mclntosh, Jennifer · Heather, Gridley., Parenting after Separation, The

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2009)

Casey, Pamela · Hewitt, William, E., Court Response to Individuals in Need of Service: Promoting Components of A Coordination Strategy for Courts,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2001)

Children in the Middle: Divorce Education for Parent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ollins, Christina L. · Fetsch, Robert J., "A Review of Children in the Middle: Divorce Education for Parents", The Journal of Extension

Geasler, Margie J. · Blaisure, Karen R., "A Review of Divorce Education Program Materials", Family Relations Vol. 47, No. 2 (1998. 4.)

Geraghty, Anne H. · Mlyniec, Wallace J., "Unified Family Courts: Tempering Enthusiasm with Caution", 40 Fam. Ct. Rev. 435 (2002)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Unified Family Courts and the Child Protection Dilemma", 116 Harv. L. Rev. 2099 (2003)

Hope house visitation Center, Annual report (2016)

Jackson County Community Family Court Process, Outcome, and Cost Evaluation Final Report, NPC Research (2010. 6.)

Juvenile Probation Officer Careers in Hawaii, How to Become a Juvenile Probation Officer in Hawaii: Education Requirements

Juvenile Probation Officer Careers, What it Takes to Become a Juvenile Probation Officer

Martindale, David A. · Martin, Lorraine · Austin, William G., Model Standards of Practice for Child Custody Evaluatio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AFCC) (2006. 5.)

Milne, Ann L. · Folberg, Jay. · Salem, Peter., "The evolution of divorce and family mediation", Divorce and Family Mediation: Model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2004)

Model Standards of Practice for Family and Divorce Mediation, STANDARDS OF PRACTICE, ALL OTHER CONFLICT RESOLUTION PROFESSIONALS, Ethical Standard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SPIDR Ethics Committee (2001. 2.)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Ohio Family Court Feasibility Study, Supreme Court of Ohio (1997)

Oehme, Karen · Perko, Ann · Castillo, Kirsten · Lodes, Morgan, A Training Manual for Florida's Supervised Visitation Programs, Clearinghouse on Supervised Visitation · Institute for Family Violence Studies Florida State University · College of Social Work (2017)

Peter, C. M., "Social work and juvenile probation: Historical tension and contemporary convergences", Social Work 56(4), National Association Social Workers (2011)

Pollack, D. & Mason. S., "Parenting plans and visitation :Mandatory visitation,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Family Court Review 42 (2004)

Schepard, Andrew I., Chidren, Courts and Custod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Singer, Linda R., Settling Disputes: Conflict Resolution in Business, Families, and the Legal System (2nd ed.), Boulder: Westview Press (1994)

Spinak, Jane M., "Romancing the court", 46 Fam. Ct. Rev. 258 (2008)

Stahl, M. Philip, Conducting Child Custody Evaluations-From Basic to Complex Issues-. UA: SAGE (2010)

【일본 문헌】

宇多川潤四郎, "家庭裁判所の史的発展," 家庭裁判所調査官研修教材1 (1974)

棚村政行 等, 家族法, 青林書院 (2001)

廣井亮一, 司法臨床の方法(金剛出版, 2007)

家庭裁判所調査官研究所, 調査面接に関する実務上の諸問題 (1985)

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 家庭事件調査実務入門(再訂版), 研修教材第27号(2007)

野田愛子, 家庭裁判所制度抄論, 東神田編集室, (1985)

宇多川潤四郎, "家庭裁判所の史的発展," 家庭裁判所調査官研修教材1 (1974)

梶村太市 · 徳田和幸, 家事事件手続法 (第2版), 有斐閣 (2009)

井上博道, "家庭裁判所調査官のo歴史と役割", 司法書士 第42嫩 (2007. 2.)

鶴岡健一, "家庭裁判所の福祉的機能と家庭裁判所調査官の役割,"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연구소 주최 2012년 상반기 외부초청 강연 자료집 (2012)

竹崎博允, "家庭裁判所60周年を迎えて", 家庭裁判月報 제61권 제1호, 最高裁判所 (2009)

家裁調査官の仕事がわかる本, 公務員の仕事シリーズ, 法學書院編集部 (2014)

日本 最高裁判所,「裁判所データブック」(2018)

家庭裁判所長あて事務總長依命通達，高等裁判所長官，最高裁總1 第145号（1982．6．25.）

最高裁判所事務総局，改訂主任家庭裁判所調，査官執務資料集，家裁裁判資料（2008）

內藤賴博,“家庭裁判所の沿革,”家族問題と家族法Ⅶ －家事裁判－，酒井書店（1957）

最高裁判所事務総局，家庭裁判所調査官執務必携， 家裁裁判資料第185号（2008）

家庭裁判所調査官研修所， 家事事件の調査方法について(下卷)， 東京： 家庭裁判所調査官研修所(1991)

家裁調査官の仕事がわかる本，公務員の仕事シリーズ，法學書院編集部（2014）

大塚正之,“日本における家事事件の處理処理手續と裁判官・調査官・調整委員等の役割 －離婚及び子の監護ㄓ中心として－,”家族〈社舍と法〉第21號（2005）

斎藤正人,“家事係家庭裁判所調査官活動の歷史的推移”，家庭裁判月報 第40卷 第4號（1988）

濱野昌彦,“親権・監護権紛争における家庭裁判所調査官の役割”，法律時報 第81卷 第2號（2009．2.）

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家庭事件調査実務入門（再訂版），研修教材 第27号（2007）

大塚正之,“日本における家事事件の處理処理手續と裁判官・調査官・調整委員等の役割 －離婚及び子の監護ㄓ中心として－,”家族〈社舍と法〉第21號（2005）

松原正明,“我が國の家事調整制度の基本構造,” 九州大學 法廷学会 法廷研究 第79卷 第3號(2012．12.)

廣井亮一，司法臨床の方法，金剛出版（2007）

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家庭事件調査実務入門（再訂版），研修教材 第27号（2007）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 2014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1	2014. 12. 30.
2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2	2014. 12. 30.
3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 · 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3	2014. 12. 30.
4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4	2014. 12. 30.

▣ 201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2014-05	2015. 2. 27.
2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별책: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2014-06	2015. 2. 27.
3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硏究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2014-07	2015. 2. 27.
4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별책: 강의안(PPT 및 해설 자료)]	2015-01	2015. 5. 22.
5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04	2015. 5. 29.
6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2015-02	2015. 5. 30.
7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	2015-03	2015. 6. 10.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8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별책: 프로그램 안내]	2015-06	2015. 6. 26.
9	효율적인 증거개시 · 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05	2015. 6. 30.
10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2015-08	2015. 6. 30.
11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2015-07	2015. 7. 13.
12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5-10	2015. 7. 17.
13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재판서 · 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	2015-11	2015. 7. 24.
14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정 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2015-09	2015. 7. 31.
15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 첨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	2015-12	2015. 9. 14.
16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5-16	2015. 11. 9.
1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5-14	2015. 11. 13.
18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2015-13	2015. 11. 25.
19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2015-15	2015. 11. 27.
20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2015-17	2015. 12. 23.

▣ 2016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02	2016. 1. 13.
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2016-03	2016. 1. 14.
3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2016-05	2016. 1. 15.
4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2016-01	2016. 2. 16.
5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06	2016. 2. 25.
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016-04	2016. 2. 26.
7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6-07	2016. 3. 28.
8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08	2016. 3. 28.
9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2016-09	2016. 4. 4.
10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2016-10	2016. 8. 26.
1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2016-11	2016. 9. 8.
12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2016-12	2016. 9. 30.
13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16-13	2016. 10. 17.
14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2016-15	2016. 10. 21.
15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2016-14	2016. 10. 25.
16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2016-18	2016. 11. 18.

▣ 2017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19	2017. 1. 24.
2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2016-16	2017. 2. 23.
3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2016-22	2017. 2. 28.
4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6-17	2017. 3. 13.
5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6-20	2017. 3. 30.
6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2016-21	2017. 4. 28.
7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2017-02	2017. 5. 17.
8	북한의 신분 · 공민 ·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2017-03	2017. 6. 20.
9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2017-04	2017. 8. 11.
10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	2017-01	2017. 8. 30.
11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2017-05	2017. 9. 11.
12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2017-08	2017. 9. 15.
13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2017-06	2017. 9. 19.
14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2017-07	2017. 9. 27.
15	미국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2017-09	2017. 11. 20.
16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2017-10	2017. 12. 1.
17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2017-11	2017. 12. 27.
18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2017-12	2017. 12. 28.

▣ 2018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8-02	2018. 2. 22.
2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2017-14	2018. 3. 30.
3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2017-15	2018. 4. 30.
4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8-03	2018. 4. 30.
5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2018-04	2018. 6. 15.
6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	2018-07	2018. 6. 15.
7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2018-05	2018. 8. 31.
8	재판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2017-13	2018. 9. 20.
9	미국 연방파산관리인(U.S. Bankruptcy Administrator) 제도 연구	2018-06	2018. 10. 10.
10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2018-08	2018. 10. 11.
11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2018-01	2018. 11. 2.
12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2018-09	2018. 11. 20.
13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	2018-10	2018. 12. 26.
14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2018-12	2018. 12. 27.
15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2018-13	2018. 12. 28.
16	아시아 · 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2018-11	2018. 12. 28.
17	미국의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 외관을 중심으로	2018-14	2018. 12. 31.

▣ 2019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총서	발간일
1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2018-16	2019. 1. 28.
2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8-17	2019. 1. 30.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9년 1월 22일 인쇄
2019년 1월 30일 발행
발 행 처 사법정책연구원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TEL 031-920-3583
인 쇄 처 감디자인
TEL 031-939-3300

〈비매품〉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전문(全文)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jpri.scourt.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BN 979-11-6168-071-2 95360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본관동 9층, 10층
대표전화 : 031)920-3583 E-mail : jpriga100@scourt.go.kr

비매품
95360
9 791161 680712
ISBN 979-11-6168-071-2